arts change the world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2011년 11월 인쇄<br>2011년 11월 발행<br>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br>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br>한국문화예술위원회<br>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번지<br>전화 02-760-4500, 600<br>팩스 02-760-4706<br>홈페이지 mww.arko.or.kr<br>이메일 arko@arko.or.kr<br>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br>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책임자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태건| The Ton 대표
선임연구원 : 김용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 이슬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미술경영협동과정
이현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박규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민윤경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김민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양희은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 목 차

01 역긔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범위 및 프로세스 ..... 3
연구 추진과정 ..... 5
국내 공공미술 추진현황9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 17
03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몽물 해어ㅅㅕㅖ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 23
선택적 기금제의 통합적 활용사례 ..... 50
04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구현전쟉
전략의 목표 및 내용 ..... 63
법제도 및 정책 현황 ..... 65
법제도 및 정책 개선 ..... 69
조직 구성 ..... 76
재원 확보 ..... 88
운영 • 관리 ..... 96

## 05 광주전남 공동혓신도시 공공미술 기본구상

개요 및 여건분석 107
설문조사 111
비전 및 기본방향 118
우선추진지역 및 프로젝트 시나리오 119
단계별 계획 132

## 06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실행방반

공공미술 추진 프로세스 135
개발 프로세스 및 법제도 개선 137
조직 구성 145
재원확보 149
운영 • 관리 155

## 07 줄맟재인

종합 및 제언 161
향후 추진 및 연구과제 162

부 록
제차 워코솝 165
제2차 워크솝 168
설문조사 171

참고문헌

## 표목차

표1 「문화예술진흥법 법개정 내용 ..... 2
연구 프로세스 ..... 4
표3 도시계획 차원의 공공미술 추진배경 ..... 24
표4 브리스톨 공공예술전략의 주요목표 ..... 25
표5 단계별 공공예술 가ㅇㅣㅡㅡ라인 수립26
표6 BLC프로젝트 주요이슈 및 디자인원칙 ..... 27
라데팡스 개발과정 ..... 30
표 시기별 뮌스터 프로젝트 개념 및 특징 ..... 39
표9 파레 다치카와 공공미술 프로그램 ..... 46
표10 파레 다치카와 공공미술 보급 활동 ..... 47
11 산타모니카 공공미술 프로그램 ..... 51
표12 로스엔젤레스 선택적 기금제 도입사례의 특징 ..... 53
표13 포틀랜드 공공미술 프로그램 ..... 55
표14 벤쿠버 공공미술 프로그램 ..... 58
표15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4개 부문 12대 구현전략 ..... 64
표16 공공미술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표17 경관협정의 법적 규정 ..... 66
표18 공공미술 관련 「경관법」 ..... 66
표19「건축법 제8장 특별건축구역 중 미술작품과 관련된 사항 ..... 67
표20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의 일반적 구성 ..... 67
표21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 68
표2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 타당성 검토 ..... 72
표23 특별건축구역제도의 활용방안 ..... 73
표24 경관협정을 통한 공공미술 자체규약 마련 ..... 75
표25 도시 차원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국내 사례 ..... $\pi$
표26 노섬버랜드 추진 기구의 역할 및 구성 ..... $\pi$
표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 78
표28 국가별 공공미술 진흥사업 관리운영 기구 ..... 79
표29 아일랜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무팀구성원 및 역할 ..... 80
표30 필라델피아 조형예술위원회 구성 ..... 81
ㅍ31 심의위원회구성 및 심의방식 해외사례 비교 ..... 82
표32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 ..... 83
프33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와의 유사사례（제도적 방식） ..... 84
표3 건축 코디네이터 제도（비 제도적 방식） ..... 84
표 35 예술 감독 도입 사례 ..... 85
표36 일본 요코하마，Bank ART 1929 ..... 87
표 37 경인 아라뱃길 프로그램별 설치 및 운영방식 ..... 87
표8 포틀랜드시 인센티브제도 ..... 89
표39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사항 ..... 97
표40 전국 10 개 혁신도시 개발개요 ..... 107
표4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개요 ..... 108
표42 설문조사 설계 ..... 111
표43 설문참가자 일반현황 ..... 112

## 그림목차

그밈 연긔의 공적 범위 3
그릴 1950，70연대 미술장슥품 9
 ..... 9
그램 1980는대 미술장숨 ..... 10
그렴 1900논대 미숭생뭄 형태 ..... 10
금ㅂ6 2000년대 공공미술 작품 ..... 11
그림 제도 밖 공깅물의 확장사ㅅㅕㅖ ..... 11
그롱 2006ㄴ－ㄴ－2007년 〈Art in City〉 ..... 12
ㄱㄹㅁㅁ 2009변 〈마을미술포젝트〉 ..... 13
그림 도시ㅅㅓㅓㄹ물로 확징하는 공공밀ㄹ ..... 13
그림｜안양 공ㄱㅇㅇ에술프로젝트 공깅미술 지ㄱㅜㅜㅁ ..... 14
그럼2 분당신도시 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 18
그림 대햘로 거리 미술짐품 ..... 18
그림14 광주금남조각거리 미술직품 ..... 18
그림 공기물의 발전방향 ..... 19
ㄱㄹㅁㅁㅁ 브리스롤의 위치도 ..... 23
그림17 항구도시 브리슬릐 과거（1953）와 헌재（2010）
그림17 항구도시 브리슬릐 과거（1953）와 헌재（2010） ..... ${ }_{2}^{23}$
금ㅁㅁ 통합적 조직 헙볓치몌 구축 ..... 24
글ㅁㅁㅁ 도시 중심부 위치도（City Centre map） ..... 27
글ㄹㅇ 하바사으（Harbourside）내 당한ㄴㅅㅅ설 ..... 27
그릴어 읽기 슈운 도시 프로ㅈㅔㅔ트의 다야안 직뭄들 ..... 27
그링ㅇㄹ 혼존（Homezone）내 에술문화 프르램 ..... 28
글ㄹㄹㅇ 라태팡스 중심지구 전경 및 도시 위치 ..... 29
글ㄹㄹㄴ 라태팡스 개발 시기불 도싱ㅇ 이미지 변화양쌍 ..... 30
글ㄹㅁ 라테팡스 공공미술 정책 추진치계 및 역할
33
글ㄹㄹ6 라테팡스 지구 내 공공예술품의 시대별 경향
34
글ㅇㅇ ACTION RESEARCH ..... 35
글ㄹㄱ PARASTES ..... 36
 ..... 36
그령부 족광원 만든기 프로젵ㅌ ..... 37
그령ㄹㅇ 뮌스틔 위치도 ..... 38
그믐ㄹ3 과거 전시직품들의 전시 공원 ..... 41
그력4 정신지체우 교육차원의 공공미술 ..... 41
그렬35 정싲ㅈ체우 아ㅇㅐㅐㅜㅇㅓ ..... 41
그명ㅇ 브루스 나우맨Bruce Naumann），〈square Depression》 ..... 42
그령7 클래스 올ㅍlㄴ버그（Claes Oldenburg），〈Giant Poolballs〉 ..... 42
그롬8ㅇ 바르셀로나 위치도 및 전경 ..... 43
금ㅁㅁㅇ 베ㅂㅐㅣㅣ 페｜프（Beverly Peppers），〈Cielo Caido〉 ..... 44
글ㅁㅁㄴㅇ 이글 미토랑（Igor Mitorai），청동족작품 ..... 44
글ㅁㅁ 앤드류 알퓰ㄹ（Andreu Alfaro），（Waves） ..... 44
금ㅁㅁ2 프팽크 겔（Frank Gehry），〈Peix〉 ..... 44
그랜 디 다치퀴와시 위치도 ..... 45
그몀4 다치와와시 전경 ..... 45
금랜 1950－1970에지 미군 비힝상히있던 다치기와 ..... 45

## 01 <br> 연구의 개요 <br>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연구의 범위 및 프로세스 <br> 연구 추진과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대 공공미술은 도시계획과 통합되고 커뮤니티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

－현대 공공미술은 문화시설을 비롯해 공원이나 광장，생활 및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공간에 대한 종합 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서부터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공공미술은＇건축 속 미술（Art in Architecture）＇일변도의 하드웨어적인 접근방식을 넘어 문화행위와 그것을 구축하는 환경，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시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연계한 통합적 공공미술 사업 추진여건 마련

－2011년 11월 26일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미술작품 및 공공미술 설치를 통한 도시미관 제고，문화향수권 증진，창착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개정안의 세부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표1 참고）
－미술 ‘장식’ 에서 미술 ‘작품’ 으로 용어의 변경
－선택적 기금제 도입 ：건축주가 작품설치를 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주체：한국문화예술 위원회）으로 기부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용도에＇공공미술 사업 추가 ：기존방식대로 건축주가 본인의 건축물 에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을 납부하면，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 에서 도시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

##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거주민의 문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무룰 사업추진의 필요성 증대

－양질의 문화환경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삶의 질 개선，커뮤니티 강화 등의 사화문화적 효과，도시 브랜드 창출 및 이미지 개선 효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은 도시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자원으로써 시민들 의 일상생활 속에 문화향유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도시 차원에서 통합되는 공공미술 구현전략 도출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 공공미술이 연계되어 도시경관과 문화환경의 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제시
－공공미술이 도시민들의 생활 및 커뮤니티 공간에서 활용되고，장소간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전략 제시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공미술 모델과 실행방안 제시

－전국 10 개 혁신도시 가운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환경 및 정책 추진여건이 우수 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사업 모델 제시
－도시의 성격，도시의 기능，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내용적 접근을 통한 공공미술의 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표1 「문화예술진흥법」 법개정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br>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 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 9 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br> （1） $\qquad$ 건축하려는 재이하 <br> ＂건축주＂라 한다） $\qquad$ 미술 <br> 작품의 설치 $\qquad$ |
| 〈신 설〉 | （2）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칟딘체를 제외현다）는 젷ㅎㅇㅇㅔ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히는 금액을 미술적품의 설치에 쇼용하 는 대신에 제6조에 따른 문화예율선징히금에 출연할 수 있다． |
| （2）제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 분 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정한다． | （3）제항 또는 제랑에 따라 미술잠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
| （3）제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오로 정한다． | （4）제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18 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1．（생 략） | 1．（현행과 같음） |
| 2．～7．（ 생 략） | 2．～7．（현행과 같음） |
| 〈신 설〉 | 8．장애인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  | 9．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차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
|  | 10．（헌행 제호화 같음） |

## 연구의 범위 및 프로세스

## 공간적 범위

- 거시적 관점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연계할 수 있는 신도시 및 기성도시 전체를 포괄함
-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델 제시를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사례로 삼아 도시 내 공공공간 과 연면적 1 만 $\mathrm{m}^{2}$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을 연구의 대상 범위로 한정함


그림 연구의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 7월 25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모두 4개월임


## 내용적 범위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과 연계한 공공미술 사례분석

- 도시계획과 공공미술 트렌드 분석
- 도시계획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한 공공미술 국내외 사례분석


## 공공미술 및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검토

- 도시계획 및 설계 과정에 공공미술을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법규 검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미술 관련 제도 및 정책 검토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구현전략 도출

- 도시 차원의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제언
- 법제도 및 정책, 조직구성, 재원확보,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 제시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제시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추진 여건 분석
-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문화환경 및 공공미술에 대한 설문조사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별 프로젝트 및 실행방안 제시


## 연구 프로세스

표2 연구 프로세스


## 연구 추진과정



국내 공공미술 추진현황
도섀계혹과 연계한 공공물 추전의 필요성 및 발전빙향

## 국내 공공미술 추진현황

## 국내 공공미술의 흐름

## 해방 이후 ~ 1960, 70년대 : 기념조각의 시대

## 역사 및 기록을 위한 기능

- 해방 이후 ~ 1970 년대는 공공미술의 개념이 본격화되기 이전으로 기념조각이나 기념동상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형태는 크게 3 가지로, 첫째는 애국선열이나 위인을 기리는 기념조각으로 현재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동상(1968, 김세중)이나 세종대왕상(1968, 김세중) 등이 있고 둘째는 전쟁 관련 기념조각, 위령탑으로 현충탑(1967, 최기원 이일영) 등이 있으며, 샛째는 새마을운동과 건설 붐에 의한 각종 준공비, 준공기념탑 등임
- 1970년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미술 관련 제도가 법제화된 시기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일종의 퍼센트 법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신설되었은 권장사항으로 실제적 법 효력은 없었음


그림2 1960,70년대 미술장식품 : 이순신장군 동상좌), 호남-남해 고속도로 준공기념탑(중), 세종대왕 동상(우)

## 상징의 기능

- 대부분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징조형물은 지자체 이미지와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지 거나 대형사업이나 공간을 상징, 기념하기 위해 제작됨
- 일반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캐릭터화되거나 규모의 거대함과 수직적 형태로 나타남


그림3 괴산 임껙정고추조형물(좌), 강릉 홍길동조형물(중), 화천군 토마토조형물(우)

## 1980년대 : 모더니즘 조각의 시대

-이 시기에는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기념조각 에서 도시 환경에 영향 을 주는 요소로서의 ‘환경조형’ 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함

- 그러나, 80 년대 전반에는 기념조각과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 혼재되어 나타났으며, 1980 년대 중후반, 특히 1984년 미술장식제도가 서울시에서 의무화(1993년에 다시 권장사항으로 변경)되고, 86아시안게 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도시 환경미화 차원의 모더니즘 조각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함


그림4 1980년대 미술장식품 : 오윤(좌), 김영중(중), 김중업이승택백금남(우)

## 1990년대 : 성장의 시대 - 양적 성장과 성장통

- 1990년대는 성장의 시대로 90년대 싱반기와 80년대 하반기는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1995년 제도적 공공미술, 즉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가 권장시항에서 의무시항으로 전환되면서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시기임
- 제도의 의무화로 도시에 공공미술 작품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실제로 창작 기회와 문화향수권의 증진 을 가져왔으나 이것은 곧 공공미술이 미술시장의 영역으로 급속히 이동되는 결과로 이어짐
-80년대에 비해 좀더 도시환경과 공공미술에 대한 고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장소특정적 (site-specific) 공공미술과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함


그림5 1990년대 미술장식품 형태 : 강은엽(좌), 최만린(중), 민복진(우)

## 2000 년대 : 공공미술의 확장과 도시적 기획을 시도

##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정착과 변화

- 2000년대는 미술계에서 공공미술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로 하반기에는 붐 이라고 할 정도로 당ㅇㅎㅘ 및 활성화
-2000년에 작가, 화랑, 심의위원이 대거 연루된 '조형물 비리사건' 이 터졌는데, 이것은 $1 \%$ 이하 였던 설치비용이 $0.7 \%$ 이하로 관련 법령이 변경되면서 시작된 것이었음
-2000년대는 또한 공공미술의 변화의 시대로 미술장식품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점차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함
-물론 법적 제도의 특성상 '(반)영구적인 오브제' 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전 의 플롭아트에서 장소특정적 공공미술로, 작가의 일방적 자기표현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 시한 공공미술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고, 벤치, 가로등 등의 시설물과 결합하여 기능성을 갖추거나 (더시티7 한젬마 등), 건축, 조경과 협업하는 작품들이 등장함
- 재료 또한 석재, 브론즈 일색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고, 특히 미디어와 결합한 공 공미술이 급속하게 증가함(SK텔레콤사옥, DMC 내의 미술장식품 등)


그림6 2000년대 공공미술 작품 : 최정화좌), 한젬매중), 최우람(우)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밖 공공미술

- 2000년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뉴장르 공공미술이 담론화되고 확장됐다는 점으로 전통적 오 브제 형태의 공공미술에 한계를 느낀 젊은 기획자(집단)들은(공공미술 프리즘, 플라잉시티, 공화국 리라, 야투, 반지하, 믹스라이스 등) 자생적으로 공공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했음
- 또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06년과 2007년 'Art in City',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에서는 뉴장르 공공미술이 대규모로 진행되었음
-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은 공공디자인의 폭발적 약진과 맞물려 건축, 조경, 디자인 장르를 넘나들며 도시디자인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그림 제도 밖 공공미술의 확장 : 서울문화재단-놀이터프로젝트(좌), 도시갤러리프로젝트-양주혜중), 하나은행(우))
－2000년대는 또한 기존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로，2004년 참여정부시절，제도 개선을 위한 첫 공청회가 개최되었고，이후 논란 속에 서도 공공미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점차 확산되어 갔음
－이처럼 2000 년대는 동시에 미술장식품이 가졌던 한계 속에서도 다양성이 표출되던 시대였으며，특히 뉴장르 공공미술의 활성화 등 제도 외의 공공미술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대라 할 수 있음

## 참고＿문화관광부 〈아트인시티（Art in City）〉 사업

## 목적

－문화관광부 아트인시티 사업의 원래 사업명은 ‘소외지역 생활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시압’ 임
－경제적，시회적，문회적 소오계충이 거주하거나 할동히는 지영의 생횔환경을 미술을 통해 가선함으로써 문화적 삶미 질을 제고하자 하였음

| 주 최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과웃） |
| :---: | :---: |
| 주 관 | 공공미술추진위원회 <br> ※공공미술 추진위원회는 8～9인으로 구성（위원장 김용익） 사무국은 약 5～7인으로 구성 |
| 기 간 | 2006년～2007년 |
| 사업내용 | 미ㅎㅚㅚ공모사업 ：위원회가 주제를 정한 후 작가를 선정하였음 <br> 밀반공모사업 ：소외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장소를 선정한 후 작가를 선정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br> ㅁ지속사업 ：2006년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하였음 |
| 소요예산 | 27 억원（복권기금） |
| 사업지역 | 전국 31개소 |

## ‘공공성의 확장＇과 정부 및 지자체의 뉴장르 공공미술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서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뉴장르 공공미술은 초창기 민간에 의해 주도 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정부，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화되었음
－2006년 문화관광부 주최，공공미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Art in City＇〈소외지역 생 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은 자체 평가에서 공공미술의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수용자 지향적인 공모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으며， 100 여 명이 넘 는 미술가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미술 지원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고 언급하 고 있음
－＇아트인시티＇와 그 후속사업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마을미술프로젝트＇ 는 뉴장르 공공미술이 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공공미술의 분기점이 되고 있으며，이처럼 대규모로，단기간 내에，집중적으로 이루었던 경우는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움
－그러나 사회적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다소 미약했고，일시적인 프로젝트성 사업추진체계와 사후 관리 프로그램 부실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그림8 2006년－2007년 〈Art in City〉


그림9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

## 참고＿문회체육관광부 〈2009미을미술 프로젝트〉

## ㅁ목적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는＇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사업으로，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의 활성화， 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주 최 | 문화체육관광ㅂ |
| :---: | :---: |
| 주 관 |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사）한국미술협회 <br> ＊추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위원장 서성록），사무국은 4명으로 구성 |
| 기 간 | 2009년 3월～12월 |
| 사업내용 | 물리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br> －마을회관이아 경로당 등 공동체 공간을 미술공간으로 꾸미는것 ㅁ길섶 미술로 꾸미기 사업 <br> －산책로나 골목길을 검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사업 <br> ㅁ공공미술 꽃피우기 <br> －공공의 예술담장 만들기，테마가 있는 공공미술 |
| 소요예산 | 20 억원（복권기금） |
| 사업지역 | 전국 21개소 |

## 도시공간 속으로의 개입，도시시설물과 결합

－공공미술의 스펙트럼이 도시시설물과 만나면서 다채로워지고 있음
－신세계백화점 본점 리노베이션 공사장 가림막으로 등장한 마그리뜨의＇골콘다＇와 광화문 복원 공 사장의 양주혜，강익중의 광회에 뜬 달 등 가림막은 이미 공공미술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리를 굳혔음
－미술장식 심의와 관계없이 시설물에 미술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미술장식품이 벤치나 가 로등，문주，팬스，이정표，에어덕트 등 기능적인 요소를 갖추는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음


그림10 도시시설물로 확장하는 공공미술 ：벤치．쉘터．가림막

- 서울문화재단에서 해미다 진행햐는 놀이터프로젝트 나 인천문화재단의 교문바꾸기, 경기마술관의 컨테이너로 만든 공공도서관, 도시갤러리프로젝트의 긱종 벤치, 쉘터 등은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임
-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APAP)' 는 2005년(이영철), 2008년(김성원)에 이어 2010년 3회 APAP총감독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로테르담 미래 도시 건설’ 프로젝트(2005-2006)의 건축감독인 박경이 맡았음
- APAP가 기존의 조각심포지엄류의 형태에서 진일보하여 미술은 물론 건축, 디자인, 조경을 아우르는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도시계획 속의 공공미술의 진일보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나 이미 해외에서 10 년 전에 선보였던 공공미술을 안양에 반복하는 등 사실상 장소특정성이 실종된 명 품 위주, 해외작가 위주로 흐르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서울시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는 서울을 문화적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시장 의 의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디자인사업본부 산하에 도시갤러리추진단이 자리하면서 서울 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서의 요구와 추진 주체(도시갤러리추진단)의 공공미술 사업으로서 의 요구가 적절히 조화됨으로써 프로젝트의 구성 또한 뉴장르 공공미술과 공공장소 속의 미 술,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공존하고 있음
- 도시갤러리프로젝트와 APAP는 성격이 다르지만 도시계획 속의 공공미술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점 에서 최근 공공미술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예산규모나 작품규모,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사회적인 임팩트가 강하지 못했음


그림11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공공미술 작품 : 볼프강 빈터(좌), 오인환중), 실비 플뢰리(우)

## 참고_ 안양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목적

- 안양시는 아름다운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 아트시티 21' 시책을 2002년부터 추진함
- APAP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건축, 조경, 미술 등이 결합된 공공예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5년부터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주 관 | - 안양공공예술재단 <br> - 재단법인으로 2007년 1월에 설립 <br> - 이사회는 이사장(시장), 부이사장부시장), 이사(15명), 감사로 구성됨 <br>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집행위원(7명)으로 구성됨 <br> - 사무국은 사무국장, 예술감독, 총무팀, 예술팀, 공공디자인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됨 |
| :---: | :---: |
| 기 간 | - 2004년 12월,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br> - 2005년 11월, APAP 2005 개최 (예술감독 이영철) <br> - 2007년 10월, APAP 2007 개최 (예술감독 김성원) <br> - 2010년 10월, APAP 2010 (예술감독 박경) |
| 사업내용 | - 격년으로 안양 공공예술프젝트(APAP) 개최 <br>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br> - 안양시가 위틱하는 공공예술사업 추진 |

##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2008년）

## ㅁ목적

－＂한걸음 더 가까이，한걸음 더 멀리（seoul city gallery，one more step）．＂을 기치로 함
－창의와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한걸음 더 가가이 다가서고，도시를 작품으로，삶을 예술로 만드는 공공미술의 지항을 반영

| 주 최 | －서울특별시 <br> 주 관 |
| :--- | :--- |
| －공기술위원회，도시갤러리 추진단 <br> ※공공미술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문 및 심의 기능 <br> 도시갤러리 추진단은 7인오 구성 |  |
|  | 처소가 아름다운 도시，서울 가꾸기 <br> －서울아트레ㄹㅡㅡ，서울 진입 게이트 조형물，학교갤러리，서울디자인올림픽＿올림픽 큐 <br> 브，서울디자인올림픽＿집 밖의 집 |

－인간적인 도시，서울 만들기

- 예술＋경제 ：재래시장＿황금시대 황금시장
－예술＋기술：특수상가지역＿무쇠구름
－예술가가 달려갑니다－이웃／동네활성화사업
－One Tree Park
－참여하는 시정，서울 만들기
－예술가 자유제안，대학 및 지역공동체 프로젝트，기단 프로젝트，분필아트페스티벌
－인프라－스케이프（infra－scape），서울 －남산터널 옹벽 예술화사업
－도시갤러리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기본으로 진행 하지만，일부 프로젝트는 문화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명경쟁 방식을 활용함
－일반경쟁은 참여기회 개방 및 공개 경쟁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공간 및 사업이나 개방성，접근성，시민향유 등 민주주의적 성격과 밀접한 공간 및 사업에 해당됨
－지명경쟁은 장소적 특성이 창작 및 기회경험의 연관성을 요구하는 공간 및 일반 경쟁 의 취지보다 작업의 완성도，창의성이 중시되는 대상지 사업에 한함
－구성주체：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해당 사업별로 7인）
－1차 및 2채최종）심사위원 동일
－심사기준 ：공간 및 과업해석，작품성，공공성，공간성
－공개원칙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한 녹취 및 자료 기록 심사내용은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함
－2단계 공모（1차 제안 + 최종 제안）
－1차 제안 ：과업에 대한 해석 및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단계의 제안
－최종 제안 ：퍼블릭 샤렛을 거쳐 우수후보작에 한하여 실시설계，실행계획，최종 예산 안이 포함된 최종 제안을 받고 이를 최종심사를 통해서 당선작을 1점 선정


〈이상환，인왕제색〉


〈이준영，자전거 거치대〉


〈정연택，꿈까는 피아노〉

## 참고 건축물 미술직품 제도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변춴과정

- 1972년 ~ 1994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0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 하는 조항이 신설됨
-1988년 문화예술진층헙 시행령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기준이 완화됨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서울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함 - 1995년 0이후
-1995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마 권장에서 의무로 개정됨
-연면적 1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함 -2000년 이후
-1997견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혁작업단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할동을 제약하는 건축 규제로 분류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부에 요구함
-200 연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장식 비용을 건축비의 $1 \%$ 이상에서 $1 \%$ 이하로 낮춘는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술장식비용은 $0.7 \%$ 에 머물고 있음
- 2011 년 01후
-2011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헙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 이 '건축물 미술작뭄' 으로 바퓌었고, 선택적 기금제도가 도입됨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야트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 조형물을 의미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선택적 기금제도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항에서 명시된 내용과 같이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 및 운용주체: 한국문화예 술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음을 의미함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시대 구눈)

| 구 분 | 연 도 | 비 고 |
| :---: | :---: | :--- |
| 권장 시기 | $1972 ~ 1994$ | - 문화예술진흥법 근거조항 마련, 설치 권장 |
| 의무화 시기 | $1995 \sim$ |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 설치 의무화 |
| 규제 완화 시기 | $2000 \sim$ | -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설치비용을 건축비 $1 \%$ 이상에서 $1 \%$ 이하로 낮춤 |
| 선택적 기금 도입 시기 | $2011 \sim$ | - 선택적 기금을 통한 도시 차원의 건축물 미술작품 기회 마련 |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 기존 공공미술의 문제점

## 도시계획 및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 부재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에 적용될 경우 건축물 단위로 조성 됨으로써 도시 전체의 맥락이나 지구 단위의 조화를 고려하기 어려움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연면적 1 만 제곱미터 이상인 10 개 용돌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 공항, 여객터미널, 광장, 보행도로 등 공공공간 및 시설물에는 적용 되지 않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작품별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는 심의하나 지구단위로는 포함시키지 않아 지구별 공공미술을 통한 특색 있는 도시미관을 창출하기 어려움
- 공공미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우선되어야 함


## 장소적 맥락 및 시민과의 소통이 결여된 공공미술

- 기존 공공미술 작품의 대다수는 주변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한 조형언어와 재료가 반복되어 설치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미술 작품은 시민과의 소통이 결여되어 있고 주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 시민과의 소통 결여문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공공미술이 가져야 할 공공성을 구축하는데 미흡했고, 이는 공공미술 작품의 운영관리 문제로 연결됨


##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로의 지속적인 활용 미흡

- 퍼센트법에 의해 조성된 개별 건축물 단위의 공공미술 작품은 시행과정의 불공정성과 사후 관라운 영에 대한 마인드 부재로 인해 질 높은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로 활용되지 못했음
- 도시 생활 및 공공공간과 결합된 공공미술 사례들(문화체육관광부의 'Art in City', 서울시' 도시갤 러리 프로젝트, 안양시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광주시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진행되어 왔으나 일시적 이벤트이거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회적 임팩트는 크지 못한 실정임
- 기존 공공미술은 도시적 맥락에서 공공미술의 질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광, 교육요소로 활용하는 공공미술 정책이 부재한 반면, 민간건축주들이 타율적으로 공공미술에 참여해 질 낮은 작품들만 난립하고 있음

[^0]

그림12 분당신도시 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그림13 대학로 거리 미술작품
그림14 광주금남조각거리 미술작품

## 공공미술 발전방향

## 도시계획 및 공공공간과 연계한 공공미술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적 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건축주는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로써 기존에는 개별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 전면이나 앞마당에만 작품을 설치했다면, 앞으로는 기금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자체에서 광장,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는 앞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의 기획과 구현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이 필요함 시점임
- 도시발전 전략 및 관련계획과 공공미술을 연계함으로써 도시만의 차별화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미술 조례를 제정하거나, 도시 관련 법제도 내 공공미술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소의 맥락을 고려한 공공미술

- 공공미술은 도심의 미적 장식물로서의 오브제가 아니라 작품이 위치하는 장소의 물리적, 건축적, 사회적 구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장소의 특수성이 작품의미의 근원이 되며 장소 자체를 작품 으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변화해야 함2)
- 거시적으로는 공공미술 작품의 전시관이라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어우러져야 함. 도시 설계와 계획 방향, 그리고 도시가 지향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작품을 설치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이와 같은 전제 요건이 충족될 때 단순한 미술품이 아닌 도시의 상징과 매력요소인 도시예술(civic art)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1]- 공공미술을 통해 공공공간의 맥락성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구성원간의 상호교류 증대를 이끌어냄으로 써 장소의 인지적 효과를 높여나가야 함
- 이를 통해 공공미술을 공공영역의 디자인 요소로 통합함으로써 공공공간은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통합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음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미술

- 커뮤니티 차원에서 통합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의식을 고양하는데 역할함
- 중장기적 공공미술 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공공미술이 위치할 공간에 대한 연구, 접근성,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선행하도록 함
- 지역사회와 예술가가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함


## 지속적인 운영관리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공공미술

-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작가들이 단기적으로 추진한 후 방치 또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 라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예술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함
- 이를 위해서 공공미술 작품의 조성단계뿐만 아니라 관라운영 단계에서의 다양한 재원확보 채널을 마련함
-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체 등의 조직을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공미술 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미술 작품의 소재와 콘텐츠를 다양화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브랜드나 정체성을 창출하는 공공미술

- 공공미술은 도시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내러티브를 담고, 해당 장소의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스토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공미술의 문제점 |  |  |  | 항후 공고이술의 전개 방향 |
| :---: | :---: | :---: | :---: | :---: |
| 도시계획 및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위한 | ++ | 도시계획 <br> 도시 문화기획 <br> 선택적 기금 | $\triangleright$ | 도시계획 및 공공곤과 연계한 공기이술 |
| 장소적 맥락의 고려 미흡 |  |  | $\triangleright$ | 장소적 맥락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미술 |
|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결여 |  |  |  | 지속적인 운영관리 프르금ㅇㅁ 갖추어진 공공미술 |
| 문화예술관광 콘텐츠으로의 활용 미흡 | + |  | $\triangleright$ | 도시브랜드나 정체성을 창출하는 공오이술 |

[^2],

## 03 <br> 도시계획과 연계한 <br> 공공미술 해외사례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선택적 기금제의 통합적 활용시례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 도시재개발과 공공미술의 결합, 브리스톨(Bristol, UK)

## 도시개요

## 과거의 번영 그리고 쇠락

- 브리스톨은 에이번 강이 관통하는 항구도시로써 주에 부속되 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약 43 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영국 남서부 대표도시임
- 13세기부터 500년간 런던과 함께 영국의 양대 도시로 명망이 높았으나,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과정에서 리버풀, 버밍엄, 맨체스터의 급속한 성장 아래 쇠퇴의 길로 들어섬, 일례로 1971년 1981년 사이 23,000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음


그림16 브리스톨의 위치도

## 새로운 도시개발

- 과거의 부흥을 위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재개발 계획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진행 은 미뤄지고 여전히 지역중심부 항구지역은 담배공장, 가스공장, 폐창고 등이 산재됨
- 1980년대 이래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및 오피스 부지개발과 문화산업개발이 민간에 의해 활 성화되고, 항구와 같이 도시가 가진 자연의 혜택을 좀 더 활용하고자 워터프런트를 중심으로 적극적 개발정책이 추진됨


그림17 항구도시 브리스톨의 과거(1953)와 현재(2010)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배경

- 2 차 세계대전으로 도시가 파괴된 이후 급조로 만들어진 도로체계로 인해 도시가 혼란스러워짐
- 이와 같이 잘못된 공공정보로부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불편한 도시를 개혁하는 것이 1980년

대 과제로 떠오르며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됨

- 시는 지역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 아이덴티티, 인포메이션, 교통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mathrm{BLC}($ Bristol Legible City)를 디자이너, 아티스트, 지질학자, 도시계획가, 시공무원과 함께 협업함
- BLC의 성공 이후 각종 도시 재생 및 신개발사업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 도시차원에서 공공예술을 실현하고자 2000년 10월 26년 브리스톨 시의회 내각에 의해 공공예술정책이 승인됨

표3 도시계획 차원의 공곰미술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 도시 및 지역계획법령 제106조(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of 1990, Section 106) <br> -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적인 시설, 즉 예술작품을 포힘한 조경과 같은 "토지 개발을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령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조경 계획을 갖는 민간 개발자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줌 <br> - 이 법률 덕분에 도시계획 차운이서 공공미술을 도빕할 수 있게 됨 |
| :---: | :---: |
| 공공미술의 설치계획 시스템 및 프로세스 | - 지자체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에 따라 공공미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br> - 공공미술에 대한 지지체의 비전, 정책, 전략 <br> - 폭볇은 정책 내용 /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 / 공공미술의 혜택 <br> - 공공미술 전문가 활용 근거 / 공곰미술 정책이 구체적인 재건지역 및 개발 지역으로의 적용방법 <br> - 공공미술 설치를 위한 개발자의 공공미술에 대한 기술 <br> - 개발자들의 지원을 받은 지역 당국에 의한 공공미술 설치 과정에 대한 기술 |

## 추진조직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산하 공공미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산하 공공미술위원회는 동부지역, 남부지역, 북동부지역, 남서부지역 등 각 지역별로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공공미술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각각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 - 운영되고 있음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산하 공공미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공공예술 남서부지역 (Public Art South West, PASW)

브리스톨 시의회예술개발부
(Art Development Unit, Bristol City Council)


도시개발사업관계자

## 민간 협력기구

그림18 통합적 조직 헙벽체계 구축

## 공공예술 남서부지역 협회 (Public Art South West, PASW)

- PASW는 영국의 공공미술발전을 이끄는 기관 중 하나로, 잉글랜드 남서부를 주 대상으로 하며, 영국 전역에 걸쳐 미술, 디자인, 건축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공공•민간 기관에까지 활발한 네트 워크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 PASW의 작품은 도시 및 교외지역의 재건 계획을 포함한 공간, 병원 및 기타 의료 환경, 교육시설 건물, 산업 및 상업 시설, 주택개발, 건축 및 자연환경 보호, 교통인프라 등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음
- 특히 PASW의 웹사이트에서는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국외의 다양하고 방대한 공공미술 정책 관련 정보와 최신뉴스, 퍼센트법, 보완계획서 지침, 공공미술 전략, 관련법 등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 브리스톨 시의회 (Art Development Unit, Bristol City Council)

- 공공예술 남서부협회와 함께 브리스톨 시의회는 공공예술정책의 개발 및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직 책을 신설함 (문화부의 예술 개발 부서 내 선임 예술 담당자,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부서 예술 프로젝 트 매니저)
-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부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준 높은 공공예술위원회와의 파트너쉽을 구축함
- 공공예술을 통한 통합 및 지원방법으로 공공예술의 전문 지식의 제공과 함께 지역의 도시 개발자, 건축 가 및 계획가들을 위한 조언, 계획허가를 요구하는 주요 개발 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기타 공공민간 관련 주체

- 지역 주민 예술가, 기획가; 건축가, 주요 서비스 공급자, 기타 공공기관 관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함
- 관련된 많은 정부기관 및 민간 기관들이 역할을 맡아 협력함


## 비전 및 목표

## 비전 '읽기 쉬운 도시를 통해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 새롭게 재생되는 도시의 공공공간과 건축물 조성과정에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도시 비전을 통합함
-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능을 넘어 도시 디자인 전략의 기반으로서 거주민의 삶 자체를 재 구조화하고 지역 사회의 열망을 반영하는 장소를 창조함으로써 도시 정체성을 규명함
- 도시의 미래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개발 사업의 프로세스 내 공공예술을 기반으로 함

표4 브리스톨 공공예술전락의 주요 목표

[^3]
## 목표 1_ 인프라 시설과의 결합

- 워터프런트를 중심으로 도로, 교량, 보도, 공공시설물 등 도시 인프라 시설을 예술과 결합함



## 목표 2_ 지역 재개발 사업과 통합

- 도심 재생지구 및 새로운 건축물 조성사업에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도시비전을 통합함


목표 3_ 열린 공적공간의 개선

- 공원, 광장, 보행자 도로, 학교 등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공공공간을 개선함



## 주요 전략

- 브리스톨 공공예술전략은 상위 단계별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고려하되, 브리스톨 고유의 도시 비전 및 개 발방향, 컨텍스트에 부합하도록 브리스톨 시의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함

표5 단계별 공공예술 가이드라인 수립

|  | 1. 정책 가이드라인 계획 |  | 1. 커뮤니티 전략 |
| :---: | :---: | :---: | :---: |
| 국가정책 | 2. 생활 장소들 | 로컬정책 | 2. 기업 전략 |
| 가이드라인 | 3.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 | 가이드라인 | 3. 문화 전략 |
| National policy guidance | 4. 지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실행 | (브리스톨 시의회) | 4. 시티 센터 전략 |
|  | 5. 그린 페이퍼 계획 | Local policy guidance | 5. 읽기 쉬운 도시 전략 |
| 지역가이드라인 | 1. 환경디자인 |  | 6. 지역예술 전략 |
| Regional guidance | 2. 공공예술 남서부 지역 |  | 7. 창조적 산업 전략 |

## 시티 센터 전략 (City Centre Strategy)

- 도시 중심부의 3 개의 재생지구(Broadmead, Harbourside,Temple)와 메인 보행자로 루트에 초점을 강화함
- 거주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도시 중심부에 예술기반의 문화와 커뮤니티활동, 시설을 집중함
- 공공예술과 결합된 증가된 공공장소,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들, 관광명소의 풍부한 혼합을 이룸


그림19 도시 중심부 위치도(City Centre map)
그림20 하버사이드(Harbourside) 내 다양한 시설

## 읽기 쉬운 도시 'Bristol Legible City(BLC)'

- 과거 혼동을 야기한 공공 정보를 개선하고 도시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함
- 2003년 말까지 기존의 반복되거나 정보가 정확치 않은 표지판 철거 후 각기 따로 설치된 표지판들 을 통합한 150 개의 새로운 사인 포스트들과 30 여개의 지도를 시내 중심가 거리에 설치함
-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해 일관된 색상과 서체 등을 적용하여 통일성을 갖춤
- 사인 시스템, 지도, 주차장, 아트 프로젝트, 웹사이트 등에 적용함


그림21 읽기 쉬운 도시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례
표 6 BLC 프로젝트 과정 중 주요 이슈와 디자인 원칙

| $\begin{aligned} & \text { 주요 } \\ & \text { 윳} \end{aligned}$ | - 어떻게 하면 도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도시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는가? <br> - 어떻게 하면 도시가 간결하만서 해석되는 정보들을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br> - 모든 이에게 최대한의 도시경험을 주기 위한 교통시스팀은 어떻게 항상될 수 있는가? <br> - 도시의 주요 구조, 기관, 명소를 연결하는 파트너쉽의 역합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직운영될 수 있나? <br> - 21세기 도시에서 디자인과 브랜딩, 그리고 공공예술의 역할은 무엇인ㄱㄱ? <br> - 엣ㅅㄹㄱㅘ 디지이에 대한 새오운 접근 방법을 통해 거주지들과 방문자 모두가 도시 역시를 잏ㅎㅎㅎㄱㅗ 현대적 도시를 즐길 수 있을까? |
| :---: | :---: |
| $\begin{aligned} & \text { 디자인 } \\ & \text { 원칙 } \end{aligned}$ | - 도시는 돌아다니기 편리해야 함 <br> - 사인시스심과 지도는 브리스톨시의 아이덴티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함 <br> - ㅈㅔㅔㅗㅇ된 정보는 혼난스섭지 않고 이해가 쉬운 명료한 것이어야 함 <br> - 욉사이트이든 거라신이언, 누가 얻서 어띠한 매체를 사용히든지 동일한 정보를 일건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이야 함 |

지역 예술 전략 (Neighbourhood Arts Strategy)

- 지역 내 예술문화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핵심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구(Homezones)와 공공오픈스페이스 등 일상적 장소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역예술을 실현함
-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과 자아발전에 도움을 주며 웰빙과 건강을 증진시킴


그림22 홈존(Homezone) 내 예술문화 프로그램

## 시사점

## 공공미술과 여러 단계의 도시계획의 연계

- 브리스톨 공공미술 전략계획은 다른 도시계획과 개발과정에서 적극 연계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음
- 브리스톨 지구계획(Local Plan 2001-2011), 문화전략계획(Cultural Strategy), 중심부전략계획(City Center Strategy) 등에서 공공미술 계획을 통합연계하고 있음
- 여러 차원의 계획을 통합연계함으로써 도시의 공공디자인과 예술이 일관된 지향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도심개발의 핵심적 기반으로서 공공예술 가치 재인식

- 새롭게 구현되는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재생사업의 프로세스 내 공공예술을 기반에 둠
- 지역의 열린 공적 공간 내 공공예술을 실행하는 것은 거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 갈 환경/경관 을 구축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실행함


## 통합적 조직체계의 구축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산하 공공미술위원회 - 공공예술남서부지구-브리스톨 시의회- 다양한 이해관 계자 - 민간 기관 - 지역 주민 등 위계별 통합적 조직체계을 구축함
- 사업추진과정 및 장소협의 등 다양한 행정문제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문화 / 도시부 내 공공예술행 정전문직 배정하여 행정과 공공예술 큐레이터십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함
- 공공예술전략구축을 위한 우선순위목표(경제, 환경, 교통, 안전, 젊은 사람의 유입)의 설정 후 이와 관계된 도시 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표단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함


##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사업진행

- 1980년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전략 및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정체성과 공간 브랜딩에 성공함
- 현재 개발 중인 공공예술전략 매뉴얼 (The Manual: A Public Art Strategy for Knowle West) 역시 2011-203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시설, 교통, 주택, 도시 인프라, 녹지공간, 상업공간 등 도시 내 각 공간의 개발계획 및 컨텍스트에 적합한 장기적 전략을 연구함


## 위성도시 및 업무지구 개발과 공공미술의 융합, 라데팡스(La Defense, France)

## 도시개요

## 새로운 개념의 위성도시

- 1956년 프랑스 중앙정부의 광역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파리외 집중된 업무 및 주거기능을 보조하는 위성 도시로 개발하고자 1958년 '라데팡스 건설 공공기구(EPAD)'가 설치됨
- 1974년 신도시 계획 시작과 동시에 행정당국은 현대 미술가들의 창조력으로 라데팡스 광장과 거리 를 예술적인 공간으로 조성함
- 약 1,500 여개의 정보통신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체가 입주한 225 만평(750ha)의 규모로 업무 및 상업중 심의 A지구(15ha)와 주택 및 공원 중심의 B지구(590ha)로 구분됨


그림23 라데팡스 중심지구 전경 및 도시 위치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배경

## 삭막한 신도시 환경

- 1970년대 중변까지 신도시 개발의 재원마련 및 기업유치에 집중, 중앙정부의 집중적 지원정책에 따라 도시 성장세가 증가하고 현대식 빌딩이 들어서나 파리 시민들의 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선 심각해짐
-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형태적 이질감 감소 및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예술 인프라를 통한 변화

- 미테랑 정부 출범 이후 업무기능으로 특화 개발된 도시기능의 다양성과 활성화방안을 위해 문화예 술정책을 마련, 80 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설치가 진행된 공공미술 사업은 인공적인 라데팡스 지구의 수직적 도시경관을 순화시키고 부족한 예술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그림24 라데팡스 개발 시기별 도시의 이미지 변화양상
표7 라데팡스 개발과정

| $\begin{gathered} \text { 제1 시기 } \\ \text { (1958년 - 1969년) } \end{gathered}$ | 1958년 라데팡스개빌청(EPAD)을 설립한 후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독자적으로 도 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함 |
| :---: | :---: |
| $\begin{gathered} \text { 제2 시기 } \\ \text { (1970년 - 1980년) } \end{gathered}$ |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였으나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패, 공공영역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삭막한 도시환경으로 파리 시민이 비난 |
| $\begin{gathered} \text { 제3 시기 } \\ \text { (1980년 - 1990년) } \end{gathered}$ | 1983 년부터 미테랑 정부에서 시행한 ‘그랑 프로제" 사업과 그 일환인 대규모 공공 미술정책 사업의 추진으 로 인공적인 라데팡스 지구 수직적 도시경관을 순화시키고 부족한 예술 인프라 확충함. |
| 2000년 - 오늘날 | 라데팡스 개발청은 2005년 12 월 "라데팡스 2015 - 미래의 감각" 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함 0 이는 "낡은 라데팡스를 혁신한다" 는데 초점을 맞춤. 현재 프랑스 20대 기업 중 14 개 회사가 라데팡스 지구 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약 1200 여개 회사가 약 11 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대형업무단지로 완성 |

## 비전 및 목표

- 드골 정권 후 계획적인 도시정비와 국제 현상공모를 통해 예술성 높은 건물을 계획하고 도시 이미 지를 개선하려는 노력,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식견이 높은 미테랑 대통령의 관심에 힘입어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랑 프로제(Grand Project)' 등은 오늘날 파리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도시의 계획과 실행의 과정에서 '균형과 조화' 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프랑스 고유의 예술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진지하고 사려 깊은 '계획' 에 입각한 체계적인 도시정비에 의해 실현함


## 재원조달방식

## 건축권 매도와 $1 \%$ 법

- 초기 건축권 매도를 통한 라데팡스 개발청의 자금조달방식은 공공영역 특히 공공미술 설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웠음
- 문화부 설립 이후 1951년 제정된 $1 \%$ 법 도입되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 후 점차 모든 건축물 로 확장, 일부 민간참여 제도의 의무화 및 기금제를 도입함


## 공공미술주문기금제도

- 1983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미술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1 \%$ 법의 맹점을 개선 하기 위해 문화부 산하의 공공미술주문기금제도를 실시함
- 공공미술 관련 예산 증가로 인해 야외 설치 조각품뿐만 아닌 실내 로비에 설치되는 장식과 회화작 품, 공연장이나 전시시설 건립에도 예산을 활용함


## 추진체계 및 조직

## 라데팡스 개발청(EPAD)

- 라데팡스 개발청은 공공미술정책을 추진하는 실무진으로서 작품 기획,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계약, 작품설치의뢰, 보존업무를 수행함
- 수준 높은 작품 선정을 위해 문화부 예술창작자문관이 위원장인 전문가위원회에 자문 후 결정함
-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작품의 경우도 개발청이 진행함


## 문화부 산하 공공미술 주문기금 제도

1) 재훤지월

## 라데팡스 개발청 (EPAD)


자 문

## 전문가 위원회 문화부 예술창작자문관

그림25 라데팡스 공공미술 정책 추진체계 및 역할

##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 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의 상징화

- 1974년 라데팡스 개발청의 장 미이에(Jean Millier)회장은 지구 지상광장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것 을 결정, 전통적인 입체 조각보다 동 시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이용하여 라데팡스 지구 현대 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칼더(Calder), 미로(Miro), 아감(Agam), 브네(Venet), 미야와크(Miyawak), 세자르(Cear), 타키(Takis), 코발스키(Kowalski)등 동시대 미술 거장들이 라데팡스 광장을 대형 야외 조각공원으로 변화시킴


## 현대적 건축물과 조화로운 작품

- 각각의 빌딩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동시대 예술작품을 수집,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국적의 미술작품을 포괄적으로 선택함
- 지구 전체의 최첨단 디자인의 건축물 전면과 조화되는 약 65 점의 예술 조각품을 배치함


## 도시 인프라와의 결합

- 지구를 통과하는 수도권 지하철인 RER의 A선 교통시설 내 광장, 역사 벽면, 환기구, 대합실 및 승강장 벽면과 같은 지하공간에 예술작품과 결합하여 불특정다수의 대중들이 매일 접하는 장소에 활력을 부여함
- 과거 보행자와 입주 기업의 기피시설인 거대한(높이 32 m )콘크리트 벽체인 지하 환기구는 그 기능은 유지한 채 5 개의 독특한 예술작품으로 탈바꿈


## 장소 특정적 작품

- 지구 중심도로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 분수, 공원과 같은 공적 공간 내 장소적 맥락에 부합되는 작품
- 새로운 기술, 과학, 소리와 빛을 사용하여 새로운 느낌과 공간을 경험케 하는 조형성을 보여주는 현대작가들이 환경조형물 설치에 참여함


## 시사점

## 대규모 공공예술정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초기 업무지구로 특화된 신도시 라데팡스 지구는 정부의 막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에 실패, 라데팡스 지구의 부정적 이미지 재고와 미래지향적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예술 분야를 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함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추진된 정책은 라데팡스 지구의 도시경관을 예술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며 도시 활성화에 기여함


## 도심 내 공적공간과 예술의 유기적 결합

- 역사성과 예술성이 공존하면서 사람들의 체험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인 중심 광장부에 공공예술품을 곳곳에 설치함
- 최첨단과 예술 도시 이미지의 고착화됨에 따라 이로 인해 연간 84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80억 유로의 경제이익이 발생함

La Defense PUBLIC ART
시대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성격의 공공예술풍의 자원축척화


1970 건축물 전면부에 설치되는 조긱물


1980 라데평스 광장 내 유명작가의 대형 공공예술품


1990 기업 실내공간및 교롱 인프라와 결합묀 작풍


2000 공원 및 광장 내 장소 택정적 작품
그림26 라데팡스 지구 내 공공예술품의 시대별 경향

## 거주지역개발과 결합한 공공미술, 레이체 레인(Leidsche Rijn, Netherlands)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배경

## 새로운 개념의 위성도시

- 유트레히트시(Utrecht)는 1997년부터 네덜란드 최대규모의 신주거지인 레이체 레인을 개발하면서 공공미술과 도시계획, 건축, 조경,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시나리오를 계획함
- 이를 위해 레이체 레인시의 토지개발국과 문화국은 SKOR(Foundation for Art and Public Space)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레이체 레인을 넘어(Beyond Leidsche Rijn)' 라는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함


## 예술을 통한 지역 활기부여

-2001년 시의회에서 공공미술 추진에 쓸 재원확보를 승인받고 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현재까지 10여년째 지속하고 있음

- 15 년간의 예산을 700 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의 절반정도는 유트레히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 고, 일부 중앙정부 예산 및 SKOR 의 기금과 일반 기업협찬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림2ㄱ레이체 레인 윛ㅊㄷㅗ 및 도시 이미지

## 비전 및 목표_ 'BEYOND Leidsche Rijn'

- 공간적 체계에 의한 현대적 개발로서 레이체 레인의 장소성 및 특성을 근거로 이루어 짐
- 현재 건설 프로그램의 관습으로부터 탈피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킴
- 프로젝트 영역의 한계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적 개발 및 공공미술이 되도록 함


## 추진체계 및 조직

## 유트레히트시(Utrecht) 차원의 추진체계 구상

- 유트레히트 시의회의 시장과 부시장은 레이체 레인 BEYOND 프로젝트의 문화담당 부서 감독에 위임
- 행정 책임은 레인츠 레인의 부시장과 문화부 시의원이 공유함
- 시 당국 이외에도, 주위 십여 개의 소형 프로젝트 조직에 의해 구현됨
- 예술팀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작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현,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게 됨


## 예술 감독제 (DIRECTOR ARTISTS)

-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닌 예술가를 초청하여 Director Artists라 명명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 ACTION RESEARCH

- Action Research는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위해 마련한 임시적인 용도의 베이스캠프와 같은 공간임
- 예술가들이 실험과 개입을 통하여 레이체 레인의 잠재성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림28 ACTION RESEARCH

## PARASITES

- Parasites는 이동가능하면서 실험적인 형태의 건축을 지칭하며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커뮤니티의 창조를 추구함
- 도시개발이전에 예술가들이 부지의 비어있는 곳에 어디든 지을 수 있게 하여 자유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함


그림29 PARASITES

## LOOPING

- 지역주민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젝트임
- 이를 통해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출판, 아카이빙, 심포지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 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Beyond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그림30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과 홈페이지((http://www.beyondutrecht.nl)

## ARTIST HOUSES \& WHITE SPOTS

-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예술가를 초청하여 예술가의 집을 짓고 프로젝트를 진행
- 주택의 건축 및 이벤트의 조직 자체를 프로젝트의 연장에 놓이게 함
- 열린 장소로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용도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그밈31 조각공원 만들기 프조젝트

## 시사점

## 도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미술

- 때로는 토지이용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 공공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도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진화하는 형태의 공공미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도시 전반에 예술가들의 참여

- 일정한 공간과 범위에서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
- 건축가, 조경가, 공공 예술가, 환경운동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작가들이 참여함
- 도심 내 빈 공간 어디든지 실험적이며 독창적인 작품을 설치함


## 지역주민과의 소통

- 열린 공공 공간 내 실험적 작품설치로 지역주민의 일상 속에 공공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협력 아래 다양한 지역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함


## 공공미술을 통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의미 창조, 뮌스터 (Münster, Germany)

## 도시 개요



- 뮌스터 시는 독일의 중북부에 위치한 인구 30만의 소도시로 과거 물류의 중 심지였음
- 부유한 상인들의 개인 교회들이 도시 안에 많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뮌 스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음
- 카톨릭이 우세한 보수적 성향의 도시로 전쟁으로 도시의 $90 \%$ 이상이 파괴되 었으나 전후 복원작업을 통해 고도의 모습을 살려내 오늘날 아름다운 중세 풍의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히기도 함

그림32 뮌스서 위치도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도입배경

- 도심 재개발에 있어서 일종의 '유화 정책' 으로 미술을 끌어들이면서 현대예술을 둘러싸고 전문가 그룹과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장기간의 공방전이 발생함으로서 현대 미술에 대한 대중의 인 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시초가 됨
- 1977년 이후 2007년까지 4회의 조각 프로젝트를 통해 ‘장소와 장소특정성’ (Site-Site Specificity), 그리고 ‘장소 이후의 장소’ (One-place-after-another), 이어서 공공장소에서 미술을 주제의 일관성과 연계된 작품을 실현시켜 보여주면서 공공장소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기능가지 성공적으로 보여줌
- 박물관 전시와 함께 열린 9개의 독립적인 프로젝트의 섹션들이 현재 도시 야외공간에서 열리고 있 는 세계적 전시회로 진화함


## 공공미술 프로그램 성격 및 특징

- 도시라는 개념에 감응하고 때론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정 작품들을 설치함으로 써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예술과 공공 공간과의 관계를 실험함
- 초청된 작가들이 일정기간 뮌스터에 머물며 뮌스터의 역사와 상황 속에서 자신의 화두를 찾아내고, 어떤 작업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함
- 원칙적으로 전시된 작품들은 전시가 끝나면 작가에게 반납하나 지금까지 3 회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의 많은 작품들이 뮌스터 시정부나 후원자들에 의해 구입되거나, 작가의 기증으로 뮌스터에 보존되고 있음
- 2007년에 열린 4회 프로젝트의 경우 37명의 작가가 초청되었고 33개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중엔 영화와 퍼포먼스도 포함되어 있음

표8 시기별 뮌스터 프로젝트 개념 및 특징

| 구 분 | 년 도 | 개 념 | 특 징 |
| :---: | :---: | :---: | :---: |
| 제 1회 | 1977 |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br> (Sculpture projects münster) | - 지율숭이서 벗이난 미술의 공공과 공공성, 그릭 공공 영역아나 공공장소에 괸한 문제 ㅈㅔㅣㅣ |
| 제 2회 | 1987 | 장소 특정성 <br> (Site specificity) | - 도심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예술과 공공 영역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 다각도에 걸친 이해를 다룸 <br> -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소특정성’ 에 관한 것으로, 한 장소의 특정성,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적 형태를 위한 장소성의 문제를 제기 |
| 제 3회 | 1997 | 장소 이후의 장소 <br> (One place after another) | - 도시공간 안에서의 미술, 문화적 소통에 대한 고찰과 확장된 장으로의 미술에 대한 탐구 |
| 제 4회 | 2007 | 공공장소에서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 | -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의 기능과 역기능’ 에 대한 이슈에 기초하여 현대미술과 사회 적/ 미적 역할에 대한 이해와 작품의 관계를 다룸 <br> - 많은 작품들을 도시의 공간 그리고 역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공 영역과 미술 과의 관계를 탐구 |

## 프로젝트의 운영

- 예술감독인 카스퍼 쾨니히를 중심으로 큐레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맡아 10 년 단위의 짧지 않 은 공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
- 525 만 유로(한화 67 억 원)에 달하는 행사예산은, 상주인구 28 만으로 독일에서는 중형급 도시인 뮌스 터가 150 만 유로를 부담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정부의 문화기금 등의 지원금과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조달함


## 성 과

##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마케팅

- 1997년부터 지금까지 매 10 년마다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함께 유럽의 3대 전시회로 손꼽히고 있음
- 10 년 단위로 변화하는 예술 상황뿐 아니라, 한 도시의 실재 공간을 대상으로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문화 마케팅의 성공사례로 도시의 정체성에 큰 역할을 기여함


## 차별화된 전시를 통한 예술적 소통의 기회

-2007년 4회까지 반복하여 참여하는 작가를 비롯하여 총 170 여명이 참여한 현대조각과 공간 설치 전시로 예술과 다양한 대중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수한 형태들을 연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장소에 대한 문제는 물론, 그 지역의 역사성과 동시대 이슈를 끌어들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의 장소라는 특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점에서 동시대 어느 미술 행사보다 전위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있음
- 예술가와 일반시민 사이에 참다운 예술적 소통을 이루려는 참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경제적 효과

- 1997년 제 3회 때의 방문객이 50만명, 2007년에는 57만 5천명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 방문객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 일본 관광객의 경우 그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00 \%$, 미국관광객의 경우 $40 \%$ 가 증가하여 4회 프로젝트가 열렸던 $7,8,9$ 월 중 경제성장률이 예년대비 $20 \%$ 가 상승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베스트팔렌 경관연합(Landschaftsverband Westfalen-Lippe (LWL)), 뮌스터 시 등 다양한 후원을 이루어냄
- 뮌스터 시에 따르면 2007년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632만 유로(한화 약 88억 원로 뮌스터시의 재정과 상 급 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의 지원금, 연방정부의 문화기금 지원금,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조달함
- 이 중 $50 \%$ 는 작품 제작에 소요되었고, 되었고 결산 결과 30 만 유로의 이윤이 발생함


## 성공요인

## 예술을 소재로 한 공공장소의 새로운 접근

- '예술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뮌스터 프로젝트는 예술, 사회, 대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획 의도에 맞게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음
-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현대예술’ 을 프로젝트의 주제로 하고 있음


## 확산된 장으로의 전시 공간

-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작품들은 미술관이나 조각공원이 아닌 도시 공공영역에 확장되어 전시함으로 써 대중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킴
- 자전거 교통망이 독일에서 제일 잘 갖추어진 도시인만큼 관람객들은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작 품들을 찾아다니게 됨으로써 외지 관람객들도 자연스럽게 전시작품과 더불어 도시 곳곳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점이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전됨


그림33 과거 전시작품들의 전시 공원
그림34 정신지체우 교육차원의 공공미술
그림35 정신지체우 안내투어

##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작품제작

- 시정부로부터 초대받은 작가들은 작품 제작에 앞서 몇 개월 동안 뮌스터에 체류하면서 워크솝, 미팅, 그리고 학습과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이 전시될 공간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 그리고 사회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작품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됨
-작가들은 뮌스터 도시 내에서 구상을 시작하고 작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작가는 큐레이터를 비롯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작품제작에 간섭을 받지 않으며, 시 정부는 이들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함
- 작품들은 임시로 혹은 영구적으로 전시될 공간의 사회성, 역사성과 어울리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됨
- 현재의 삶으로부터 예술을 창작함으로써 정치 및 환경문제, 소통의 문제 등 공공성을 지닌 작업들이 제작됨


## 영구 보존 작품의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제공

-작품전시가 끝나면 작품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반납하게 되지만 시정부나 사회단체, 기업 또는 개별 후원자가 작품을 선별하여 매입함으로서 뮌스터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싶어 하는 작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
－시민들의 선택으로 보존된 작품들은 일상 속에서 예술작품을 체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의 예술적 환경조성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됨
－이는 곧 시민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고 사후관리 및 봉사활동 등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

##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질적 향상 도모

－ 10 년 주기의 개최주기는 시의 규모에 알맞은 예산 및 문화적 자산의 수용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기에 적합함
－문화관광 이벤트나 단순한 미술전람회 행사이기 보다는 예술체험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근본 취지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현대예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발전，곧 문화의 발전은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함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의 기회 확대

－영상시사회，공개토론，강좌，예술가들과의 좌담회 등을 통해 공공 영역과 도시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면들을 고찰해 볼 수 있음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들이 토론의 장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공공 영역 속의 예술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음
－전시물들을 둘러보는 개인 및 단체투어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참여활동，학생들과 젊은 성인들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구성된 여름학교（Summer Academy）가 열리기도 함
－일반인용 전시안내 카탈로그와는 별도로 컬러풀한 삽화로 가득한 어린이용 안내판을 따로 제작하여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여러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함
－뮌스터 예술학교（Münster Academy of Arts）의 도움을 받아 카탈로그와 안내서를 제작하여 지역 사회 의 참여를 이끌어 냄


## 올림픽 개최와 구도심 공공미술,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

## 도시 개요



- 바르셀로나(Barcelona)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부터 프랑스 남쪽 피레네 산맥과 접경지역을 아우르 는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임
- 지중해에 면한 스페인의 주요항구이며 상업 중 심지로 바스크족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 아름다 운 경치로 유명함
그림38 바르셀로나 위치도 및 전경
- 인구 약 160 만명의 도시로 1992 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했으며, 파블로 피카소 호안 미로 실바도르 달리와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등 많은 예술가를 배출함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배경

## 도시개발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도입한 새로운 광장과 조각 프로젝트

-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새로운 광장과 조각이라는 주제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 도시의 소외된 지역에 현대 조각을 도입하여 예술과 결합한 오픈 스페이스를 창조했고, 이 프로젝트 를 통해 새로운 광장과 공원이 조성됨


## 도시문화재건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

- 1992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이루어진 도시문화재건 프로젝트(Renovation)를 통해 가로변과 스포츠 시설, 공원,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도시시설 전 영역에 걸쳐 정비와 재생을 기획하고, 첫 번째 캠페 인에서 대규모 야외 조각들을 설치함
- 도시 전체를 여가와 문화의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공투자와 민간자본 을 유치했음


## 공공미술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 5천만 달러를 들여 50 여개의 야외 조형물과 200여개의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였고,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예술가들에게 평균 2 만 달러를 지원함
- 올림픽 개최로 인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경비가 지원 되었으나 대부 분은 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충당함


그림39 베버리 페퍼스（Beverly Peppers），〈Cielo Caido〉


그림40 0 고르 미톨ㅇ（lgor Mitori），충조옴툼 그림41 앤드류 알파로（Andreu Alfaro），〈Waves〉 그림42 프랭크 게리（Frank Gehry），〈Peix〉

## 성과

－공공예술이라는 장기적 목적을 위해 약 5년간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 바르셀로나의 이미지 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림
－도심의 골목과 낡은 지역들이 새로운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관광과 축제의 거리로 탈바꿈됨

## 성공요인

－공공예술과 도시공원 및 광장을 통합적으로 계획．설계하여 통일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미술 의 공공적 기능을 증진시킴
－하향식 도시공간계획이나 디자인계획이기 보다는，공공과 민간의 합의와 협력에 기초한 참여계획과 더불어 작가，행정가，건축가，도시 계획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예술을 단순한 장식품으로 여겨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도시의 다양한 장소와 구조물들 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예술작가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함
－다양한 도시프로젝트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돕고，도시의 경제 및 사화문화 구조에 있어 기존의 산업도 시，관광도시에서 국제비즈니스 창조도시로 전환하면서，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소속감을 확산시킴

## 주거지구 개발과 공공미술, 파레 다치카와(Faret Tachikawa, Japan)

## 도시 개요



그림43 다치카와 위치도

- 미군기지 반환을 계기로 도쿄도가 다치카와 시 지역에 새롭게 조성한 상업 및 업무지구의 이름으로, 도쿄도의 중앙부에 위치 하여 도심으로부터 30 km 권내에 있음
"파레(faret)는 이탈리아어로 ‘창조’ 라는 뜻으로 1922년 육군 비행장이 건설됐고 제2차 세계대전 땐 미국 공군기지가 들어온 이후 ‘하늘의 도시’ 로 불렸음
- 1971년 미군기지가 일본에 반환되고 나서 본격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됐었으며 당시 과밀화된 도쿄 중심부의 기능을 주변 도시에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는데 다치카와의 경우 문화 기능이 강조됨


그림44 다치카와 시의 현재 모습
그림45 1950년-1970년까지 미군 비행장이었던 다치카와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배경

- 도쿄도 중서부 다치카와시(市)의 미군 기지가 이전한 부지(6ha)를 주택가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를 아트(art)화하자' 는 대담한 발상을 채택함
-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는 경향을 반영해 미술관에 있던 작품을 마을 속으로 끌고 나와 누구나 걸터 앉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미술을 구현함
- 뚜렷한 정체성이 없던 지역에 '새로운 문화의 구축’ 이라는 지역 모토가 설정됨
- 77년 반환된 미군기지의 480ha 중 쇼와기념공원 등을 제외한 5.9 ha 에 백화점, 호텔 등 인텔리젠트 빌딩이 밀집하면서도 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도심을 조성함


## 공공미술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 "파레 타치카와" 예술 계획은 인간의 다양성, 다면성, 중층성을 도시라는 공간에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출발함
- 예술과 생태를 주요 요소로 생각하고 뜻을 함께하는 37 개국 90 여명의 작가로부터 107 개 작품을 받 아 마을 곳곳에 설치함
- 도시를 재개발하는데 든 총 사업비는 10 억 엔이었으며, 그 중 공공미술 조성비에 $0.3 \%$ 를 투입
- 전문적인 공공미술 기획팀을 동원해 109점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세계적인 작가들과 일본 중진작 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배치함
- 인근에 비행장이 있어 신주쿠와 같은 초고층 건축물의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보도 면적을 극 대화시켜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작품이 살아 움직일 공간을 계획적으로 확보함
- 공공미술을 지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도입함으로써 지역 명소 만들기에 성공한 일본의 파레 다 치카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도시와 예술’ 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놀라움과 발전이 있는 공공 공간 만들기' 를 실천함
- 기존의 문제인 미술관 공간을 동시에 이해가능한 전문직, 전문성의 보급을 위해 아트플래너를 선정함
- 계획단계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장소성과 부합한 배치 계획 및 작가선정을 담당함

표 9 파레 다치카와 공공미술 프로그맴
구분
무대

- 무대 행시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 되는 장소로서 후미의 거리나 및 보도 같은 공간을 의미함 - 사람의 관점이 활성화되며, 일반적인 경관은 즐거움과 흥분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함


갤러리 거리 $\operatorname{\bullet ㄱㅐㄹㄹㅓㄹㅣ~ㄱㅓㄹㅣㄴㅡㄴ~ㄴㅔ~ㄱㅏㅈㅣ~ㅂㅏㅇㅎㅑㅇㅇㅢ~ㅈㅜㅇㅅㅣㅁㅊㅜㄱㅇㅡㄹ~ㄸㅏㄹㅡㄱㅗ~ㅇㅣㅆㅇㅡㅁㅕ~ㅅㅏㄹㅏㅁㄷㅡㄹㅇㅡㄴ~ㄱㅐㄹㄹㅓㄹㅣㄹㅡㄹ~ㄱㅏㅁㅅㅏㅎㅏㅁㅕ~ㄱㅓㄹㅣㄹㅡㄹ~ㄱㅓㄹㅇㅡㄹ~ㅅㅜ~ㅇㅣㅆㅇㅡㅁ~}$


| 랜드마크 | $\cdot$ 도시의 방문객들에게 쉽게 눈에 띨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고, 심지어는 사인표지판도 예술작품으로 변화함 |
| :--- | :--- | :--- |



## 시사점

- 공공미술을 지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도입함으로써 옛 미군기지를 예술의 도시로 변모시키고 지역 명소 만들기에 성공함
-파레 다치카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도시와 예술’ 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예술과 시민의 삶이 함께하도록 시도함
- 작품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도시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자연스럽 게 스며듦
- 새로운 조성된 도시이지만 공공미술을 통하여 도시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시민 자원 봉사자 단체인 ‘파레 구락부’ 는 연 2-3회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파레 아트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품 청소와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10 레 다치카와 공공미술 보급 활동

| 구분 | 행사명 | 내용 |
| :---: | :---: | :---: |
| 투어 | 파레오픈 기념투어 <br> 나이트 투어 | - 매년 10 월 13 일 개최, 네온 및 발광 다읻ㄷ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1 시간의 투어를 진행하 고 희망자에 한하여 이탈리아 요리를 즐김 |
|  | 다치가와 투어 | -다치카와 국제예술제 개최 시에 운영함 |
|  | 국제 예술제 협찬 의뢰추어 | -닻ㅊ카와 시내 초중등학생, 미술관 및 강좌 참가자, 행정기관, 기업, 취미 그룹, 메스컴 취재 등 의뢰가 있을 경우 운영 |
| $\begin{aligned} & \text { 관련 } \\ & \text { 이벤트와 } \\ & \text { 홍보활동 } \end{aligned}$ | 작품 청소 | -2001년부터 자원 봉사로 작품 청소를 행하고 있음 <br> -2002년부터 시의 위탁으로 작품 29점의 청소와 관리를 연 2회에 걸처하고 있으며 시민 자원 봉사자도 참여할 수 있음 <br> - 청소는 파레다칰ㅋ와의 예술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깨끗하게 하여 작품을 소중 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으며 ‘반짼반짝 아트’ 라고 이름을 붙여 자원봉시지를 모집 하고 있음 |
|  | 워코소 | - 청소와 동시에 파레 다치카와의 작가 워코솝도 행하고 있음 |
|  | 기타 | -토쿄토크 <br> - 파레 다치카와 아트 시민 자원봉사 연수회 <br> - 현대예술과 한마디 이야기하는 모임 |
|  |  |  |

## ‘항만 재개발과 공공미술의 결합’ 멜버른，호주（Melbourne，Australia）

## 도클랜드 재개발사업 개요

－멜버른시의 도크랜드（Dockland）재개발은 1900 년대부터 항만시설인 도크로 활발하게 사용되던 수변 공간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쇠퇴한 이 지역의 재생을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임
－200ha의 면적의 워터프론트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주거지역 2 만명，업무지역 4 만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임
－이 개발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1991년 「The Docklands Act」 가 제정되었고，2003년 ${ }^{「}$ Victorian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ct」 가 제정되었음


그림46 도크랜드 재개발사업지역 전경
그림47 도크랜드와 CBD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크랜드 개발은 빅토리아도시개발청（VicUrban：Victoria Urban Development Authority）과 멜버른시과 협력체계로 추진하고 있으며，여러 민간섹터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민간섹터는 개발규모의 $1 \%$ 를 일명＇Art Fund＇라 하여 예술작품 설치를 위한 펀드 출자해야 함
－빅토리아도시개발청은 이 자금으로 도크랜드 곳곳에 35여개의 예술작품을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50 여개의 추가 예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임


그림48 도크랜드 내부 전경과 아트 조형물

## Webb Bridge (웹 브릿지) 프로젝트

## 추진배경

- 웹 브릿지(Webb Bridge)는 도크랜드를 개발하면서 야라강 남측에 새로 지어진 주거단지인 사우스 뱅크(South bank)를 도크랜드와 연결하기 위해 지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임
- 이 프로젝트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야라강(Yarra River)의 새로운 보행교 디자인 공모전 을 개최해 당선된 디자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기존에 남아있던 Webb Dock Rail Bridge를 재개발하는 기본 요건이 주어졌고 여기서 건축 가 Denton Corker Marshall과 예술가 Robert Owen이 공동 작업 디자인한 웹 브릿지가 최 우수 작품으로 당선됨


## 주요 설계 개념

- 웹 브릿지는 두 개의 명확한 섹션으로 구분(기존에 존재하던 145 m 의 긴 구조물과 새롭게 디자인된 80 m 커브의 램프로 연결된 구조물됨
-램프는 레벨이 다른 두 지역을 연결하며, 꺽이고 구불구불한 형태가 다리를 에워싸면서 독특한 볼륨 을 강조하고 있음


그림49 웹 브릿지 전경

## 시사점

- 도시재개발 프로젝트 추진시 예술작품 설치를 위한 펀드 출자를 통해 도시의 예술문화자원 창출
- 도크랜드의 상징이 된 웹 브릿지를 건너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은 디자인을 체험하며 교량 레벨에 따라 다양한 조망과 변화를 즐길 수 있음


## 선택적 기금제의 통합적 활용사례

## 참고_ 북미지역의 선택적 기금제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건설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념을 민간개발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 개발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작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 퍼센트를 문화트러스트(Cultural trust) 또는 공공미술기금 (Public Art Fund)에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퍼센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나머지는 공공미 술 기금에 분할하여 쓰도록 하고 있음
- 직접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신탁이나 공공미술기금에 납부할 경우, 직접 작품을 설치할 때 요율과 동일하게 $1 \%$ 전부를 기금 에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부터, 절반에 해당하는 $0.5 \%$ 만 내도록 하는 경우까지 다양함
- 대부분의 도시는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방법(\%ㅂㅂㅂ)과 문화재단 혹은 공공미술 기금에 기금을 납부하는 방법(선택적 기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는 전체 요율 중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비율과 기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을 정함.
- 선택적 기금제는 157 개 $(30 \%)$ 프로그램에서 채택하고 있었으며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

유형 1) 미술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금에 납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함

유형 3) 미술품을 전액 설치하거나 기금에 전부 납부하거나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고 일부를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중에서 선택함

〈북미지역 선댁적 기금제의 유형〉

| 구분 | 선택1 | 선택2 | 선택3 |
| :---: | :---: | :---: | :---: |
| 유형 01 | 설치 $100 \%$ | 김 $100 \%$ |  |
| 유형 02 | 설치 $100 \%$ | 석치 $60 \sim 75 \%$ |  |
| 유형 03 | 설치 $100 \%$ | 기금 $25 \sim 40 \%$ |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 산타모니카, 미국 (Santa Monica, USA)



그림50 산타모니카 위치도

## 도시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군 서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인구 는 약 9 만 1,124 명이고, 온화한 기후와 화창한 날씨로 20 세기 초부터 리조트 타운으로 관광지화 되었음
- 1980년대 도심 재개발이 있은 후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으며 관광 수입도 급증함


##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배경

- 산타모니카 시는 예술, 문화적 활동 및 교육과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거주민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요소로서 문화를 바라봄
- 따라서 시 당국은 산타모니카 시의 문화 환경 확대를 위해 2007년 문화계획(Cultural Plan)을 수립하 였으며 공공건축물에 한해 유지되어오던 공공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민간 개발자들에 의한 사업으로까지 확대함(3)
-2011년 미국 전역의 400여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산타모니카시의 3개 작품이 미국 공공미술 관련 기관인 아메리칸 포 디 아츠(Americans for the Arts)에 의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됨


그림51 아트 트랙 산타모니카 (Art Trek Santa Monica)
그림52 Ball Nogues Studio, 〈Cradle〉
자료: http://www.santamonica.com/visitors/what-to-do/arts-and-culture/art/public-art/

## 기금 확보 방식

## 기금 요율의 인하

- 문화계획(Cultural Plan)의 수립을 통해 대상지의 공공미술을 위해서 개발비의 $2 \%$ 를 투자하거나 문화 신탁기금(Cultural Trust Fund)에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용도지역조례(Zoning Ordinance)를 정함
- 해당 건축물 대지에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비용의 $2 \%$ 를 투자해야하며, 컬츄럴 트러스트 펀드Cultural Trust Fund에 기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건축비용의 $1 \%$ 를 납부하도록 함

표11 미국 산타모니카 공공미술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시직연도 | 설치 시 요율 | 기금 납부 시 요율 | 기금명 |
| :---: | :---: | :---: | :---: | :---: |
| 산타모니카 문화계획 (Cultural Plan) | 2007 | 건축비의 2\% | 건축비의 $1 \%$ | Cultural Trust Fund |

[^4]
## 기금납부 절차의 간소화

- 개발사업자들이 해당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품의 질과 창의성, 경관과의 적합성, 시의 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판단하는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침
- 하지만 이에 반해 문화신탁기금(Cultural Trust Fund)에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더 적은 비용을 납부 하게 하는 것 이 외에도 납부 절차를 매우 간소하게 하여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를 더 선호 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림53 산타모니카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절차

## 시사점

- 공공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던 도시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민간 개발의 영역까지 확대 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예술 환경이 보다 확장되며 시민의 삶에 깊숙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함
-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을 통하여 산타모니카 시에서 추구하는 문화계획의 목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기금 납부 요율의 하향 조정, 절차의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퍼센트 법보다 선택적 기금제로의 참여를 유도함


## 로스앤젤레스, 미국 (Los Angeles, USA)



그림54 로스엔젤레스 위치도

## 도시 개요

-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적 중심지인 이 도시는 미국 전체에서는 둘 째, 서부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
- 1980년대 도심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공공건물 뿐 만 아니 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퍼센트법 및 기금제도를 적용
- 공공미술 영역에서 큰 발전을 이뤄 공공미술의 개념이 공공시설물

과 시민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낳음

##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배경

- 로스앤젤레스에서 선택적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전시(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 CRA)와 교통공사(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로 구분됨


##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전시 (Los Angeles 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 CRA)

- 1985년 시행초기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만을 위해 다운타운 공공장소 안의 미술정책 수립
- 1993년 공공미술정책으로 대치되어 현재에는 시의 모든 재개발 지역으로 확대 적용
- 현재까지 17 개의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200개 이상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완료됨


## 로스앤젤레스 교통공사 (Metropolitan Transportation Quthority, MTA)

- 1989년 LA 교통공사에서 메트로아트(Metro Art) 부서를 설립
-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 거리와 담 등에서 통행자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표12 로스엔젤레스 선택적 기금제 도입사례의 특징


## 선택적 기금제의 주요 목표

## 지역의 장소성 확립

-CRA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함

- 도시구조와 잘 통합할 수 있으며, 높은 질의 공공미술을 제공함
- 계획단계에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창출함


## 일반 시민들의 참여 독려

- 지역 커뮤니티가 예술감독위원으로서 문화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인터닛을 통해 공공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


## 예술가들의 참여 활성화

- 디자인팀의 구성원들과 예술가들의 고용을 동등하게 하며 예술가들과 다자이너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내용, 목표 등에 대해 소통하며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


## 기금 확보 방식

## 선택적 기금제의 선택사항 부여

-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전시(CRA)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해당 개발비용의 $1 \%$ 를 공공미술 에 기여하도록 함
- 위의 $1 \%$ 법에 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지들은 개발비용 $1 \%$ 의 사용방법을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전시 (CRA)가 제시하는 세 가지 안 중 선택가능

선택1) 개발비용 $1 \%$ 의 전부를 해당부지에 장소 통합적 예술작품이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데 사용
선택2) 개발비용의 $1 \%$ 중 $60 \%$ 는 해당 개발 부지의 공공미술품 혹은 문화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으 며 $40 \%$ 는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전시(CRA)가 관리하는 문화신탁기금에 납부

선택3) 개발비용 $1 \%$ 의 전부를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전시(CRA)가 관리하는 문화신탁기금에 납부

## 시사점

-기금 납부와 설치를 혼용하는 다양한 안을 제시하여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에 보다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자들의 선택적 기금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율을 증진
- 건축물 뿐만아니라 공공장소(교통시설 포함)에 기금제를 적용하여 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포틀랜드, 미국 (Portland, USA)

## 도시 개요



그림55 포틀랜드 위치도

- 미국 오리건 주 북서부에 있는 오리건주 최대의 도시이며 경제 • 상공업 • 교통의 중심임
- 1845년에 건설된 도시로 윌래멋과 컬럼비아의 유역 풍부하게 산출되는 목재•농산물의 교역•집산지로써 발전함
- 외국항로의 선박으로 활기를 띠는 미국 굴지의 항만 도시임
- 1970년대부터 공공공간 및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여 와 좋은 사례가 많은 도시임


##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 배경

- 1980년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제정하여 개발비용의 $1 \%$ 를 해당 부지 공공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함
- 1995년 퍼센트법의 요율을 $1.33 \%$ 로 개정함
- 1988년 Percent for Art Bonus 제도를 수립하여 개발비의 $1 \%$ 이상을 공공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면 용적률 보너스를 제공함
- 1995년 지역문화예술위원회(Regional Arts and Culture Council, RACC)를 설립하며 공공미술 프로그램 마련
- 법령 5-74-030에 의거하여 공공미술신탁기금(Public Art Trust Fund)을 설치함

표13 포틀랜드 공공미술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시작 <br> 연도 | 의무요융 <br> (건축비 대비 \%) | 선택적 기금 요육 <br> (의무 요율 대비 \%) | 기금명 |
| :---: | :---: | :---: | :---: | :---: |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프로금ㅁ <br> Portland Regional Arts \& Cultural <br> Council(RACC) Public Art Program | 1995 | $1.33 \%$ | $100 \%$ 기금 <br> $75 \%$ 설치+25\% 기금 | Public Art <br> Trust Fund |

## 선택적 기금제의 주요 목표

- 다양한 예술을 지역 커뮤니티의 공공공간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함
- 공공미술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작품들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그림56 미국 포틀랜드시 공공미술 가이드맵
자료: http://mww.racc.org/public-art/new-guide-portland\�2\�\�s-public-art-now-available

## 기금 확보 방식

## 선택적 기금제의 선택사항 부여

- 선택1) 공공미술 비용의 $75 \%$ 는 작품에 사용하고 $25 \%$ 는 기금으로 납부
- 선택2) 공공미술 비용의 $100 \%$ 를 기금으로 납부


## 민간 개발자에 대한 용적률 보너스 제도 운영

- 공공미술에 개발비용의 $1 \%$ 를 사용하는 민간 개발 프로젝트는 $1: 1$ 의 용적률 보너스를 받게 됨
- 공공미술에 개발비용의 $1 \%$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용적률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공공미술 비용이 $0.1 \%$ 증가할 때마다 용적률이 최대 $2: 1$ 까지 상승됨
- 용적률 보너스를 받으려면 공공미술 비용의 $25 \%$ 를 공공미술신탁기금에 위탁해야 함


## 기금의 운영

- 공공미술신탁기금의 $63 \%$ 는 반드시 공공미술의 수집 및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공공미술기금의 $27 \%$ 는 프로젝트를 괸리하고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바용으로 할애하도록 함
- 공공미술기금의 $10 \%$ 는 공공미술의 보존 및 철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공공미술기금의 지원 및 지출 내역은 매년 연차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

| $63 \%$ | $27 \%$ | $10 \%$ |
| :---: | :---: | :---: |
| 공공미술의 수집 및 설치 | 관리 및 교육 | 보존 및 철거 |

## 시사점

- 기금 납부와 설치를 혼용하는 다양한 안을 제시하여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에 보다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용적률을 허가기준보다 완화시켜 줌으로써 민간개발자의 선택적기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기금의 운영에 있어 공공미술작품의 설치 뿐 아니라 관리 및 교육, 보존 및 철거까지 고려하여 지출 비율을 정해놓음으로써 기금의 운영을 통한 공공미술의 지속성을 높임


## 참고_ 미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메리칸 포 디 아츠(Americans for the Arts)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예술지원 기관으로서, 그 내부에 공공미술 네트워크 (Public Art Network)를 포함하고 있음
-공공미술 네트워크는 13 명의 공깅미술 전문가들로 구엉되어, 이곳에서는 주요 모범 사폐와 관련 논문들을 출간하고, 해마다 가장 잘 된 공공미술 작품을 시상할 뿐만 아ㄴㅣㅏ 각종 컨피런스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주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미술 분아에서 '국가 정보 센티' 의 역할을 맡음

- 현재 미국에서는 350 개가 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정부의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이루 어 추산이 힘들 정도로 여러 콕 작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법이나 조례는 ' '\%밥' 이라는 이름으로 통하지만, 그것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될 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건축의 경우 총 건축 비용의 $2-5 \%$ 를 미술장식 혹은 공공미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적용비율이 항상된 것은 1998 년부터 2001년 사이에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성공한 결과임
- 미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연방이나 주, 시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정부 주도 프르갬, 민간주도 프르그램, 그리고 공공과 민 간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진행하는 프로금믕로 크게 분류 가능함
- 이들 주체들이 받는 기금은 각각의 주 혹은 시가 규율로 정하는 조례에 의거하나, 대부분 국립여술기금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 국립예술기금은 연방정부 신하에 있으나, 공공미술을 운영하는 역할보다는 운영주체에 기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취함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 밴쿠버, 캐나다 (Vancouver, Canada)

## 도시 개요



-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림비아 주 남서부에 있는 도시
-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잇는 세 번째로 큰 도시
- 캐나다 제 3 의 대도시로서 조지아 해협의 버라드만(灣)과 프레이 저강(江)의 삼각주 사이에 위치하며, 밴쿠버섬이 속하여 있음
- 서부 캐나다 최대의 상공업 도시이자, 태평양으로 통하는 주요 무역항임

그름 58 밴쿠버시 위치도

##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 배경

- 공공미술을 통해 밴쿠버의 정신, 가치, 비전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함
-작가들이 시 소유의 건축물, 공원 및 시설물에 작업을 하는 경우 밴쿠버 시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 작활동을 하도록 함
- 삭막하고, 기능 중심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인간중심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표14 캐나다 벤쿠버 공공미술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시작연도 | 의무요율 <br> (건축비 대비 비용) | 선택적 기금 요율 <br> (의무 요율 대비 \%) | 기금명 |
| :---: | :---: | :---: | :---: | :---: |
| 벤쿠버 문화부서 공공미술 프로금 <br> Vancouver Office of Cultural Affairs <br> Public Art Program | 1990 | 건축가능 면적 <br> 1피틍 당 $\$ 0.95$ | $100 \%$ 기금 <br> $60 \%$ 설치+40\% 기금 | Public Art <br> Reserve |

## 선택적 기금제 주요 목표

- 지역사회와 함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디자인 기술, 미적감각, 직관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존감을 확립
- 밴쿠버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당 장소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연결
- 공공미술 프로그램은 독립작가가 기술자, 계획자, 도시의 세계화에서 공공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 하는 사람들과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도록 장려


## 기금 확보 방식

## 개발 면적에 비례하여 공공미술 비용 적용

－개발 부지 1 피트 당 0.95 달러（ $1 \mathrm{~m}^{2}$ 당 10.23 달러）를 공공미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함
－민간 개발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금제를 운영하여 공공미술 예산기금（City＇s Public Art Reserve）에 납부하도록 유도함

## 선택적 기금제의 선택사항 부여

－민간개발자에 대해 선택적 기금제를 운영함에 있어 세 가지의 선택사항을 부여함
－선택1）개발자가 직접 개발 부지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미술 계획을 세우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함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공공미술 계획을 준비하는 공공미술 컨설턴트를 채용해야 함
－예비계획서，상세계획서，최종계획서를 거쳐 완성되며 최종계획서에는 설치장소，작가，작 품，장소，예선，설치시간，유지관리 등 기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선택 2）공공미술 비용의 $60 \%$ 까지 공공미술작품 제작에 사용하고 나머지 $40 \%$ 는 공공미술예산기금 에 납부
－선택 3）시의 공공미술 예산기금（City＇s Public Art Reserve）에 비용의 100\％를 납부


그림59 벤쿠버 선택적 기금제의 선택사항

## 시사점

－기금 납부와 설치를 혼용하는 다양한 안을 제시하여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에 보다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직접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공공미술 계획을 세우는 과정 이 필요하며 의무적으로 공공미술 컨설턴트를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작품 설치 절차를 까다롭게 함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보다 기금납부에 있어 민간개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선택적 기금제로의 참여를 유도함


그림60 Marko Simcic，〈Park〉


그림61 Allyson Clav．〈Overture〉


그림62 Fiona Bowie，〈Flow〉

# 04 <br> <br> 도시계획과 연계한 <br> <br> 도시계획과 연계한 <br> <br> 공공미술 구현전략 

 <br> <br> 공공미술 구현전략}

전략의 목표 및 내용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법제도 및 정책 개선
조직 구성
재원 확보
운영 • 관리

## 전략의 목표 및 내용

## 전략의 목표

|  | 목표1_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및 정체성 창출 |
| :--- | :--- |
| 도시계획과 <br> 연계한 공미술 <br> 구현전략의 목표 | 목표2_ 지역 공동체의 참여 및 문화향수 기회 확보 및 시민의 자긍심 제고 |
|  | 목표3_ 도시문화환경 향상과 문화유산의 확대 |
| 목표4_ 공공미술을 통한 새로운 예술문화관광수요 창출 |  |
| 목표5_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4개 부문 12 대 구현전략

## 법제도 및 정책 개선

-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도시발전전략과 공공미술을 연계
- 지방자치단체 공공미술이나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안
- 기존의 도시 관련 법 또는 시행령, 계획 제도에 공공미술을 추가하여 반영
- 기존의 도시 계획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조직 구성

- 중앙정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인, 기업, 지역주민, NPO 등의 다부문 파트 너십을 통한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조직 구성
- 도시적 차원에서 공공미술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경관,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예술, 역사, 건축 등 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를 추진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의 도입
- 도시 내 공공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비영리조직 구성


## 재원 확보

- 기금납부 절차의 간소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기금 선택에 대한 옵션 제공 등 다양한 선택적 기금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기금 요율의 차등적 적용 및 대상범위의 확대
-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 기금 캠페인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공공미술 재원 확보 채널 마련


## 운영 - 관리

- 공공미술을 활용한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시차원의 공공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표15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ㅁ술 4개 부문 12대 구현전략

구분
1 법제도 및 정책 개선

## 구현전략

전략1_ 도시발전 전략 및 관련계획과 공공미술의 연계

전략_ 지방자ㅊㅣㅣ단체 공공미술 조례 제정

전략3_ 기존 도시 관련 법제도 내 공공미술 반영

전략_기존 계획관련 제도의 적극적 활용


전략_ 통합적인 공공미술 추진조직 구성

전력6_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 도입

전략ㄱ﹎ㅇ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만관 파트너십 구축


전략_선택적 기금제 참여 활성화 수단 마련

전략9 선택적 기금 요율의 차등적 적용 및 대상 확대

전략10_ 민간부문의 다양한 재원확보 채널 마련
4 운영 • 관리

> 전략11_ 공공미술을 활용한 예술 • 문화 •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전략12_ 도시차원의 공공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법제도 및 정책 현황

## 관련법규의 체계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기초조사 및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확정 및 승인의 절차를 따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실시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상의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명시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공공미술과 관련한 큰 틀의 법적 체계를 제공
표16 공공미술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분 | 내용 | 조항 |
| :---: | :--- | :--- |
| 도시기본계획 | 경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 8호 |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 2호 |
| 지구단위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1）항 6호 |

## 「경관법」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시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수립의 제안 및 관리에 이르는 사항을 명 시하고 있음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 및 추진협의체，재정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에서 참고할 수 있음
－「경관법」 중 ‘’ㅕㅕㅇ관협정’ 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목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자 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또는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경관협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권라관계가 있는 전원의 합의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 및 경관협정서 작성이 가능하며，경관협정을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함
－「경관법」 의 3 만 $\mathrm{m}^{2}$ 의 대형개발의 경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이 경우 도시공공공 간과의 연계된 공공미술，도시적으로 코디네이션 된 공공미술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과 심의 프로세 스를 활용할 수 있음

[^5]표17 경관협정의 법적 규정

| 구분 | 내용 | 조항 |
| :---: | :---: | :---: |
| 경관협정의 체결 |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br> －1인 협정 <br> －경관협정의 내용 <br> －경관협정서 양식 | 제16조 |
|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 |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조건과 위원구성 <br> －경관협정운영회의 신고 ：시장 | 제17조 |
| 경관협정의 인가 및 열람 | －심의 ：경관위원회 <br> －인가 ：시장 <br> －인가내용의 열람 | 제18조 |
| 경관협정의 변경 | －변경 시 제16조，제 18조 준용 | 제19조 |
| 경관협정의 폐지 | －폐지의 합의 기준 <br> －폐지 인가 ：시장 <br> －인가내용의 열람 | 제20조 |
|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 －경관협정 체결가의 경관협정 준수의무 <br> －경관협정의 승계 | 제21조 |
|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 －기술 • 재정상의 지원 <br>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제22조 |
| 경관위원회의 기능 | －심의 ：경관협정의 인가 <br> －자문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 관련 사항 | 제23조 |

표18 공공미술 관련 「경관법」

| 구분 | 내용 | 조항 |
| :---: | :--- | :--- |
| 경관계획 |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수립의 제안 및 관리 | 경관법 제6조～제12조 |
| 경관사업 | 경관사업의 대상 및 추진협의체，재정지원 및 감독 | 경관법 제13조 $\sim$ 제15조 |
| 경관협정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경관법 제16조 $\sim$ 제22조 |

##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한 법률로써 건축물의 안전•기 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그 중 제8장 특별건축구역 관련 사항은 공공미술 정책에 있어 제도적으로 그 실효적 가치가 있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신청기관인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나，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5）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 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함
－지정신청기관이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 공공미술 작품 설치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역별 장소의 맥락과 여건에 부합되는 공공미술 작품설치가 가능함

[^6]표19 「건축법」중 제8장 특별건축구역의 사항 중 미술작품과 관련된 사항

| 구분 | 내용 | 조항 |
| :---: | :---: | :---: |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 건축법 제69조 |
| 특별건축구역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 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 | 건축법 제71조 (1)항 |
| 미술장식에 대한 적용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안하고 특별거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 건축법 제74조 (1)항 |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 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 | 건축법 제74조 (2)항 |

## 지방자치단체 공공미술 조례

- 2011년 11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는 전국 104 개 지자체에서 제정
-각 지자체별의 특성 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설치 확인, 사후관리, 위원회의 설치 • 구성•임기 • 직무 등의 내용으로 거의 동일
- 공공미술이 도시 차원에서 연동하고 있기 보다는 개별 대형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마련된 조례들의 내용은 도시 차원에서 공공미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써 유용하지 못함

표 20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의 일반적 구성

| 구분 | 내용 |
| :---: | :---: |
| 목적 |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br> -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 - 문화예술진흥법 및 건축법의에서 지정하는 건축물에 근거함 <br> - 사용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 | - 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 <br> - 미술장식품의 감정•평가/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br> -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br> - 미술장식품 설치확인/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 위원회에 <br> 관한 사항 | - 위원회 설치 • 구성 • 기능, <br> - 위원장 등의 직무 <br> -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 해촉, 수당 등 |

## 공공미술 관련 계획 현항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서울시, 2006-2011)6)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서울다움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디자인으로 도시미 학적인 질서 뿐 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만족을 목적으로 함
-2011년은 서울시 디자인 조례에서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있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임(1차-2006년, 2차 - 2011년)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관련계획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관

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자치구도시디자인, 타부서 도시디자인 관련계획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 실행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전략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두어 추진 기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민관 참여 여부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은 공공미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참고가 가능하나 공공미술을 위한 세부지침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표21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 | - 도시다지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도래 및 1차 도시다인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수정 보완의 필요 |
| :---: | :---: |
| 계획의 목표 |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정의, 성격 및 역할/위계 재설정 <br>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횐의 비전 및 기본방향 제시 <br> -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추친 전략과 실행체계 제안 |
| 추진 방식 | - 전략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두어 추진방식을 체계화함 |
| 시사점 | - 만관 참여 여부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은 공공미술 사업 추진에 있어섣 참고가 가능 |



그림63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 세종시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세종시, 2010)

- 보다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살고 싶고 걷고 싶은 도시로의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공공 미술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세종시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내외 공공미술 사례분석, 도시 기반 분석, 공 공미술 개념도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미술 청사진 제시, 미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공간유형별 특성화 전략 수립 및 미술로 특화된 공공시설물 도입방안, 제도 개선 방안, 사후관리 방 안, 시범사업 제안 등이 있음


## 상암 미디어 스트리트 마스터플랜 (서울시, 2003/2010)

- 상암 DMS(Digital Media Street) 마스터플랜은 상암 DMC사업(Digital Media City)의 2단계 핵심사업으 로 향후 DMS 가 DMC 의 상징공간 및 모든 활동의 중심가로로서 세계 디지털 미디어 교류의 장소로 조성하는 지침의 역할을 하고자 수립 2003년 1차계획에 이어 2010년 업그레이드 계획이 수립되었음
- 상암 DMS 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공사비의 $1 \%$ 를 활용하여 DMS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형식을 구 현하고 건축물의 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술작품의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함


## 법제도 및 정책개선

## 전략＿도시발전 전략 및 관련계획과 공공미술의 연계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내 공공미술 반영

－문화적 환경조성을 도시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삼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경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도시기본계획에서 문화환경 내용을 반영함
－도시관리계획이나 다양한 계획에 도시가 지향하는 문화환경，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미술을 통한 창의적 문화환경의 형성을 여러 부문의 계획 기조로 설정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공미술 관련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반영함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수립 시 공공미술 반영

－도시디자인 정책적 도입의 필요로 말미암아 사구 단위에서도 자체적인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있음기
－하지만 공공미술과 같이 공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구현하면서 도시 전체에 파급력이 큰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구현 방안은 미진한 상태임
－차후 도시 디자인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 전략 중 하나로 공공미술을 채택하여 중점지구를 모색하거 나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경관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관련 부문 계획에서도 공공미술과 관련된 계획내용을 적극 반영하게 함

##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 추진배경

－장기적인 도시디자인 및 공공미술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서와 도면 등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함
－도시계획과 함께 하는 공공미술의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맥락을 고찰하고 그에 공공미술이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

## 도시차원에서의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의 수립 방안

－시민，작가，행정기관，전문가，개발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해 도시차원의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도시차원의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 거시적 차원의 공공미술 비전과 구현전략을 제시함

[^7]- 도시의 공간유형별 특성화 전략 수립, 미술로 특화된 공공시설물 도입을 검토하여 공공미술 시범지 구를 지정하고 시행방안을 제시함

참고_ 알링톤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버지니아주, 미국 (Arlington, Virginia, USA, 2004)

- 구성
- 마스터플랜 소개
- 알링톤 공공미술의 비전 제시
- 주체 및 역할 제안
- 우선 순위 지역 및 프로그램 선정
- 정책 제안
- 파트너십 구축 및 공모
- 내용
-쉽게 눈에 띄며, 공공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공미술 설치
- 다양한 활용과 활동을 보장하는 유형의 공공미술 설치
- County 개발 계획에 따라 공공미술 설치
- 도시 정체성에 부합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행
- 주체 및 역할
-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예술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담당
- 하위부서로 Arilington Cultural Affairs Public Community Art Section $\rightarrow$ Public Art Program을 두어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수행


〈알링톤 공공미술 마스티플랜 및 프로젝트 우선추진지역 맵핑〉

## 전략2_ 지방자치딘체 내 공공미술 관련 조례 포함

##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자체 지자체의 특성에 근거한 공공미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특성에 부합하며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례의 사항 중 공공미술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 지자체 공공미술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의 구체적 내용

- 기존 지자체의 공공미술 관련 조례로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구 건축 미술장식품 제도)에 관한 사항 만이 존재하나 이는 건축물의 부속품 내지는 장식품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된 공공미술의 현재와 미래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 맥락에 근거한 공공미술, 기금의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
- 독립된 공공미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


## 전략 3_ 기존 도시 관련 법제도 내 공공미술 반영

##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

## 추진배경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을 통한 사업추진의 기반 확보
- 지구단위계획의 전국적인 측면에서 통합적 차원의 기틀이 됨
-각 지자체 별로 마련되어 해당 지방 도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적 체계 마련
- 지구단위계획 내의 경관계획을 이용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제도적 언급에 있어 직접적인 장으로 활용


##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법적 지위 및 체계

- 지지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집행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 지님
- 법적으로도 선택 사항인 기금 및 출연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제1종 지구단위계 획시행지침에 기금출연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에의 개선이 필요함

표2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 타당성 검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내 <br> 공공미술 반영의 근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법적 지위 <br> (구속력 유무), 체계 | 한계 |
| :--- | :--- | :--- |

##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 방안

-현재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V편 경관 및 공공부문' 은 1. 경관부문 시행지침, 2. 색채 경관, 3. 공원 - 녹지 - 수변경관, 4. 건축물미관, 5. 옥외광고물, 6. 가로시설물, 7. 야간경관, 8. 공공부문 시행지침으로 구분됨

- 적극적인 반영 방식으로는 ‘제V편 경관 및 공공부문 내 9. 공공미술 시행지침’ 에 반영하여 1. 도시 공공미술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및 방향 설정, 2. 도시 공공미술 유형 및 유형별 조성방안 강구, 3. 도시 경관 특화지역별 공공미술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
- 소극적인 반영의 방식으로는 제V편 경관 및 공공부문 내 8. 공공부문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포함시킴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및 정책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및 협의과정이 요구됨


## 도시개발 관련 경관계획 내 공공미술 반영

- 도시 차원의 맥락을 고려한 공공미술의 추진에 있어 도시 개발 추진 시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시하게 되면 업무의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디자인 전략 가운데 7대 경관과제8)를 선정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하여 계획함
- 향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성도시 역시 도시경관 관련 계획수립 시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옥외광고 물 등과 같은 위계로 공공미술을 다루게 함으로써 도시디자인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8]
## 전략4_ 기존 계획관련 제도의 적극적 활용

##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한 공공미술 적용 방안

## 공공미술 관련 특별건축구역 법제도

- 건축법 제69조~제74 및 동법 시행령 105 조에서는 필요시 건축물미술작품을 단위지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내용으로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1조(특별건 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축법시행령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이 있음
- 해당 법규를 근거로 건축물미술작품은 개별 건축물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 지구단위계획과 연동하여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한 공공미술 적용 방안

- 건축구역마다 통합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구역별 장소의 맥락과 여건에 부합되는 공공미술 작품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공공미술 사업에 응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역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
-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여, 공공미술이 도시 혹은 특정 구역 내의 맥락과 연동하게 하는 통합적용 계획을 수립


## 표23 특별건축구역제도의 활용방안

| 구분 | 활용 |
| :---: | :---: |
| 제69조 특벌건축구역의 지정 | - 공공미술 사업 추진을 할 ㄷㅐㅏㅏㅇ지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안학ㄱㄴㅏ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 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설정 |
| 특별건축구역 신청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미술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국토해양부 장관에 게 신청함 |
| 미술장식에 대한 적용 | - 미술장식에 대해서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 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 통합적용계회의 수립 | -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싳ㅊ원의 맥락과 연동하는 공공미 술 사업 계획을 추진 |

## 경관협정을 통한 공공미술 자체규약 마련

## 경관협정을 통한 공공미술 추진 및 관리

- 경관계획에서 경관협정을 적용하도록 제안된 대상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협정을 통해 공공미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007년 5월 제정된「경관법」에 ‘경관협정’ 에 대한 내용이 수록됨에 따라，주민 스스로가 아름답고 쾌적 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관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틀을 구축한 공공미술의 실천이 가능


## 경관협정의 주요내용 및 법적 지위（구속력 유무），체계

- 경관협정과 관련된 법적규정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경관법」 의 경우，경관협정의 체결（제16조）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제17조），경관협정의 인가－（제 18 조），경관협정의 변경（제 19 조），경관협정의 폐지（제20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제21조），경관협 정에 관한 지원（제22조），경관위원회의 기능（제24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동법 시행령의 경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제 9 조），경관협정의 내용（제 10 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제 11 조），경관협정의 공고 등（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제1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제1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제1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지금까지 주민약속，마을만들기 등 기존 경관협정의 유사사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개발업자 등 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으나，경관협정은 경관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하여 법적인 근거 를 부여할 수 있게 됨


## 경관협정을 통한 공공미술 자체규약 마련 방안

－경관협정의 특성에 근거，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대형개발보다는 작은 지역이나 마을단위에서 적용하기 수월한 방법이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음

## 자문단의 구성

－외부전문가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자문단’ 을 구성함
－자문단은 경관협정 내용에 대한 자문 외에 경관협정운영회의 결성부터 인가，운영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지원， 경관협정 내용의 미 이행 및 승계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담부서의 설립

－자문단의 구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전담부서가 자문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전담부서에서는 경관협정 인가관련 절차，공공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적인 내용을 전담함
－전담부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관협정 외에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지역 경관 전 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 요구

## 인센티브의 마련

－바람직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경관협정 체결 및 체결 후 준수를 권장할 목적으로 준수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협정체결 시 경관 관련 공공미술 관련 사업 우선 배정 등 공공미술 차원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 에 대한 착안，내용，집행시기 등을 인센티브로 활용함

- 인센티브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의 협조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표24 경관협정을 통한 공공미술 자체규약 마련

| 구분 | 내용 |
| :---: | :---: |
| 자체뀨갹ㅁㅏㅕㅕㄴ 방안 | - 주민들이 민간제안 내요을 적극적오 수용할 수 있는 당한 방안을 검토 |
| 자문단의 겅 | - 경괸협정 내용에 대한 자문 <br> - 경관협정운영회의 결성 <br> - 인가, 운영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지원, <br> - 경관협정 내용의 미 이행 및 승계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에 대한 자문 |
| 전담부서의 설립 | - 경관협헝 인가관련 절차, 공공사엽과의 연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적인 내용을 전담 <br> -경관계획 및 경관ㅅㅅ업 등 지역 경관 전반에 결친 업무를 철할 수 있는 인력구넝이 요구 |
| 인센티브의 마련 | - 체결구 훈수를 권징달 목적으로 준수 시에 인센티브 부여 <br> -공공미술 관련 사업 우선 배정 등 공곰미술 차원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인센트블 활용 |

## 참고_ 헤이리 아트뻴리

## 도입배경 및 제도 특징

- 헤이리 아트벨리는 동질적 집단 구성과 헤이리 회원가입 신청서 및 구체적인 건축설계지침, 건축환경위원회 등 체곟화된 운영 방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관협정과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헤이리 회원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하진 건축설계짗ㅊㅁㅇㅔ 따라 건축코니니잍ㅌㅇㅘ 상의 후 설계ㅎㅏㅏㄷㅗㅗㄱ 하고 있음
-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헤이리 이사회 산하 건설위원회의 심욕ञ정이 존재
- 건축설계지침은 「건축법 및 파주시 조례상의 법적 근거는 없음
- 정관이라는 짗ㅊ퓨약이 존재하고 분양 시 정관을 준수하난는 서양서를 제출하며, 이 정관에 건축설계지침의 준수 시항도 포함
- 건축설계지침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것, 주민들 간의 자주협정 및 분양 시 특약의 형태를 띠고 있음
- 건축설계지침 수립 시에는 당시 회원들 간 자주협정의 형해
- 회원작ㄱㄱ을 획득한 토지매수장ㅇㄱㅔ 분양 시 특약의 형태로 건축설계지침의 준수를 확인 받고, 필요 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건축설계지침의 변경이 가능


## 미시섬

- 구채정이고체계적인 운영빙안이 마련되어 상위 법령의 규ㅈㅔㅣㅏ 없읻 주민들 간의 협정오 지침의 존속 및 실천이 이루ㅇㅓㅣㅁ
-이는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미술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자주협정 만으로 충분히 사업이 추친되며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 전략5_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조직 구성

## 도시 및 지역차원의 공공미술 추진시 조직구성의 문제점

## 관 주도로 인한 행정체계와 큐레이터십의 결합실패

- 공공미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정치 행정적 사업으로 추진되어 공공미술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결과,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조직체계 를 갖추지 못함
- 브리스톨의 경우 공공미술이 각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됨으로써 문화부 내 공공예술 담당자와 도시 내 공공예술 매니저를 배정하여 사업추진의 매개체 역할을 함
- 장소협의나 사업추진 과정 등 다양한 행정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행정상의 편의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대상지의 사업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행정과 공공미술 큐레이 터십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함


## 총괄 조정기구의 부재

- 도시 차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지 내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조정기구가 필요함
- 총괄 조정기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 주변의 공사, 보도블록 및 가로등 교체, 도로 표지판 설치 등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 개발 프로세스 내 예술가들의 참여 시점의 문제

- 도시계획과 공공미술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예술가들의 참여 시점이 매우 중요함
- 현재 대부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기획단계에서 미술작품의 위치는 결정하나 법적 집행력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마지막 과정에서 시행되어 예술가들의 프로젝트 참여시점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서울시 도시갤러리의 아트플랜의 경우 예술가가 제안을 한 후 어느 단계에서 접근 및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음
- 도시계획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도시 비전에 부합하는 공공미술의 방향을 잡고 지구단위계획 내 세부내용을 반영한 후 체계적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 재개발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협력체계 미흡

- 공공미술을 통해 도심 재개발 지구 내 활성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많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와 공동의 합의로 도출된 목표가 필요하나 협력체계가 원활히 구축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련 이해당사자, 공공부문, 민간과 시민단체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초한 조 직구성과 운영이 요구됨

표25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내 사례

| 사업명 | 아트인시티 사업(2007)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2007) | 안양 공공옛ㄹ 프로젝트 (2007) |
| :---: | :---: | :---: | :---: |
| 목표 | - 소외지역생활환경개선 | - 서울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표현하고 일상 속에서 시민이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 | - 안양 평촌 신도시의 도시맥락을 현대예술 을 통해 재발견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 게 고안 |
| 주관 | - 문화체육관광부 | - 서울특별시 | - 안양시 |
|  | - 공공미술추진위원회 | - 공공미술위원회 /도시갤러리 추진단 | - 안양공공예술재단 / 예술감독 |
| 조직 | - 공공미술추진위윤회는 8-9인으로 구성 (위원장 김용익) <br> - 사무국은 약 $5 \sim 7$ 인으로 구성 | -공공미술위원회는 30 명으로 구성 (자문 및 심의기능) <br> -도시갤러리 추진단은 7인으로 구성 | - 재단법인으로 2007년 12월에 설립 <br> - 이사회는 애사장, 부이사장, 이사 15 명), 감사 <br> - 집행ㅇㅇ원회는 위원장, 집행위원(7명)으로 구성 <br> - 사무국은 사무국장, 예술감독, 총무팀, 예술 팀, 공공디자인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 |
| 예산 | - 15억 (복권기금) | - 44억원(시설비 32억원) | -41억 (민간위탁금) |
| 성격 | -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 | - 장소형+주민 참여형 공공미술 | - 장소형 공공미술 |
| 규모 | -16개 | - 30 개 | -61개 |
| 내용 | - 기획공모사업, 일반공모사업, 지속사업 | - 시자체사업, 협력사업 | - 시자체시업, 협력시업 (공원조성), 시민후원 프로그램 |
| 작가선정 | - 일반공모, 국내작가중심 | - 일반공모, 지명경쟁,국내작가중심 | - 예술감독 선정 <br> - 해외작가 중심 (국내 10~20\%) |
| 문제점 | - 아트인시티, 도시갤러리, 안양예술프로젝트 등 국내 공공미술 사업은 행정지원조직의 경우 전문성이 미약한 공공미술 관리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공통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br> - 공공미술 작품설치를 위한 장소협의나 사업추진 과정 등 다양한 행정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이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보다 행정상의 편의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  |  |

표26 노섬버랜드 추진 기구의 역할 및 구성

| 기구명 | 역할 및 구성 |
| :---: | :---: |
| 공공미술위원회 <br> Public Art Panel | - 공공미술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br> - 이 기관은 노섬버랜드 지역에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모두 참여 하고 있음 <br> - 노섬버랜드 전략 파트너쉽이 위원회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 노섬버랜드 전략적 파트너쉽 <br> Notthumber land strategic Partnership | - 노섬버랜드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재개발을 총괄하는 역할 <br> - 노섬버랜드 공공미술 실행계획이 지역 재개발 사업과 긴밀히 연관되도록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자료: 여수빈(2007), 도시 재생의 역할로서 공공예술 고찰,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체계 구축방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 및 민간기구，다양한 이해당사자，해당 도 시의 기업과 거주민，문화예술인들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 정혁기빅 딧 재도평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기부참여

## 〈민간 비영리 기구〉

인긴차원연 프로기밤 권렬 힛 운영，빈간 기믐 조성

그림64 공공미술 통합적 추진체계 조직

##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예술진흥을 위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는 평가하고 공공미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선택적 기금제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며 공공미술기금은 법적으로 공공미술 진흥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러한 개편방향에 입각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미술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구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
－한국문화예술위위원회의 공공미술 부서의 임무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미술 진흥으로 규정할 수 있음

표27 한국문화예술위운회의 역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역할 | －선택적 기금제 운영관리 |
| :---: | :---: |
|  | －공공미술 설치 등 시범사업 운영 |
|  | －공고ㅇㅣㅣㅅㄹ 관련 조사，연구，교육 |
|  | －공공미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
|  |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관리 등 정보 서비스 |
|  |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  | －공공미술 사후관리 지원 |

## 지방자치단체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오던 조례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 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공미술기금과 지자체의 매칭 펀드를 근간으로 지역 내에서 공공미술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미술 전문가가 포함된 도시디자인 전담팀을 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민간기업, 시민, 작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등을 운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인, 기업 및 지역주민, 민간 기구

- 해당 도시의 민간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를 독려,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지원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비영리 공공미술 기구를 설립함

표28 국가별 공공미술 진흥사업 관리운영 기구

| 국가 | 운영기구 | 임무 |
| :---: | :---: | :--- |

## 지자체 내 공공미술 전담팀 운용

## 공공미술 전담팀의 필요성

-현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 구성에 있어 전문성 부족,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책임감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

- 향후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을 실현하는데 있어 미술, 디자인, 조경, 인문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미술 전담팀이 마련되어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 또한 각 지역마다 지식이 있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가 조직되어 공공미술 프로젝 트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미술 전담팀과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함)


## 공공미술 전담팀 구성

- 공공미술 전담팀은 사업 초기 단계에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됨
- 도시, 미술, 조경, 인문학, 역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함(미술전문가 2인 이상 포함)
- 인원은 약 10 명 이내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부여함


## 공공미술 전담팀 역할

- 해당 프로젝트의 비전 및 목표, 방향 설정 / 지역 내 공공미술 설치를 위한 장소 프로파일링
- 작가의 업무개발, 심의기준과 조달과정 설정 / 심의위원 구성원 결정
- 공공미술 프로그램 기획 및 사후 관리 방향

표29 아일랜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무팀 (Public Art Working Group) 구ㅇㅓㅓㄴ원 및 역할

| 실무팀 <br> 구성원 | - 실제 작업 활동을 하는 전문작가 (최소 1인이나 되도록 2인) <br> - 독립 큐레이터 (Independent Art Curator(s)) 또는 공공미술 관련 공무원 (Public Arts officer), 또는 지자쳉 예술담당 공무원 (Local Authority Arts Officer) 등과 같은 예술관련 자문 (Artistic Advisor(s) (최소 1~2인) <br> - 시공 사업 매니져 <br> - 건축가 또는 기술자 등과 같은 디자인 팀 대표 <br> - 건물 사용자, 커미셔너 또는 이해당사자 <br> - 기타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및 단체 대표 |
| :---: | :---: |
| 실무팀 <br> 역할 | - 프로젝트 자본 및 관련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향후 발전에 부합하는 연구 <br> - 커미셔닝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맞는 분명한 목적 및 목표 연구 <br> - 작가의 업무개발, 심의기준과 조달과정 설정 <br> - 심의위원 구성원 결정, 커미셔너가 프로젝트 심의위원 구성원에 공공미술 실무팀을 포함시키길 원하는 경우에는 계획 및 선정 단계에 참여 할 수 있음 <br> -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차후 단계계획 및 관리감독 <br> -리뷰 수행 및 커미셔닝 기관에 대한 공공미술정책 개발에 반영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0), 건축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p63

[^9]
## 표30 필라델피아 조형예술위원회 (Fine Arts Committee) 구성

| 개요 | - 신도시 개발에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도입한 최초의 시 <br> - 개발자, 건축가, 작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당부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건축, 조경, 환경 등 공공장소에서의 각 분야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 :---: | :---: |
| 조형예술 위원회구성 | - 재개발사업 기획위원회 자체 내에 다음의 총 10 인의 조형예술위원회 조직 <br> - 재개발 사업 기획위원회 직원 2인 /. 작가 2인 <br> - 예술전문가 (예술사학자, 예술행정가 또는 콜렉터, 큐레이터, 박물관 기획자 등 4인) <br> - 디자인 자문위원을 대표하는 등록 건축가 1 인 / 등록 조경건축가 1 인 / 경영 기획자, 재개발 담당자 <br> - 기획자, 조형예술프로그램 및 디자인 자문위원, 재개발 당국 |
| 자격요건 | -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거나 고용된 자 <br> - 현대 예술이나 작가의 최근 경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 건축, 조경, 도시계획 관련 지식이 있는 자 <br> - 적극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필력이나 스피치 등 의사소통 소질이 있는 자 <br> - 매월 1회 조형예술위원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재개발 지역과 작가 스튜디오, 제조공장 등에 방문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음 |
| 역할 | - 작가 승인, 사전 검토, 컨설턴트, 심의위원, 작품 심의과정 등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고, 필요 시 건축개발부 (Redeveloper and Architect)가 작품선정과정 등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야 함 <br> - 작품 설치장소 분석을 제공, 적정한 환경과 작품의 규모를 결정 <br> - 지속적으로 정책과 절차 (Policies and Procedures)에 대한 평가를 책임지게 됨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0), 건축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졔안 연구, p79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 2011년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리 시스템은 기초 자치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0 개 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6 개 시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기 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 심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심의위원 풀이 제한되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사후관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심의의 공정성 확보

- 광역시 및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광역시도.자치도 단위로 일원화함
- 심의위원 풀제도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운영, 즉 13 인 이내 소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나 해당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되 보안책 마련이 필수적임
- 심의위원 중 관련 공무원의 비중을 줄이고, 행정 담당자가 작품의 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함


##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실현을 위해 도시, 건축, 조경, 예술, 행정,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요구됨

- 심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심의위원이 1 인 이상 참여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
-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 지역문화재단 등 제도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정기 교육, 워크숍 등 이 필요함

표31 심의위원회구성 및 심의방식 해외사례 비교

| 구분 | 아일랜드 | 벤쿠버10) (캐나다) | 필라델피아 (미국) |
| :---: | :---: | :---: | :---: |
| 심의위원회 구성 | -공공미술 실무팀으로붙 구성 <br> - 전문작가 1 인 <br> - 예술전문 큐레이터 또는 자문위원 1 인 포함 | - 건축가, 엔지니어, 기획자, 최소 1인의 공공미술작가, 타 지역 대표자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문가 3 -5인으로 구성 | - 박물관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공공미술 행정작가, 건축가, 조경전문가, 학자, 비평가, 콜렉터 등으로 구성 <br> - 최소 3인아상의 시각예술전문가로 구성 |
| 심의방식 | -공모 <br> - 기존작품 기준선발 / 익명공모/제한경쟁 <br> - 공공미술 실무팀이 작가명단구성 <br> - 커미션 기관, 지역사회 협력 <br> - 직접 커미션 또는 직접 구매 <br> - 공공미술 실무팀 자문 <br> - 대행업체를 통한 구매 | - 공개공모 | - 직접 선정 : 위원회 승인요청 후 재개발자 동의 <br> - 공모 : 공모에 응모된 작가의 자료를 심의위원이 직접 선정 <br> - 초대공모: 위원회 추천을 통해 위원회와 개발자가 선정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0), 건축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p109

[^10]
## 전략_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 도입

## 제도의 필요성

- 기존의 사업에도 도시적 차원의 큐레이터들이 있었으나 공공미술 분야에 치중하며 전시감독 중심으 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적 결합 및 참여를 전제하기보다 일종의 야외 전시회 성격의 결과를 냄
- 도시적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관, 도시 계획, 공공디자인, 예술, 역사, 건축, 생태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사업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총괄 기획가가 요구됨


##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

##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의 의미

-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경관과 사회•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작품을 기획,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 사업 추진과정을 코디네이팅할 수 있는 도시 큐레이 터11)제도를 도입함
- 이와 같이 사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도시 큐레이터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조성과 거주할 주민들 삶의 질 항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표32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

| 필요성 | - 도시적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관, 도시 계획, 공공디자인, 예술, 역사, 건축, 생태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사업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총괄 기획가가 요구 |
| :---: | :---: |
| 방식 | -1인 도시 큐레이터 / 공동 도시 큐레이터 / 도시 큐레이터- 전문가 / 도시 큐레이터- 주민 |
| 역할 | -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의 비전 제시. 목표 및 방향설정 <br> -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 <br> - 작품 설치 위치 선정 <br> - 예산 조율 및 시공사 선정 <br>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법규 및 시공가능성) |

##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의 역할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도시 행정과 예술을 매개하고, 예술가와 시민을 중재하며 여러 관련 전문가와 예술가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함
- 도시의 로드맵구상, 세부 지침마련, 마스터플랜 기획, 건설 총지휘함

[^11]- 도시차원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 큐레이터, 도시 큐레이터-타 분야 전문가, 도시 큐레이터-거 주민 등 다양한 조직구성으로 추진 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
- 도시 큐레이터는 프로젝트에 따라 역할이 세부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따른 권한이 주어져야 함

표33 도시 디자인 큐레이터 제도와의 유사사례 (제도적 방식)

| 구분 | 내용 |
| :---: | :---: |

표34 건축 코디네이터 제도 (비 제도적 방식)

| 구분 | 내용 |
| :---: | :---: |
| 헤이리 <br> 아트밸리 | -21세기 도시구축의 새로운 형식론과 방법을 실현하고자 도시 계획 팀, 디자인커미티(4인), 건축 코디네이터, 건축 가 Pool제도, 건축설계심의, 환경심의제도 등 특수한 조직을 자체적으로 설립 <br> -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건축물들이 건립하는 과정에서 전체 디자인을 조율할 수 있는 건축코디네이터 제도도입 <br> - 건축 및 도시분야 교수 20명에게 설문 의뢰, 최종 7인을 침여 건축가로 선정, 김종규와 김준성을 건축 코디네이터로 임명 <br> - 건축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헤이리 아트밸리 건설위원회는 엄격한 '헤이리 건축설계지침' 마련 <br> - 지형에 대한 해석, 경관, 마을 전체의 조화와 공적 공간을 배려한 건축물 입지, 건축물 높이 및 재료, 바닥 등의 세부 힝목 <br> - 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  |  |
|  | - 도시 구상의 심도 있는 해석과 궁극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 건축가 승효상, 민현식을 코디네이터로 선정 <br> -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단지의 로드맵구상, 건축단지의 세부필지별 설계지침마련, 마스터플랜 기획, 건설 총지 |
| $\begin{aligned} & \text { 파주 } \\ & \text { 북시티 } \end{aligned}$ |  |

자료: 배수권(2010), 자율적 민간 건축지침으로서 헤이리 개발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

표35 예술 감독 도입 사례

| 구분 | 에치고 츠마리아트 트리엔날 | 뮌스터 프로젝트 | 제회 인양공예술프로젝EAPAP 2010 |
| :---: | :---: | :---: | :---: |
| 총괄 큐레이터 | 기타가와 프램(Kitagawa Fram) (미술기획가) | 카스파 쾨니히(Kaspar Koenig) (독일 루드비히미술관장) | $\begin{aligned} & \text { 박경 } \\ & \text { (건축가) } \end{aligned}$ |
| 운영시기 | 2000년부터 3년마다 개최 | 1977년부터 10년 마다 개최 | 2005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
| 주제 | 공공미술을 통한 침체된 지역 활성화 |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의 역할 | '새 동네: 열린 도시 안에서 |
| 특징 | -4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지역주민부터 관료, 정치인 등 모두의 반대에도 '예술의 힘’ 을 믿고 수차례 만남과 회의를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실행 <br> - 10년 동안 에치고 츠마리 아트 트리 엔날레를 총 지휘하면서 예술을 매개 로 그 지역을 놀랍게 탈비꿈 <br> - 지역민들을 능동적인 ‘파트너’ 로 작품에 참여시키고, 도시 젊은이들을 자원봉사자로 흡수하며, 예술을 통해 세대와 지역이 다른 사람들의 상호협 동을 이끌어 내어 관광 및 문화명소 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 | - 30년에 걸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 의 신뢰를 쌓음, 작품 설치를 둘러싼 문제발생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 - 공공 설치작업의 특성 상 불가결한 토지 소유자나 관공서의 토지, 건물 사용의 허락, 건물 일부의 훼손이 불 가한 작품 설치 허가에 있어 작가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 <br> - 세계 각국의 작가를 선정, 뮌스터로 초청하는 것 이외 참여 작가의 작품의도를 수립하고 실현을 위해 지원 | -과거 1,2 회가 작가들의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APAP의 정체성을 확립하 는 단계였다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 력을 기반으로 한 공공예술을 추구 <br> - 주민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을 담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언제나 접근 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br> - 예술적 실천이 안양시민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녹아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함 |

## 전략_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 민관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

## 관주도 사업추진의 한계

- 지역차원의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이제 공공영역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움
- 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문화예술의 추진 주체를 민간중심으로 확장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이런 맥락에서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민관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
-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도, 공공-민간 연계체계를 형성함은 도시변화의 대응에 있어 필수적임


그림65 만관 파트너십에 의해 기획 및 관리되는 상암 DMC 건축물미술작품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도시환경과 공공미술 심모지엄 자료집

## 민간 비영리조직의 구성

- 민간 비영리조직(NPO, Non Profit Organization)을 통해 보다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축함
- 시민, 문화예술인, 지역사회 리더 등으로 구성된 공공미술 비영리조직 구성을 통해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민간기금 조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아직 지역 내 문화예술 환경의 투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모급이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실현가능성을 증대될 것으로 도시나 커뮤니티 관련 NPO , 마을 만들기 등의 프로젝트를 공공미술과 추진하는 경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민간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도 요구됨


## 재단법인의 조성

- 도시 내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공간개발, 이벤트 및 행사 등에 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 금후원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공공미술 사업의 퀄리티 제고, 투자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공공미술 관련 기업후원 등의 민간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재단법인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이 조성해 기업의 공공미술 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와 체계를 확보함
- 향후 민간 거버넌스 조직 및 자발적 조직에 대응하는 카운터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표36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표37 경인 아라뱃길 기업 투자 및 후원에 관한 유형별 기구 /조직 설치 및 운영방법

| 프로그램 | 내용 | 설치 및 운영방식 |
| :---: | :---: | :---: |

## 재원 확보

## 전략8_ 선택적 기금제 참여 활성화 방안

##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배경 및 제약요인

## 선택적 기금제 도입배경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공공 건축주와 민간 건축주에게 동일하게 건축비 의 일정비율을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왔음
- 경제계에서는 민간 건축주에게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규제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이 제도 의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음
- 정부는 이러한 경제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여 민간 건축주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함


## 선택적 기금제의 의미

- 선택적 기금제란 건축주가 미술품을 직접 설치하고 싶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을 납 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rightarrow$ '건축죽의 의무 이행 다양화'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선택적 기금의 적용은 민간 건축주에 대해서만 해당됨
- 미술품 설치 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미술품을 직접 설치할 때보다 100 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5항)


## 선택적 기금제 활성화 제약요인

- 미술품의 소유가 건축주에 귀속되어 미술투자의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자신의 소유 부지에 설치하려는 선호도가 높을 수 있음
- 건축주가 선택적 기금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미술 시장이 좁아진다는 미술 계의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됨


## 선택적 기금제 참여 활성화 방안

##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 건축비용의 $0.7 \%$ (현 법규의 선택적 기금제 요율)를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으로 납부할 경우 용적률을 허가기준보다 올려줌
- $0.7 \%$ 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표38 포틀랜드시 인센티브제도

| 프로그램명 | 인센티브제도 |
| :---: | :---: |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 • 공공미술에 개발비용의 $1 \%$ 를 시용하는 민간 개발 프로젝트는 $1: 1$ 의 용적률 보너스를 받게 됨 |
| 프로그램 | • 공공미술에 개발비용의 $1 \%$ 아상을 사용하는 민간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용적률 보너스를 |
| Portland Regional Arts \& 받게 되는데, 공공미술 비용이 $0.1 \%$ 증가할 때마다 용적률이 최대 2:1까지 상승됨 |  |
| CulturalCouncil(RACC) | • 용적률 보너스를 받으려면 공공미술 비용의 25\%를 공공미술신탁기금에 위탁해야 함 |
| Public Art Program |  |

## 기금납부 절차의 간소화

- 문화예술기금에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미술작품 설치 절차에 비하여 기금의 납부 절차를 매우 간소 하게 하여 건축주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
- 의무이행이 간편해짐에 따라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어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를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
- 반면 개발사업자들이 해당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 사를 통해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


## 참고_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절차

| 계획서 작성 | 제출 | 검토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발급 |
| :---: | :---: | :---: | :---: |
| 신청인 |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참고_ 산타모니카시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절차



## 선택적 기금의 다양한 옵션 제공

- 현재 법규에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0.7 \%$ 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만을 제시
- 미술작품의 설치와 기금납부의 방법 중 하나 만을 선택 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제도에 익숙해져 있 는 건축주들을 선택적 기금제로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기금 납부와 공공미술품설치를 혼용하는 다양한 안을 제시하여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에 보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참고＿로스엔젤레스，미국（Los Angeles，USA）

| 프로그램명 | 시작 <br> 연도 | 의무요율 <br> （건축비 대비 \％） | 선택적 기금 요율 <br> （의무 요율 대비 \％） | 기금명 |
| :---: | :---: | :---: | :---: | :---: |
| Community <br> Redevelopment Agency <br> of the City of Los Angeles | 1968 | $1 \%$ | $60 \%$ 설치＋40\％기금 |  |
| $100 \%$ 기금 | Cultural Trust |  |  |  |
| Fund |  |  |  |  |

선택1）개발비용 $1 \%$ 의 전부를 해당부지에 장소 통합적 예술작품이나 문화시설에 설치하는데 사용
선택2）개발비용의 $1 \%$ 중 $60 \%$ 는 해당 개발 부지의 공공미술품 혹은 문화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으며 $40 \%$ 는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 전시（CRA）가 관리하는 문화신탁기금에 납부
선택3）개발비용 $1 \%$ 의 전부를 커뮤니티 재개발 에이전시（CRA）가 관리하는 문화신탁기금에 납부

## 세제 혜택

－현재 내국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경우에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 의 한도를 적용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위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여 기금 출연 건 축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전략＿선택적 기금 요율의 차등적 적용 및 대상 확대

##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구분 조항 마련

##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 논란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을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하다보니 민간건축주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되어 왔음
－그러나 외국은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비중이 높고 민간은 공공부문보다 약하게 적용하고 있어 지 속적인 건축 규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구분함으로써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의무를 확대하고，민간건물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참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2조

제 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 4 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주차장•기계실•전기실 • 변전실 • 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같 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 만 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다만，제1호에 따른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 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1，2009．7．16，2011．11．25〉

## 참고_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2002~2008)

| 연도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 :---: | :---: | :---: | :---: | :---: | :---: | :---: | :---: |
| 공 | 115 | 207 | 107 | 103 | 100 | 124 | 140 |
| 믹간 | 902 | 1,207 | 882 | 1,012 | 851 | 702 | 601 |
| 기타 | 39 | 45 | 210 | 32 | 197 | 974 | 106 |
| 합계 | 1,056 | 1,459 | 1,199 | 1,147 | 1,148 | 974 | 847 |

*기타는 공공/민간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들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양현미(2010), 국제컨퍼런스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는 공공미술 中 한국의 공공미술제도

## 공공건축물의 의무 강화

- 도시 문화환경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비용을 산출하는 요율을 현재의 $1 \%$ 수준에서 $1 \%$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는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의 1 백분 의 1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적용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이외에, 적용대상 건축물을 결정하는 용도 적용기준 확대 필요
- 제도 적용 건축물 확대를 위해 연면적 기준을 1 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내림으로써 공공부 문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함

참고_ 북미지역의 공공건축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구분 사례

| 금액 | 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 | 공공보다 민간이 적은 금액을 부담 |
| :---: | :---: | :---: | :---: | 계

자료: 양현미(2010), 국제컨퍼런스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는 공공미술 中 한국의 공공미술제도

## 공공장소를 선택적 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

## 공원, 광장 등의 공공장소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서 제외

-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연면적 1 만 제곱미터 이상인 10 개 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계획 수립 시 공공미술 또는 공공디자인 관련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
- 로스앤젤레스시의 경우 철도 건설비용의 $0.5 \%$ 를 미술제작에 할당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버스정류장 이나 지하철 역, 거리와 담 등에서 통행자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공공장소 즉，공원，광장，거리，교통시설 등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보다 훨씬 더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을 다루는 건축물 미술작품제 도에서는 적용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


## 참고＿건축물 미술직품제도 적용 건축물 종류

1．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 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및 관람장
4．판매시설
5．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의료시설 중 병원
7．업무시설
8．숙박시설
9．위락시설
10．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비용의 일정한 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권장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공원，광장，가로，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 대해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비 용의 일정한 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설치를 권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매칭펀드 제도를 운영함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촉진하면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미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스엔젤레스시교통공사 |  |
| :---: | :--- |
|  | 기관명 |
|  | － 1989 년 LA 교통공사에서 메트로아트 부서를 설립 |
| 로스앤젤레스 교통공사 | －철도 건설비용의 0．5\％을 미술제작에 할당하는 정책을 수립 |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거리와 담 등에서 통행자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 Authority，MTA） | 250명 $0 \mid$ 상의 작가를 위임하였고，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거리와 담 등에서 통행자들이 <br>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br> －2003년 63개 역에서 실시 |

## 전략10＿민간 부문의 다양한 재원확보 채널 마련

## 민간 부문 참여의 필요성

## 공공부문 재원의 한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 이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제도 이외의 공공미술사업을 시 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문화시설 등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된 이후 공공부문 재원의 확충에 한계가 있음
- 또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운영사업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 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공공부문의 재원만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따 른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공공미술의 지속성 확보

- 공공미술작품 설치 후에는 행정, 보존, 관리,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교육프로그램으로의 활용, 예술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재정이 소요됨
- 이와 같이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나 공공부 문의 재원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움 ${ }^{12)}$


## 민간부문 참여의 의의

-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민들 누구나 체험 가능한 공공미술은 민간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될 때 사 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
- 또한 공공환경에 지역사회의 민간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음
-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하여 도시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민간부문 재원확보 방안

## 기업 및 개인 차원의 후원

- 공공미술이 개인, 기업,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개인 및 기업, 단체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함
- 기업 및 단체가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업, 단체의 홍보나 이미지를 알리도록 유도할 수 있 는 캠페인을 개최함 ${ }^{13)}$
- 세제 혜택, 법률적 인센티브 등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부금을 합법적 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재단이 조직되어야 함
-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부금을 통한 공개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이들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12]

## 만관 파트너십 개발방식을 통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재원 마련

- 도시차원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그 규모가 커 더욱 많은 재정이 투입됨
- 따라서 기부금 외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계획과 연계한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고, 지자체는 법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은 그 대가로 공공미술 및 도시 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함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 투자계획, 디자인,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스케줄 등을 협의해 개발계획 내 공공미술 예산을 책정함


## 참고_ 미국 베터리파크시티(Battery Park City)의 민관 파트너쉽 개발사례

- 뉴욕 로어 맨하튼 서측의 허드슨강을 따라 형성된 92 에이커의 매립지에 약 1.6 만평의 사무실과 14,000 여 세대의 주거, 28 에이커 의 공원으로 구성된 개발 프로젝트임
- 뉴욕시정부뿐만 아니라 다운타운 로어 맨하튼 협회와 같은 기업단체(Downtown Lower Manhattan Association: DLMA)를 포함 한 다양한 기관이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개발계획도 로어 맨하튼 전체에 대한 계획의 틀 안에서 수립된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Battery Park City Authority: 이하 BPCA)를 설립(1968년) 하였으며 사업지 전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
- 개발부지의 $30 \%$ 를 뉴욕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 등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의 개념과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의 유치를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민간부문의 재원을 통해 도시 내 수많은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뉴욕 베터리파크시티 전경 및 공공미술 가이드맵〉
자료: 오왕선(2008),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참고_ 미국 내 공공장소에 미술을 창조하는 민간기관

ㅁ필라델피아 페어몬트 공원 예술 협의회(Fairmont Park Art Association)

- 필라델피아의 지역기관 및 다양한 지역 에이전시들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함
- 예술과 도시계획의 유대관계를 연구함
- 1996년 시작된 프로그램인 '새로운 랜드마크: 공공미술, 커뮤니티, 장소의 의미(New Land Marks: Public Art, Community, and the Meaning of Place)'는 예술가와 지역기관들을 필라델피아의 새로운 공공미술을 위한 영구적인 작업을 기획하고 창조 하는데 합류시켰음

늉욕 크리에이티브 타임(Creative Time)

-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예술, 즉 공공의 소통을 유발하고, 공공영역을 강화하는 예술을 위탁하는 것이 전문분야임
- 로어 맨하탄 지역의 미국 세관청(U.S Cumstom House), 아트 온 더 비치(Art on the Beach)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배터리파크 매립지(Battery Park Landfill), 세계무역센터(2011년 9월 11일 사건의 추모비인 Tribute in Light)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임

ㅁㄴㅇ욕 퍼블릭 아트 펀드(Public Art Fund)

- 퍼블릭 아트 펀드는 뉴욕의 다양한 지역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더하여, 뉴욕시 록펠러 센터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시리즈를 후원했음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0), 국제컨퍼런스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는 공공미술

## 운영 • 관리

## 전략11_ 공공미술을 활용한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증대

- 예술적 투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수긍하기 시작한 도시정부들이 예술자원의 유무가 도시이미지와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예술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음
- 다국적기업들이 입지 여건을 선정할 때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많은 도시를 선호한다는 사 실이 밝혀지자 많은 도시들은 앞 다투어 문화도시를 선언함
-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차원에서의 문화적인 국내외 마케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미술이 가지는 의미가 결코 적지 않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공공미술을 통해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한 프로그램과 국제적 행사 및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 도시 차원의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필요성 증대

- 도시가 꾸준한 지속가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 여 문화 -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한 도시적 차원의 마케팅으로서 중요한 전략요소로 작용
- 문화 •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사회 인문학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전략

## 추가적 재원 확보

- 지자체나 정부차원의 공공미술의 예술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기금제나 공공미술 펀드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이는 재원확보에 안정성을 가지기에는 역부족임
-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의 추가적 재원 확보를 통해 예술지원정책을 지지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예술정책의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 경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예술정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립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자 리 잡을 수 있음
- 일시적인 이벤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함


## 도시마케팅으로서의 효과적 수단

- 세계적인 도시들이 문화마케팅의 수단으로서 공공미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 및 역사성이 문화적인 형태로 구현될 때 그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것을 의미
- 예로 해외작가 초청 시 국제 전시 및 공모 등을 통해 그 지역의 장소성을 예술적 형태로 구현하고 도시의 기회요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다양한 피드백을 통한 공공미술의 질적 향상

- 국제적인 행사 및 위크숍을 통해 다양한 인적, 물적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열린 소통의 장과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마련함
-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충족시키고 작가들에게는 피드백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높이고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 작품의 개발과 가격의 차별화, 예술교육 등 많은 도시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회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반복적인 예술소비를 창출하는 한편, 관람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심화 및 체계화함
- 차등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그 수준에 맞는 예술교육과 관심을 갖도록 유발함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국가,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1990년대 중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 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여 옴으로써 공공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에 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축제와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 등을 통해 공공미 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함

표39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사항

| 예술 - 문화 -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 - 지역의 정체성 제고 |
| :---: | :---: |
|  | - 공간계획과 공공공가늬 통합적 연계 |
|  | - 다양한 계층의 수용 |
|  | -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 관광객 주도 |
|  | - 데이터 구축을 통한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
|  | - 사후 지속적인 관리방안 |

## 예술문화관광 프로르맴 개발 유형

- 공공미술 전담부서 온라인 사이트에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 및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여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공유하게 함
-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맵핑하여 아트 산책루트, 지도, 책자를 도심 곳곳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손쉽 게 공공미술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배려함
- 관광객 등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멀티 미디어 수단을 활용함


그림66 게0으ㅊㅔㅔㅡㄷㅢ 공공미술 가이드 맵(좌), 도쿄 아트맵(중), 라데팡스 공공미술 웹사이트(우)

##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공공미술

-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도시마케팅 차원의 한 형태로서 나타나는 지역축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함
- 공공미술이 접목함으로써 축제의 질을 높이고 폭 넓은 계층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며 다양한 컨 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역사회의 공공문화시설로서 입주 작가의 작업 실현을 돕고 지역과의 예술적 소통의 장으로서 교 육,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역문화축제, 전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에 문화향수 기회 제공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 참고 - 에치고츠마리 트리엔날레

- 니가타현의 남쪽 토카마치시와 인근 농촌을 포함하여 총6개 권역에서 2000 년에 출범
- 작가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해, 문화적 비전을 지속적으로 다지는 예술축제임
- 카가와와 오카야마 양현에 걸쳐있는 세토우치 해안의 나오시마등 7 개 섬과 다카마츠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현대예술제인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와 같이 치러짐
- 제 1 회 행사에서 32 개국 148 점이 제작되었으며, 16 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함
- 이후 매회 규모가 커져 2009년 제4회전에는 38 개국에서 365 점의 작품을 제작했고 37 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당초 40만 관객 을 예상했지만 100 만명이 넘는 대성황을 이룸



## 도시 자원 및 인프라와 결합한 프로그램 기획관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및 환경적 인프라와 결합한 공공미술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 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다양화되면서 여러 도시에서 공공미술을 문화관광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공공장소 속의 미술에 개념적 토대를 두며 공공장소 활성화를 위한 미술의 형태로 공원이나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공공미술을 활용함
－현장미술（on－site art）은 기존의 공공장소 속의 미술을 의미하며，현장문화프로그램（on－site cultural programming）은 지역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말함

## 공공미술을 활용한 이벤트 및 비엔날레 개최

－도시 곳곳의 상설 공공미술 작품과 일시적 작품설치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공공미술 비엔날 레＇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함
－공모를 통해 많은 국내외작가들을 초빙할 수 있는 전시 및 행사들은 그 지역을 장소성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함
－많은 비엔날레가 특정한 건물에서 하기보다는 공공장소에 직접 설치되는 작품이 많다보니 작가들에 게 도시에 걸맞은 신작을 많이 의뢰할 수 있고，도시의 정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품들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좋은 매개체가 됨
－자체 건물이 없다는 사실은 지역 학교와 기업과 환경 단체 등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요하게 되 고，그 결과 다른 조직과의 협의와 공동 목표 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 참고시례－취리히，스위스（Zürich，Switzerland）＇도시이벤트로서 공공미술의 활용’

－추진 배경
－공공미술작업그룹실은 미술작가와 도시행정가 11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취리히 시 공공미술 정책을 주도하는 조직
－작품의 소재는 1994년 취리히 시 상징인＇사자＇와 1998년＇소’ 에 이어 다양하게 변화하냅 현재까지 이어옴

## ㅁ공곰ㅁ술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 ＇도시이ㄴㅔㅡ트로서의 공공미술＇

－공깅ㅁ술을 활용한 도시이벤트를 2～4년 만에 하ㄴㅓㅓㄴ 씩 개최，매변 주제를 달리하여 기획하고 도시 공공간베 설치
－1998년에는 소（cow），2003년에는 벤치（bench），2005년에는 테디벵（teddy bear），2009년에는 플라워화분（flower pot）를 주제로 함

## 2009년 플라유와분（flower pot）＇

－기획 의도는 지구환경과 생태뮈기의 상항에 대응하여 도시에서 자연을 보다 가갑게 하여 매력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
－ 300 개의 화분에 33 종류의 식물종을 활용하였고 화분의 디자인은 젊은 예술가들이 담당
－스위스，독일，이태리의 작가들이 참여하였고，취리히시는 약억 정도의 화분설치비용 그리고 일부 화분작품은 개별 기업들이 스 폰서 하였고 0 벤트 0 우헤은 옥션을 통하여 화분작품을 판매함


〈플라워화분，2009〉


〈카우퍼레이트，＿1998〉
미사점
－많은 예술가들이 이 이벤트작업에 참여하여 도시의 중심부 거리에서부터 공항에 이르기까지 도시풍경을 일시적으로 바꾸 어 놓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느낌
－공공미술이 도시공간과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아이디어의 경연장이자 지방정부와 그곳에서 활동 중인 민간 기업，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

## 참고사례－시애틀，미국（Seatle，USA）＂헙력적 계획추진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공공미술의 활용’

ㅁ추진 배경
－시의 자산개발프로젝트기금의 $1 \%$ 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위탁，구입 및 설치를 위해 조성됨
－시애틀시의 공공미술프로그램은 1973년 시의 조례에 따라서 수립됨

## 공공미술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시애틀 예술문화국（Office of Arts \＆Cultural Affairs，City of Seattle）
－시애틀 예술문화국에 의해 위탁된 예술작품은 건축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설치되거나，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예술작품을 위탁하는 것 외에도，시애틀 예술문화국은 3，000개가 넘는 비설치 예술작품 컬렉션（portable works collection）의 구입 및 전시를 담당하며，기부되는 예술품의 심의 및 수락을 담당
－시의 비설치 예술작품과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예술작품（permanently－sited art works）의 컬렉션을 유지하며，지역 주도로 행해지 는 예술프로젝트들에 기술적인 지원과 보조를 제공
－예술가 선정과 시애틀을 위한 공공미술의 유지보수는 예술문화국의 직원이 관장하며 예술가 선정은 경쟁적인 공공조달과정을 통 해서 운영

## Municipal Art Plan 수립

－시애틀은 Municipal Art Plan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 \%$ 법의 기금뿐만 아니라 시의 예술기금 도 적극 활용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부서，즉 도시개발，교통，공원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 공공예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ㅁ성과

일상 속 공공미술
－도시 전역에 거쳐 350 개의 작품이 설치되었고 시민들이 공원，도 서관，커뮤니티센터，도로，다리 등 공공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함

##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시애틀은 도시공간에 곳곳에 공공미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특징적


〈시애틀 공공 미술 작품 가이드〉
－시애틀의 공공미술지도는 여러 지역에 따라 달리 작성되었고，특히 도시중심부 지도에는 160 여개의 작품 위치와 작품명이 표기되 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

ㅁㅗㅗ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ure Park）
－최근에 조성된 올림픽 조각 공원도 공공미술을 위해 버려진 도시 공간을 도시인프라계획과 협력하여 공공공간을 조성한 예


〈올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ure Park）〉
미사점
－도시를 정체된 야외전시장，조각공원이 아닌 네트워크로 이해
－공공미술에 문화프로그램，문화공간／문화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미술의 범위확대

## 전략12_ 도시차원의 공공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공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목적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필요

- 공공미술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지 미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미술의 공공성 조차도 구체 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중성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작가, 미술 기획자, 정부 기관, 후원자, 디자이너, 설치 및 건축 관련자 그리고 지역 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협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 단계별, 주 체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개방된 행정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공동체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도시 및 공동체 형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 가 능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음
- 기획, 제작, 설치, 홍보 각각의 단계에서 개발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정보의 수준과 관심여부에 따라 학생, 일반인, 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개발


## 공공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체계화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개방된, 오픈된 행정, 절차, 진행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프로젝트의 투명성 을 높이고,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개발과정에서 오는 물적•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고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및 유지 관리의 용이성 을 고려해야 함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공공미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함
- 학교나 지방자치 주체의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립 문화센터, 미술학원, 민간기업의 참여 등 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함


##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

## 현장 교육

- 현장교육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정보와 작가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현장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작가 이름, 작품명, 저작권 정보, 주체주관, 작품 관련 문의 및 제 보 연락처, 재료를 포함한 작품 설명, QR 코드, 등 현장에서 바로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체계적으 로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가 특히 유용한 것은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일반 시민은 웹상에서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음
- 관리자 입장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작품에 대한 기록을 관리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교육 자료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공공 교육

## 리셉션 작품 공개 특별 행사

- 프로젝트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참여 가능한 행사를 통해 작가들이 직접 작품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행사에 대한 영상 기록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함께 보관함으로써 언제나 필요시 획득 가능하도록 함


## 투어 및 도슨트 프로그램

-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공공미술 지도와 버스 투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장 투어와 도슨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참여자/시민들의 즉각 반응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 드백을 통해 관리나 운영을 향상할 수 있고, 취합된 정보는 미래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됨


## 전문가 교육

-작가를 위한 워크숍, 평생교육, 학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학과가 등장 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기존의 공공미술 작품이나 신설되는 작품에 대한 워크숍, 세미나 연구 등의 진행이 가능함
- 초, 중등학교에 현장 답사, 견학에 파견, 참여 가능하며, 다른 학과 수업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상호학제적 교육개발에 힘씀


## 연계교육

- 학교, 민간기업의 특강, 문화센터 등 뿐 만 아니라 별도의 실내 전시공간을 마련, 지역의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기록, 형성과정, 연계 기획전, 학술 세미나 등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함
- 공공미술의 한계점 중 하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구적으로 한 장소에 지속해서 설치되는 성격 때문에 그 신선도와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것을 극복 할 수 있는 것은 작품과 연계된 다양 한 정보 공유의 방법 개발임
- 별도의 전시공간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는 기획전,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이루어진 미술대회 등을 진행할 수 있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기본구상

개요 및 여건분석
설문조사
비전 및 기본방향
우선추진지역 및 프로젝트 시나리오
단계별 계획

## 개요 및 여건분석

## 개요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의 구현은 기성도시 및 신도시에 공히 적용되어야 함
-여기서는 신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혁신도시 중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본 구상 및 구현전략, 단계별 계획을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함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계획 및 추진현황

## 혁신도시 일반현황

-혁신도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과 연계되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지방 균형 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임

-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임
- 2012년 1월 현재 10 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은 부지공사(81.1\% 진행), 보상(98.6\%), 분양 (64.4\%)으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음
- 부지조성공사는 2007년 말부터 착수되어 2013년까지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될 예정임

표40 전국 10 개 혁신도시 개발개요

| 혁신도시 | 위치 | 인구수 <br> (명) | 면적 <br> (만m$)$ | 비전 및 컨셉 |
| :---: | :--- | :---: | :---: | :---: |

자료: 이노시티 웹사이트(http://innocity.mltm.go.kr/index.jsp)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계획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계획 일반개요

- 물과 빛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 그린 에너지피아(Green Energypia)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위치: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 계획인구 : 5 만명 (자족형 독립신도시)
- 15 개 기관 이전 - 전력산업기관(4개: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전력거래소, 한전KDN(주)), 정보통 신 관련기관(4개: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파연구소, 한국전파진흥원), 농업기반 관련 기관(3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기타 기관(4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표4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개요

| 비전 | 하나로 빛나는 초광역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 |
| :---: | :--- |
| 개발면적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7,315,148m ${ }^{2}$ |
| 사업시행 | 공영개발 (내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 주요시설 | 혁신중심지구, 신산업지구, 문화 • 레저지구, 주거 • 녹지공간 |
| 입주기관 | 한전 등 15개 공공기관, 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 |
| 개발기간 | 2007년 3월 ~ 2012년 12월 |
| 사업비 | 14,841억원 |

## 입지여건

- 나주 구시가지시와는 차량으로 5 분 거리에 있으며, 광주 시가지와도 15 분 거리에 위치함
- 광주에서 서남쪽으로 26.7 km 거리에 위치하여 광주 산업권의 근교에 입지하고 있음
- 함평•무안•목포•영암•강진•해남 등 10 개시군의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


## 자연환경 여건

- 동으로 화순군, 서로는 함평군과 무안군, 남으로 영 암군, 북으로는 광주광역시와 경계하고 있음
- 영산강 유역은 나주평야가 전개되어 수로의 편이를 주고 있음
- 동남과 서북간에 국부적인 산악이 기복하나 태반이 구릉평야로 연속되어 남북으로 연결한 남평•금천• 다시평야는 토지가 비옥하여 산물이 풍부하며 평탄 한 구릉을 서로 연결하여 호남곡창을 상징함


그림68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위치도


그림69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자연환경 및 주변경관

## 특화 계획

## 블루네트워크

- 배메산을 중심으로 52 만 $\mathrm{m}^{2}$ 의 인공호수공원을 조성
- 상업시설용지를 연계배치하고,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활기차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
- 저수지, 중앙호수공원, 실개울 등을 잇는 水순환 네트워크를 구축
- 상업용지 내 실개울 조성으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


## 그린네트워크

- 배메산을 중심으로 녹지축이 조성되고, 공원과 녹지 그리고 수변공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 생활권과 녹지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네트워크가 형성
- 순환 산책로와 지상경사로 등이 조성되어 끊임없이 녹지 공간 창출
- 입주자들에게 주거와 레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 휴먼네트워크

-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건강 생활가로 조성 및 도시전체를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
-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휴먼네트워크의 생성
- 주변녹지 및 수계, 커뮤니티 공간이 연계되어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창출
- 생활가로를 따라 도시를 상징하는 각종 꽃과 나무들을 심어 아름답고 쾌적한 휴먼네트워크 형성


## 컬쳐네트워크

- 호수공원 주변에 종합위락시설 도입
- 수변공간 주변에 테라스 및 아케이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여유공간 창출
- 호수공원 내에 공연시설을 설치하여 문화공연을 연출


그림7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특화 계획도
자료: 국토해양부(2010),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여건의 종합

| 입지여건 | -국도호선, 국지도49 - 55호선과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국지도 49호선을 활용하여 호남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 연계할 수 있음 <br> - 나주시 도심 및 광주광역시와 연접하여 기존도시의 인프라교육 - 문화 • 의료 • 공공시설의 활용이 가능함 <br> - 기존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도시 문화환경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 :---: | :---: |
| 자연환경 | - 평야지역의 우수한 경관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br> - 나주시의 특징경관인 나주평아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기초 구조로 활용할 수 있음 <br> - 낮은 구릉지와 풍부한 수자원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개발여건이 확보된 상태임 <br> - 경작지와 농수로로 연결된 기존 저수지는 신도시의 새로운 생태거점과 수경관으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 인문환경 | - 새로운 도시가 단기간에 조성됨으로써 기성도시에 비해 공공미술 등 새로운 문화환경을 창출하는 데 유리 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 <br> - 배메산과 기존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 네트워크(Green\&Blue Network)는 예술문화 개념과의 접목 을 통해 도시이미지 창출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br> - 교육시설(초등학교 5 개, 중학교 3 개, 고등학교 2 개)과 연계한 질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함 |

## 설문조사

## 조사 개요

## 설문개요

- 설문제목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추진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의식조사
- 설문기간 : 2011년 10월 4일 ~ 10월 14일
- 설문대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 설문방식 :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고, 유효표본은 400명(표본오차 $95 \%$ 신뢰 수준에서 $\pm 3.1 \%$ )

표42 설문조사 설계

| 구 분 | 내 용 |
| :--- | :--- |
| 조사대상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
| 조사방법 | • On-Line Panel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Survey |
| 유효표본 | • 40명(표본오차는 $95 \%$ 신뢰 수준에서 $\pm 3.1 \% p$ ) |
| 표본추출 | • 무작위 추출 |
| 조사기간 | • 2011년 10월 4일 ~ 14일 |

## 설문목적

- 본 조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1) 혁신도시 거주환경에 대한 욕구
2) 혁신도시의 미래상
3) 혁신도시 문화환경과 문화향유에 대한 의견

## 4)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를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일반현황

- 설문참가자는 남성(343명, $85.75 \%$ ), 여성(57명, $14.25 \%$ )로 남성의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음
- 연령대는 30 대(176명, 44.0\%), 40대(150명, 37.5\%), 20대(39명, 9.75\%) 순으로 나타남
- 결혼유무 조사결과 기혼(293명, $73.25 \%$ ), 미혼(107명, 26.75\%)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대는 초등학생(83명, 28.33\%), 유치원 및 영유아(74명, 25.26\%), 중고등학생(64명, 21.84\%)순 으로 나타남

표43 설문참가자 일반현황

| 설문항목 |  | 결과 |
| :---: | :---: | :---: |
| 성 별 | 남 성 | 343명 (85.75\%) |
|  | 여 성 | 57명(14.25\%) |
| 연령대 | 20-30세 | 39명(9.75\%) |
|  | 30 40세 | 176명(44.00\%) |
|  | 40-50세 | 150명(37.50\%) |
|  | 50-60세 | 35명.7.55\%) |
| 결혼유무 | 기 혼 | 293명(7.25\%) |
|  | 미혼 | 107명(26.75\%) |
| 자녀 연령대 | 7세 이해유치원) | 74명(25.26\%) |
|  | 8세 13 세(ㅊㅡㅡㅇ핵새) | 83명(28.33\%) |
|  | 14새 19 세(중고등학새) | 64명(21.84\%) |
|  | 2 2세 0쌍(대학생 0ㅣ상) | 41명(13.99\%) |
|  | 자너 없음 | 31명(10.58\%) |

## 조사 결과

## 혁신도시 거주환경에 대한 욕구 조사

## 업무환경 및 교육문제로 인해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 설문 참여자 절반 가량이(49.75\%, 199명)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함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환경 문제(94명, $23.62 \%$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문제 ( 93 명, $23.37 \%$ ), 가족문제( 87 명, $21.86 \%$ ), 문화적 소외문제( 60 명, $15.08 \%$ ), 주거환경 문제( 36 명, 9.05\%), 경제적 문제(28명, $7.04 \%$ ) 순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5\%\%문뫄적ㄱ소쇠

## 주거 확경

## $7 \%$ 경제

이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절반 정도, 혁신도시로 직장 이전시 가족과 동반하지 않을 것

- 설문 참여자의 절반 정도는(47.0\%)는 혁신도시로 직장 이전시 가족과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수도권에 가정이 있고, 직원만 혼자 내려와 있는 '기러기 도시'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거주 환경, 자연 및 여가환경, 교육 환경이 우수한 도시가 되길 원해

-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원하는 혁신도시가 갖추어야 할 환경은 거주 환경(247명, $30.88 \%$ ), 자연 및 여가환경(229명, 28.63\%), 교육 환경(214명, 26.75\%) 순으로 나타남


혁신도시로 직장 이전시 가족과의 동반여부

## 거주환경 $30 \%$

## 자연여가환경 $29 \%$

## 교육환경 $27 \%$

## 18\%애에술훈화확경

## 공동혁신도시가 어떤 환경이 우수한 도시가 되길 바라나

그림72 기족 동반 여부와 혁신도시 미래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혁신도시의 미래상

- 설문 참가자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 설계안을 절반 정도(48.0\%)가 알고 있었으며, 대체 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 미래 설계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설문 참여자(67명, $16.75 \%$ )는 설계안의 문제점으로 '문화시 설 및 편의시설의 부족 (26명, 38.81\%), ‘도시를 드러낼만한 매력적인 요소 부족’ 16 명, $23.88 \%$ ), '일반적으로 너무 평이한 도시' ( 13 명, 19.40\%) 등을 이유로 꼽았음

표44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미래 설계안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 설문항목 |  | 결과 |
| :---: | :---: | :---: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 설계안에대난 이해 수준 | 전혀 모러ㅆㅏㅏ | 58며(14.50\%) |
|  | 잘 모렜싸 | 150명(37.50\%) |
|  | 알고 있다 | 163명(40.75\%) |
|  | 매우 잘 알고 있다 | 29명(7.55\%) |
| 미래 설계안에 대한 견해 | 매우 잘 작성되지 않았다 | 20명(5.0\%) |
|  | 잘 작성되지 않ㅆㅆㅆㄷㅏ | 47명(11.75\%) |
|  | 보통읻 | 228명(7.0\%) |
|  | 잘 작성되었다 | 93명(23.25\%) |
|  | 매우 잘 작성되었다 | 12명(3.0\%) |
| 미래 설계안이 잘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도시의 상지성이 취약하다 | 6명(8.96\%) |
|  | 문화ㅅㅓㅓㄹ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26명(38.81\%) |
|  | 도시를 드러낼만한 매력적인 요스를 갖추고 있지 않다 | 16명(23.88\%) |
|  | 일빈적으로 너무 평ㅇ한 도시ㅇㅏㅏ | 13명(19.40\%)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발 컨셉인 ‘빛과 물의 상생의 생명도시’ 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지님
-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47명, $11.75 \%$ )한 이유로는 단어 표현이나 기법이 추상적이다 ( 15 명, $31.91 \%$ ),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다’ ( 13 명, 27.66\%), ‘도시의 미래상으로 어울리 지 않는다 ( 12 명, $25.53 \%$ ) 등이 있음
-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바라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이미지는 '교통 및 쇼핑 등 편리한 기반 환경이 갖춰진 컴팩트 도시’ ( 139 명, $34.75 \%$ )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으로 강한 정체감과 이미지를 갖춘 브랜드 도시' ( 108 명, $27.0 \%$ ),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환경도시' (106 명, $26.50 \%$ ),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 여가환경을 갖춘 관광여가도시' ( 43 명, $10.75 \%$ ) 순이었음

표45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컨셉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 설문항목 |  | 결과 |
| :---: | :---: | :---: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컨셉 <br> '빛과 물의 상생의 생명도시' 에 대한 견해 | 매우 적정하지 않다 | 12명(3.0\%) |
|  | 적정하지 않다 | 35명(8.75\%) |
|  | 보통이다 | 192명(48.0\%) |
|  | 적정하다 | 128명(32.0\%) |
|  | 매우 적정하다 | 33명(8.25\%) |
|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도시의 미래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 12명(25.53\%) |
|  |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다 | 13명(27.66\%) |
|  | 우리 기업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 6명(12.77\%) |
|  | 단어 표현이나 기법이 추상적이다 | 15명(31.91\%) |

## 혁신도시 문화환경과 문화향유에 대한 조사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문화환경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응답자(44.0\%)가 가장 많았음
- 혁신도시에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문화 복지시설(171명, 42.75\%)에 대한 요구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연시설(126명, $31.50 \%$ ), 도서시설( 59 명, $14.75 \%$ ), 전시시설(44명, 11.0\%) 순이었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54.0\%)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표46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문회환경 및 문회향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 설문항목 |  | 결과 |
| :---: | :---: | :---: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문화환경의 미래 모습에 대한 생각 | 매우 긍젖지아 | 322[(8.0\%) |
|  | 긍정적이다 | 97명(4.25\%) |
|  | 보토이다 | 176며(4.0\%) |
|  | 부정적이다 | 68애(17.0\%) |
|  | 매우 붖적지다 | 27명(6.75\%)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필요한 문화시설 | 공연ㅅㅅㅅㄹ(ㅗㅇ연장, 영화상ㅇㅘㅘㄴ, 야외음아ㄱㅏㅏㅇ 등) | 126명(1.50\%) |
|  | 전싯설빅물관, 미술관, 회랑, 조각ㄱㅇ원 등) | 44명(1.00\%) |
|  | 도서샐(도서과, 문고 등) | 59명(14.75) |
|  | 지연문화 복짓셀문화의 집, 문화체윤섯ㄷㄷㅡ) | 1771명(2.75\%)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견해 | 매우 겅적지아 | 66명(16.50\%) |
|  | 궁적이아 | 150용(7.50\%) |
|  | 보통ㅇㄷㅏ | 114명(2.50\%) |
|  | 부정적이다 | 4880(12.0\%) |
|  | 매우 부ㅈㅓㅓㄱ지아 | 22명(5.50\%) |

##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세계의 도시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문화시설과 문화환경’ $(263$ 명, $32.88 \%)$ 를 갖추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편리한 쇼핑 및 교통환경’ (158명, 19.75\%),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정체감' (147명, $18.38 \%$ ), ‘양질의 교육환경’ ( 129 명, $16.13 \%$ ), ‘격조 높은 도시건축과 미관' ( 76 명, $9.50 \%$ ) 순이었음
- 길을 걷거나 여행 중에 공공미술 작품을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대다수(68.75\%)였음
- 절반 이상의 응답자 $(69.0 \%)$ 가 공공미술이 도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 하였음

표4-1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결괘(1)

| 설문항목 |  | 결과 |
| :---: | :---: | :---: |
| 세계의 도시와 비교하여 손색엾는 도시를 만들고자 할 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 |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정체감 | 147명(18.38\%) |
|  | 격조 높은 도시건축과 미관 | 76명(9.50\%) |
|  | 풍부한 문화시설과 문화환경 | 263명(32.88\%) |
|  | 당한 예술프로갬 | 27명(3.33\%) |
|  | 편리한 쇼핑 및 교통환경 | 158명(19.75\%) |
|  | 양질의 교육환경 | 129명(16.13\%) |

표47-2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결괘(2)

| 설문힝목 |  | 결과 |
| :---: | :---: | :---: |
| 길을 걷거나 여행 중에 도시를 상징하는 공공미술 작품 경험 엽 | 매우 자주 봤다 | 80명(20.0\%) |
|  | 본 것 같다 | 195명(48.75\%) |
|  | 글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82명(20.50\%) |
|  | 한 번도 본적이 없다 | 34명(8.50\%) |
|  | 관심 없다 | 9명(2.25\%) |
| 공깅미술 작품이 <br> 도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 매우 글ㅎㅎㄷㅏ | 78명(19.50\%) |
|  | 그렿다 | 198며(49.50\%) |
|  | 잘 므겠싸 | 94명(23.50\%) |
|  | 그렿지 않다 | 19명(4.75\%) |
|  | 매우 그렿지 않다 | 11명(2.75\%) |

- 절반 이상의 응답자(68.25\%)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공공미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공공미술 작품이 직장 또는 아파트 주변의 생활환경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있음
- 대다수의 응답자 $(78.50 \%)$ 가 공공미술 작품이 공원, 광장, 보행자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함

표48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결과

| 설문항목 |  | 결과 |
| :---: | :---: | :---: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공공미술의 필요 엽 | 매우 필요하다 | 87명(21.75\%) |
|  | 필요하다 | 186명(46.50\%) |
|  | 잘 모르쎄다 | 70명(17.50\%) |
|  | 필요하지 않다 | 37명(9.25\%) |
|  | 매우 필요하지 않다 | 20명(5.00\%) |
| 공공미술 작품이 생활환경직장 또는 아파트 주빈)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견해 | 매우 긍정정이다 | 87명(21.75\%) |
|  | 긍정적이다 | 172명(43.00\%) |
|  | 보통이다 | 96명(4.00\%) |
|  | 부정적이다 | 34명(8.50\%) |
|  | 매우 부정정이다 | 11명(2.75\%) |
| 공공미술 작품을 공공장소공원, 광장, 보행자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매우 긍정정이다 | 102명(2.50\%) |
|  | 긍정적이다 | 212명(53.00\%) |
|  | 보통이다 | 54명(13.50\%) |
|  | 부정적이다 | 23명․ 5.75 |
|  | 매우 부정적0ㅣㄷㅏ | 9명(2.25\%) |

## 비전 및 기본방향

## 비 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의 비전을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자연을 만들어가는 공공미술"
위의 비전은 두 가지 기본생각에서 도출되었다.
첫째, 자연이 수려한 환경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인공화된 환경이 형성되었다. 공공미술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내 건물이 아닌 우리동네나 도시를 위한 공공미술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진화하는 공공미술을 제안한다.

## 자연을 만들어가는 공공미술



## Art turns City into Nature

Place-Specific Art
Community-Oriented Art
Public Art New Hybrid Hub Space

## 기본 방향

| 장소적 조건 을고려한공공미술 |  <br>  <br>  $\qquad$ |
| :---: | :---: |

## 2 지역 커뮤니티와 함헤하는공공미술

Community-Oriented Art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공공미술은 시민의 생활공간 에서 펼쳐지고, 작가-시민간의 공동작업 과정 속에서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 우선추진지역 및 프로젝트 시나리오 

##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 선정기준

## 선정기준 제안의 배경

- 공공미술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지 역 주민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매개체로써 도시 장소 만들기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임
-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문화예술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연 환경, 문화, 도시생활과의 관계 속에 자리 잡아야 함
- 우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고유한 특징을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장소 만들기와 공 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선정의 기준을 제안함


##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 선정기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입지 및 자연환경 여건, 도시의 공간 구조를 살펴봄
-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작품의 우선추진지역 선정기준과 해당되는 지역을 제얀함

표49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 선정기준

| 우선추진지역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 기준자료 |
| :---: | :---: | :---: |
| 1. 시각적 접건시이 양호한 지역 | 주요 조망점 (복형홍망점 2개, 관ㄹ형조몽점 5개, 외부조 망점 47I) | 제ㅈㅗㅗㅇ 지군아괗ㅎㄱ 시행지침 |
|  | 건축물 경관계획 및 가로경관계획 | 혁신도시 기본계획 |
| 2. 물리적 접건시이 양호한 지역 | 4개의 가로축 (도시상징도로, 도시내부순환축, 호수공원주 변도로, 보조녹지경관축) | 제ㅈㅗㅗ 지구단위 시행지침 |
|  | 주거단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자 전거 도로 | 혁신도시 기본계획 |
| 3. 복힙적 이용과 활동이 간한 지역 | 특불계혁역ㄱ (주요 상업법무직ㄱ , 중앙 호수공원 주변 중삼상엽용지 | 제ㅈㅗㅗㅇ 지구난ㅇㄱㄱ획 시행지침 |
|  | 도시공원 (호ㅅㅗㅗㅇ원, 어린잉원, 문확ㄱㅇ원 등, 공굥관 및 주거다ㅈㅣㅣ 전명고ㄴㅏㅏ | 제ㅈㅗㅗㅇ 지군위계획 시행지침 |
| 4. 자연환경이 우한 지역 | 녹지축(Green Network) | 혁신도시 기본계획 |
|  | 수경관축(Blue Network) |  |
| 5. 커뀨니티 형성이 애상되는 지역 | 스쿨 콤플렉스 (2개소) | 혁신도시 기본계획 |
|  | 주거단지 및 공기이관 내 오픈스페이스 | 제종ㅇ 지구다뉘계획 시행지침 |

## 1．시각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도시 아이덴티티의 시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각적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공공미술 우선진 지역의 선정기준으로 삼음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지역은 도시 내 주요 조망점임
주요 조망점＿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함
－선정된 조망점은 시각적 접건성이 뜅ㅇ나며 경관관리가 용이함으로 경관김의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거나 주기적인 경관모니터링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계획
－조망점은 기능에 따라 복합형 조망점，고정통제형 조망점으로 구분되며 각 조망점에 따른 위치를 우선추진지역으로 선정함

| 조망점의 <br> 유형구분 | 역할 |
| :---: | :---: |
| 복합형조망점 | 인구유발시설 등 이용이 많은 지역에 설정하며 조망점에서 외 부를 바라보는 경관 및 외부에서 복합형 조망점을 조망하는 경 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장소 |
|  | 관리형 조망점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경관에 대한 관 리 기준점이 되며，향후 개발사업 시행시 자연경관심의의 시뮬 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
| 고정통제형 조망점 | 진입 조망점 ：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장소로서 도시 스카이 라인 및 주요 랜드마크 등의 포함하는 도시전체의 거시적 경관 에 대한 관리기준점으로 향후 개발사업 시행시 가시권역안에 포 함될 경우 자연경관심의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

배메산과 배메산 주변의 호수공 원 및 중심상업지구

주요도로도시상징도로，도시내부순 환축，호수공원주변도로의 결절점 및 보행축의 결절점

나주－광주권 등 외부공간에서 진입 시，대상지가 조망되는 주요 진입 부에 외부 조망점을 설정
－배메산 주변의 호수공원 및 중심상업지구는 동시에 여러 가지 경관요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구유발시설과 동시에 랜드 마코럿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합적 조망점을 설정
－주요도로의 결절점 및 보행축의 결절점에 관리형 조망점을 설정
－외부공가네서 진입 시，대상지가 조망되는 주요 진입부에 외부 조망점을 설정


## 예시 사례



〈Barcelona，Spain〉
〈Vienna，Austria〉

## 2. 물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4개의 주요 가로축은 다수의 접근성이 용이함으로 물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4개의 가로축 (도시상징도로, 중심상업도로, 내부경관 순환도로, 여가도로)
제1종 지구단위 시행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함

- 가로축은 신도시의 골격을 이루며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4개의 특화도로로 설정되어 있음
- 4개의 가로 경관축은 주변 이용 및 경관자원으로부터 유추한 상징성을 테마로 하여 독창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함
- 주어진 테마에 따라 가로수, 포장, 가로시설물 등에 응용하고 있음

| 구분 | 내용 | 주요위치 |
| :---: | :---: | :---: |
| 가로경관축 | - 중심상업도로, 도시상징도로, 내부경관순환도로, 여가도로 등의 보행중 심의 가로선정 <br> - 수변공간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롬나드 조성 <br> - 상징가로분절점 및 결절점은 주요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랜드마크시설 배치 <br>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상징축 형성 | 도시상징도로, 중심상업도로 내부경관순환도로, 여가도로 |



## 3．복합적 이용과 활동이 가능한 지역

－업무，여가，상업，휴식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다양한 이용자층을 집객하는 특성을 가진 지역은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의 선정기준이 됨

특별계획구역1（중심상업용지）＿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함
－특별계획구역＿대규모 쇼핑단지，전시장，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정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는 2 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있음．그 중 1 구역을 대상지로 함 특별계획구역1＿중심상업용지

중앙호수공원과 중심상업지역＿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본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함
－상업•업무용지는 혁신도시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단핵도시형 토지이용체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지 중심부에 배치
－배메산과 기존 수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중앙호수공원변에 상업－업무용지를 배치하여 거주민의 이용편익 및 다양한 여가 쇼핑활동 도모
－혁신클러스터용지와 연계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 조성으로 도심성 강조 및 활기찬 도시조성


예시 사례


〈New York，USA〉
〈Newcastle upon Tyne，UK〉

## 4.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 공원, 녹지 지역은 혁신도시의 고유한 자연 환경과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을 담는 지역으로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의 선정기준이 됨

공원, 녹지 지역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본계획 중 공원, 녹지계획을 기준으로 함

- 혁신도시는 배맷ㄴㄴㄱㅘ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녹지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생태 네트워크(Green \& Blue Network) 구축


## 녹지경관축 (Green Network)

- 배메산을 중심으로형성되는 녹지축과 생활권과 녹지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네트워크


## 수경관축 (Blue Network)

- 도시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공간으로 배메산 주변에 중앙호수공원을 조성하여 대규모 호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경요소 도입
- 호수공원 주변을 도시형 수변공간으로 계획하여 상업지와 연계한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



## 5．활발한 커뮤니티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민의 참여，소통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학교，주거단지，커뮤니티 공간 등 거주민의 일상생활의 중심지로서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의 선정기준으로 함

스쿨 콤플렉스（2개소），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본계획 중 교육시설계획을 기준으로 함 주거단지 및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함
－소생활권별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복합적으로 배치 될 수 있도록 School Complex 2개소 설치
－생활권의 중심에는 초등학교，동사무소，주민자체센터，휘트니스센터，도서관，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노인복지회관 등이 결합 된 복합커뮤니티 센터 배치
－주거단지의 오픈스페이스는 외부에서 대지내 공지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배치
－공공시설용지의 공지를 빈터로 남겨 두지 말고 활용도를 높임


예시 사례


## 우선추진지역별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나리오

## 중앙호수공원

- 중앙호수공원은 대규모공원으로 도시 중심부에 입지하여 혁신도시에 시행 될 모든 공공미술 프로젝 트의 핵심적 근거지로써 역할을 담당함
-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착화 및 정체성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높은 가시성과 상징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근린공원，어린이 공원，문화공원 등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녹지지역으로 일상적이고 친숙한 여가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제공함

| 구 분 | 내 용 |
| :---: | :---: |
| 위 치 | 오픈 스페이스의 위치，사용자층，크기를 고겨한 선태ㄱㅐㅓㄱ 적용 현재 현신도시 내 근린공원 11개소，어린이공원 127 고소， 소공원， 3 개소，문회공원， 4 개소가 계횜되어 있음 |
| 키워드 | －일상성－자연성－체험형 |
| 전 략 | －감상형 미술품보다 주민들이 일상생홀에서 즐길 수 있는 미술뭄 권장 <br> －주변 나무，식재 등을 고려한 미술뭄과 배치 <br>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미술뭄 적극 활용 <br> －휴식이나 여가를 위한 벤치，야외테이블 등 스트리트 판ㅊㅊㅇㅘ 결합된 미술뭄 |
| 예시 사례 | 〈London，UK〉 <br> 〈Wakefield，UK〉 |
|  | 〈St．Gallen，Switzerland〉＜Minster，Germany〉 |

## 도시상징도로

-나주의 구도심으로 부터 연결되는 도시상징도로는 도시의 대표적 경관요소를 아우르는 도로 로서 생동하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선형의 공간임
구 분

## 수변상업공간

- 중심상업지구 내 가로 및 공공공간은 중앙호수공원과의 근접성 및 배후 저층 수변 상업시설, 복합지 구의 입지로 다양한 쇼핑, 문화, 여가시설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 구 분 | 내 용 |
| :---: | :---: |
| 위 치 | 수변삽엉간간 적극적인 수병공가 개발을 통해 주변 도시에서의 관광객 유입 및 거주민의 홍ㅇㅇ도를 높여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 |
| 키워드 | - 공공고ㅇㅏㅏㄴ - 관광목적ㅈ(Destination) •0이벤트 |
| 전 략 | - 활기찬 저층 수변상업지구의 개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되 예술적 독창성을 고려할 것 <br> - 영구적인 시설뿐만이 아닌 일시적상설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 <br> - 시설물과 결합 :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아트벤치 등 시설물과 결합된 미술뭄 |
|  |  |
| 예시 시례 |  |

## 도시진입공간

－나주와 광주 등 외부에서 혁신도시를 진입하는 네 곳의 게이트웨이는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들에게 도시의 장소성과 의미를 재부여할 수 있음

| 구 분 | 내 용 |
| :---: | :---: |
| 위 치 | 도시진입공간 혁신도시로 진입하면서 도시의 첫인상을 받게 되는 곳 |
| 키워드 | －스토리텔링－상징성 |
| 전 략 | －진입로는 총 개가 계획되어 있으나 개 모두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도에 따른 위계성을 부여하여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 함 <br> －게이트웨이는 도시 진입부로 그 상징성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혁신도시 홍보물이나 교통카드 등 공공성을 띤 물건 에 이미지 활용가능 <br> －교량과 같은 인프라개선과 같은 프로젝트도 고려 <br> －수평적이고 넓게 퍼지는 조형물도 시도해 볼만함 |
| 예시 사례 |  |
|  |  |
|  | 〈Waterloo，UK〉 〈Glasgow，Scotland〉 |

## 내부순환로

- 도시 내부 전역을 연결하는 약 8 km 의 링 구조의 도로는 업무, 쇼핑, 만남, 쉼의 장소를 걷기나 자 전거를 타고 순환 할 수 있도록 계획

| 구 분 | 내 용 |
| :---: | :---: |
| 위 치 | 내부순환로 |
| 키유드 | - 산책 - 여가 •레크리엥션 |
| 전 략 | -공공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접근성 항상에 초점을 맞출 것 <br> -대중이 0 용하는 버스정류장, 공공화장실 등 시설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함에 초점을 맞출 것 <br> - 도시 내 주요방향 및 주요 지점을 알려주는 가로안내시스팀을 주요 결절부에 설치할 것 <br> -공공미술을 활용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도로 디자인 |
| 예시 사례 |  |
|  |  |
|  | 〈Barclona, Spain〉 |

## 스쿨컴플렉스

- 새롭게 이주하는 5 만명의 지역주민들이 살아 갈 주거지역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커뮤 니티 발생이 높아질 수 있는 개발계획을 지향
- 10 개의 학교시설은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열린 학교로 조성되고 인접한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

| 구 분 | 내 용 |
| :---: | :---: |
| 위 치 | 스쿨컴플렉스 학교 |
| 키유드 | -문화예술곤간 - 환경교육장소 |
| 전 략 | -결교보다는 괴정에 무게를 실어 지역주민이 헙력 속에 생홀에술을 만들어날ㄹ 수 있는 기뵨을 종ㅎㅎ히에 초점을 밎춤 <br> -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함 <br> - 각종 소모임, 세미나, 작품 전시, 휴식공간, 놀이방, 팃밭 등 일상 속 커뮤니티 증진에 초점을 맞춤 <br> -특화된 스쿨 콤플렉스 존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문화예슐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구성 |
| 예시 사례 |  |

## 단계별 계획

## 도입 단계 (2012~2014)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도입단계인 2012년~2014년은 도시공원 및 광장 등 도시 공공공간과 연계한 공공미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함
- 법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반영, 관련 의사 결정 주체 설득,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고, 이전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도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협의회를 구성함


## 확산 및 성숙 단계 (2015 ~ )

- 공공미술 확산 및 성숙 단계인 2015년 이후에는 도시 공공공간을 넘어 주거 및 상업지역 등 도시 전체로 공공미술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감
- 전라남도, 나주시 차원에서의 공공미술 정책 채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공공 미술운영위원회, 공공미술추진위원회를 구성함

표5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단계별 계획

| 구 분 | 도입단계 (2012년 ~ 2014년) | 확산 및 성숙단계 (2015년 이후) |
| :---: | :---: | :---: |
| 성 격 | - 도시공원 및 광장 등의 공공공간과 연계한 공공미술 사 업 추진 | - 주거 및 싱업지역 등 혁신도시 치원의 공공물ㄹ 시업 추진 <br> - 지역사회, 시민, 작가간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공 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 법제도 및 정책 개선 |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 <br> - 관련 의사결정주체 설득 및 공감대 확산 <br>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마스터플랜 수립 | - 전라남도, 나주시 법제도 차원의 공공미술 정책 채택과 예산 확보 <br> - 연단위 공공미술 프로젯ㅌ 계획 및 가드라인 수립 <br> - 상위 차원의 도시계획 내 공공미술 내용 반영 <br>  |
| 조직 구성 | -0이전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도시 추진단으 로 구성된 공공미술 협의회 구성 | - 혁신도시 공공미술 운영위원회(나주시,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이전 공공기관) <br> -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구성 <br> -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사무국 구성 <br> - 공공미술 트러스트(비영리기관) |
| 재원 확보 | -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기금 <br> - 3 개 시공ㅅ(나,전남개밸공사,광주도시공새의 조경 조성 비용 | - 민간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선택석 기금 <br> - 나주시, 전라남도 예산계획 내 공공미술 부문 <br> - 정부지원, 민간기금 등을 통한 재원 확보 |
| 운영 및 관리 |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주도로 공공미술 작뭄 관라감독 및 운영 | - 지속적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br> - 예술 및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br> -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공공미술 투어맵 제작 <br> - 공공미술을 주제로 한 이벤트 개최 |

## 공공미술 추진프로세스

## 사전 단계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작동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공감대 확 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공공미술 운영위원회 및 공공미술 추진단 구성 등이 이루어짐

표5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전단계 추진 프로세스

| 구 분 | 내 용 | 주 체 |
| :---: | :---: | :---: |
| 2011년 11월 | -공공미술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br> -공공미술 심포지엄 개최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r> - 서울대학교 환경켸획연구소 <br> -0이전 공공기관 |
| 2011년 12월 | - 광주전삼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추진 기본구상안) 수립 <br> - 공공미술 ㅇㅏㅣ디어 공모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r>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 2012년 3월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운영위원회 구성 <br> -공곰미술 추진댄(ㅣㅁ) 구성 | - 이전 공공기관 <br> - 나주시 <b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2013년 3월 | - 광주전ㄴㅁㅁ 공동ㄱㅅ시도시 공미술 마스틀팬(안) 제안 | -공고미술 추진단(팀) |

## 공공기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 추진 프로세스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기금납부를 약정하고, 공공미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며, 도시 내 설치될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선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됨
- 선정된 공공미술을 설치한 후 실질적인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표52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미술 추진 프로세스

| 구 분 | 내 용 | 주 체 |
| :---: | :---: | :---: |
| 2012년 5월 | - 기금ㅂㅂㅂㅜ 약정 | - 이전 공공기관, 한군문화예술위원회 |
| 2012년 6월 | -공기미술 추진위워ㄴㅚㅚ 겅 | - 미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큐레이타 • 평론가 <br> - 이전공공기관 • 나주시 • 한군문화예술위원회 |
| 2012년 9월 | -공기미술 작뭄 공모 (공개공모 / 지명공모) |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br> -공공미술 추진단팀) |
| 2012년 11월 | - 작품선정 | -공공ㅁ술 추진위원회 or 심사위원회 |
| 2012년 12월 | - 선정자품 수정 및 보완 (기관의 요구 반영) | - 선정작가, 공고미술 추진단팀) |
| 2013년 | - 직뭄 제작 및 설치 | - 선정작가, 공고미술 추진단팀) |
| 2014년 | - 프로갬 운영 • 관리 | -공고이술 추진던팀), 지역거뮤니티 |

## 민간 기업 및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 추진 프로세스

- 민간기업, 시민,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계로 광주전남 공동혁 신도시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의 범위를 협의함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기금을 마련하도록 함

표53 민간기업 중심의 공공미술 추진 프로세스

| 구 분 | 내 용 | 주 체 |
| :---: | :---: | :---: |
| 2012년 5월 | - 대상빔위 협의 | - 0 전 공공기관 |
| 2013년 3월 | - 광주전남 공형현시ㄴㅗㅣㅅ 공공ㅁ술 마스터플랜(안) 수립 <br> - 마스트플현에 따른 민간기업 공공미술 가이드라인 제안 | - 공공미술 추진단(팀) |
| 2013년 6월 | - 민간기업 대상지 협의 | - 한국문화예술위운회, 나주시 |
| 2013년 7월 | - 민간기업 대상 공고이술 마스티플랜 설명회 | - 공김ㅅ술추진위원회, 공기미술추진던팀) |
| 2013년 8월 | -기금ㅂㅂㅂ붕 응한 기업 : 약정 체결 <br> - 기금잡부에 응하지 않은 기업 : 가이드라인 협의 | - 공고이술 추진단, 나주시 |
| 2013년 10월 | - 기금나부 : 작가공모(공개공모 / 지명공모) | - 선정작가, 공기미술 추진단(팀) |
| 2013는 12월 |  | - 공공미술추진ㅇㅟㅝㅝㄴㅎㅚ 또는 심사위원회 |
| 2014는 01후 | - 직접설치 기업 : 기존 미술장시뭄 추진절치와 같음 -단, 가으라인에 띠라 선정제쟉설치되는지 검토 | -공공ㅁ술추진단(팀), 나주시 |

## 개발 프로세스 및 법제도 개선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프로세스와 공공미술 연계

##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공공미술 연계의 필요성

## 공공미술과의 연계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 사항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인구 5 만명의 자족 형 독립신도시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5 개 공공기관14)이 2014년 이전할 예정임
- '물과 빛이 하나되는 상생의 녹색 생명도시 Green Energypia'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거점도시, 혁신인력의 지방화정착화 유도, 높은 삶의 질을 공유하는 사람 우선의 혁신환경 등을 미래상으로 내세우고 있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의 확립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계획내용과 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건축물의 조감도 등을 보면, 기존 신도 시 개발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
- 관례적인 하향식 도시개발방식으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게 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문화 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크게 반영되지 않음
- 이로 인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미술의 역할을 모색하고 연계를 시도함

14)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식회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우정사업정보센터


자료: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홈페이지 http://innocity.mltm.go.kr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프로세스 중 공공미술 반영 가능 단계 및 시기

##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프로세스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추진 과정 역시 일반적인 혁신도시의 개발과정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립 시 시행지침의 내용 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혁신도시 이전과정에 있어 실시설계의 내용에 공공미술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이 가능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추진 과정 중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수립 단계에서 정책적 내용을 적용 하고,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최종 이전 및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적용을 시도함

표54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과정 및 추진 현황

| 추진현황 | 추진주체 | 비 고 |
| :---: | :---: | :---: |
| - 2004.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 마련 <br> - 2005. 6. 24. 공공기관이전계획안 최종 확정 발표 <br> - 2005. 11. 30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br> - 2007. 1. 11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br> - 2007. 3. 19 혁신도시 보상착수 | - 건설교통부 | - |
| - 후보지 기초조사 착수 <br> 개발 기본구상(토지이용계획) 마련 | - 한국토지주택공사 43\%, | - |
| - 혁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 <br> (※토지이용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자료 첨부) | 전남개발공사 $33 \%$ | - |
| - 2007. 3. 19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 - | - |
| - 2008. 12 혁신도시 내 주공ㅇ파트 건립계획 사업승인 | - | - |
| - 2010. 11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 한국토지주택공사 43\%, | 공공미술 정책 반영 가능 (시행지침 내용 변경) |
| - 2011. 싱반기 혁닌도시 이전기관 청사 칙공 및 긱종 상업용 건물 공사 착수 <br> - 2011. 6. 현재 부지공사 중 $69.2 \%$ 진행 | 전남개발공사 $33 \%$ | - |
| -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 완료 | -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 공공미술 정책 반영 가능 (시행지침 내용 변경)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의 법제도적 구현전략

## 제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반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제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 역 • 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 • 용도 • 밀도•형태 및 공간 활용 등에 관련됨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 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


##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범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
-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


##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구성 및 기본원칙

- 제I 편 총론, 제II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III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IV편 안전도시 • 무장애 도시 - 신재생에너지 • 생태환경도시 시행지침, 제 V 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으로 구성
- 시행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 를 경우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 개별 건축물의 심의(건축, 교통영향평가)결과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없이 반영가능하며, 공공기능을 갖는 시설(도로 등)이 나대지로 편입될 경우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공 공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지중매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함
- 시행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제 •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
-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 판단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표55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제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괄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내용 | －용도지역 • 지구，도시계획시설，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 활용 등에 관함 <br>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규정 <br>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 |
| :---: | :---: |
| 제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 범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ㅈㅜㅜㄹㅇㅢ 신축，증축，개축，재축，대ㅅㅓㅓㄴㄴ 0전 등） <br>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 |
| 제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구성 | －제 I 편 총론，제II편 건축부문 시행지침，제II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 V 편 안전도시 • 무장애 도시 • 신재생에너지 • 생태환경도시 시행지침， 제V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으로 구성 |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기본원칙 | －본 계획과 관련 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에너지사용계획 등 혁신도시 개발계획 추진과 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나주시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따름 <br> －시행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br>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 <br> －개별 건축물의 심의건축，교통영향평가）결과는 별도의 자간우계획변경 절차 없이 반영가능 <br> －공공기능을 갖는 시설（도로 등）이 나대지로 편입될 경우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공공시설물（가로수，가로 등，지중매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함 <br> －시행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제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 우 제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 <br>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제종 지구난유계획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연계방안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으로 1．경관부문 시행지침，2．색채경관，3．공원녹지•수변경관，4．건축물미관， 5．옥외광고물， 6 ．가로시설물， 7 ．야간경관，8．공공부문 시행지침으로 구분되어 있음
－시행지침에 공공미술 연계시키는 방안은 별도의 공공미술 시행지침 내용을 추가하는 적극적 안과 현재의 시행지침 ‘경관 및 공공부문’내 공공미술 내용을 포함시키는 소극적 안이 있음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의 설득 및 협의를 통해 제도개 선 건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야 가능할 것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은「건축법」 제69조제 1 항제 1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필요시「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단위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관할하는 나주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건축법 제 74 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미술장식，부설주차장，공 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함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4조에 따 라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공공미술 추진 조례 제정

## 기존 공공미술 관련 조례

##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본 조례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규정，미술장식의 설치계획의 심의，미술장식 품의 감정 및 평가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미술장식품 설치확인，미술장식품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장 등의 직무，위원회의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의 제정

－도시 공공미술작품 설치의 기본방향，예산지원 근거의 운용 및 관리 주체，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기금의 차등적 적용에 관한 사항，미술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미술 조례 제정 을 통해 공공미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표56 기존 조례 및 향후 추진 가능 조례

| 기존관련조례 | $\begin{aligned} & \text { 문화예술공간 및 } \\ & \text { 미숮사식ㅁㅜㅜ } \\ & \text { 설치에 관한 조례 } \end{aligned}$ |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 항과 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br>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규정，미술장식의 설치계획의 심의，미술 장식품의 감정 및 평가 미술장심품의 가격결정，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의 비율，미술장식뭄 설치확인，미술장시굼ㅁ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위원회의 기능 |
| :---: | :---: | :---: |
| 향후 추지 가능한 조례 |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공공미술의 추진과 관련된 조례 | －도시 공공미술작품 설치의 기본방향，예산지원 근거의 운용 및 관리 주체，민간 부문 및 공공부문 기금의 차등적 적용에 관한 사항，미술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미술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미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시 |

## 공공미술 자체규약을 통한 도시디자인의 제고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공공미술 자체규약 설정

- 헤이리 아트밸리와 북촌 한옥마을 사례와 같이 건축물 외관 및 가로환경 제고를 위해 지역 거주민 들이 협정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침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공공미술을 추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큼
- 지역사회에서의 자체규약을 통해 1층부 개발을 통한 공공미술 회랑 조성, 옥상을 활용한 공공미술 갤러리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생활공간 속에 밀접하게 파고드는 공공미술의 영역 확장을 가능하게 함

표57 국내 자체규약 설정 사례

| 구 분 | 헤이리 | 북촌 한옥마을 |
| :---: | :---: | :---: |
| 대상 | - 일반 주거지 | - 역사경관(한옥마을) |
| 시작년도 | - 1997년 | - 2001년 |
| 내용 | - 건축물 외관 등 | - 한옥의 외관 및 가로환경 등 |
| $\begin{gathered} \text { 사업 } \\ \text { 추진주체 } \end{gathered}$ |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 여명의 예술인들이 회 원으로 참여한 '서화촌 건설위원회' (조합형태) | - 서울시, ‘종로북촌가꾸기회' 500여명 |
| 추진과정 중 공공참여 | -주민위원회 승인을 건축인•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 한옥지원조례의 제정, 전담조직신설 |
| 지침 | - 건축설계지침 | - 지구단위계획 <br> - 주민협정 |
| 성과 | - 민간차원에서 추진된 국내 최초의 경관협정 유사 사례 <br> -토지매입 시 건축지침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필수로 하여 협정준수 의무를 사전에 제시 <br> - 헤이리에 적합한 건축유도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집단 설치(건설위원회) <br> -단지의 성격을 명확히 명시한 구체적인 설계 지침 의 작성 <br> - 파주시의 제도적 지원(헤이리 건설위원회의 승인이 파주시 건축허가의 선행조건) | - 규제 위주의 역사보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책을 통한 역 사환경 보전을 유도한 사례 <br> - 주민, 행정, 전문가의 협력에 의한 정책제안 <br> - 한옥 개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br> - 전신주 지중화, 가로환경 개선 등 공공지원 추진 |

## 상위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마스터 플랜 수립

## 공공미술 마스터 플랜 수립의 필요성

## 도시치원에서의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의 수립 방안

- 도시계획과 함께 하는 공공미술의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맥락을 고찰하고 그에 공공미술이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 도시라는 큰 그림을 놓고 공공미술의 추진을 고민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검토 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미술의 청사진을 제시함
-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도시의 공간유형별 특성화 전략 수립 및 미술로 특화된 공공시설물 도입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범지구의 지정 및 사업의 시행방안 을 제시함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공공미술 마스터 플랜 수립

## 추진배경

-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개발계획과 문화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과 구현방안, 구체적 설치위치 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함


## 추진방식 및 내용구성

- 시민, 작가, 행정기관, 전문가, 개발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해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의 전제 및 방향, 공공미술의 비전, 공공미술과 연계한 혁신도시 장소만들기 전 략, 혁신도시 구역별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및 파트너십, 혁신도시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공공미술 운영 •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수록됨


## 통합적 공공미술 추진조직 구성

## 도입단계

## 추진조직 기반마련

- 2012년~2013년은 공공미술 도입단계로 혁신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를 형성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임
- 이와 같은 공감대 형성과정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협력적 참여로 공동이 함께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 하고 이를 구체화함


## 공공미술 협의회 구성

- 공공미술을 위한 조직구성 측면에서는 우선 15 개의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추진단, 사업시행자, 문화예술위원회로 구성된 공공미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
- 공공미술협의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선택적 기금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
- 또한 추진위원회가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혁신에 관한 비전을 제시 및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협의체 역할]


그림73 광주전남 공형혁닌솟 공공미술 협이체 0 ㅇ핵ㄴㄴ계자 및 역할

## 확산 및 성숙단계

## 실질적 추진조직 구성

- 2014년 이후는 공공미술 확산 및 성숙단계로 도시 공공공간과 주거상업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유형 의 공공미술을 추진하는 단계로써,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와 행정기관시민예술가 등 다부문 공공미

술 관리운영조직 가동, 재원확보 방식의 다각화,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기임

- 실질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공공미 술 운영위원회,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을 구성함


## 공공미술 운영위원회

-15개 이전 공공기관과 전남도청, 문화예술위원회로 구성된 공공미술 운영위원회는 재원조성 과 마스터플랜을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함

##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 사업추진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술 추진위원회는 크게 임명직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함
- 임명직위원은 최소한 실제 작업을 하는 전문작가 1 인을 포함하여 조경가, 건축가, 디자이너 또는 큐레이터, 평론가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6 \sim 7$ 인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위원 으로는 전남도청, 이전공공기관대표,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각 1 인씩 총 3 명으로 구성함
- 추진위원회는 혁신도시공공미술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 및 실무집행사항 승인함


##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또는 공공미술추진단(팀))

-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은 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해 구성되나 전문성이나 외부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 시 외부인사를 고용하기도 함
- 사무국은 운영 위원회(이사회)및 추진 위원회(운영위원회)의 보좌와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마스터플 랜 수립, (지명)공모 운영 및 기획업무를 수행


## 단기추진일정




(공풍기글조셩 아 겨나, 설치 가이드라연 도영)

## 장기추진일정




##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민간 비영리조직 구성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트러스트 조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거주자와 문화예술인, 지역사회 리더 등으로 구성된 민간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미술 트러스트를 확산시켜 나감
-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며 공공미술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과 민간기금 조성의 역할을 수행함
- 또한 혁신도시 기업, 시민들의 공공미술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차원 에서 비영리 공공미술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여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각종 캠페인 및 행사 개최함


## 만관 파트너십 구축

- 과거 관주도의 사업추진을 탈피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협동경영을 통한 도시차원의 공공미술을 실현 하는 가치를 증대 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관리운영 파트너십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을 정하고 프로그램 등 각 분야의 매뉴얼을 만들어 민간 차원의 공공미술 활성화 및 운영관 리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함



## 재원확보

## 선택적 기금제도 참여 활성화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선택적 기금 현황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선택적기금제 시행

- 2011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시행(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으로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됨
- 건축주가 해당 개발 부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예진흥기금으로 기금을 납부하여 도시 차원에서의 공공미술 기획에 사용할 수 있음
- 이전기관이 공동으로 수준 높은 공공미술작품을 공공 공간(공원, 광장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의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15 개의 이전 공공기관 중 13 개의 기관이 미술 작품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모든 공공기관이 선택적 기금제에 참여하게 되면 도시적인 차원의 공공미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재원(seed money)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됨

참고 선택적 기금제 시챙시 광주전남 공동현신도시의 예상 기금액

| 기관명 | 연면적 ( $\mathrm{m}^{2}$ ) | 미술작품설치비 | 기금출연액 |
| :---: | :---: | :---: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4,114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 한국전력공사 | 93,2२2 | 720,442천원 | 503,310천원 |
| 한전KDN(ᄌᄌ) | 40,170 | 310,443천원 | 217,310천원 |
| KPX전력거래소 | 28,474 | 220,054천원 | 154,015천원 |
| 한전KPS(주) | 35,851 | 277,065천원 | 193,945천원 |
| 우정사업정보센터 | 27,574 | 426,197천원 | 국가기관 |
| 국립전파연구원 | 14,696 | 227,148천원 | 국가기관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5,300 | 118,242천원 | 82,769천원 |
| 한국인터넷진흥원 | 21,488 | 166,064천원 | 116,245천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598 | 151,458천원 | 106,020천원 |
| 한국농어촌공사 | 41,379 | 319,787천원 | 223,851천원 |
| 농수산물유통공사 | 18,929 | 146,288천원 | 102,401천원 |
| 한국콘텐츠진흥원 | 12,660 | 97,839천원 | 68,487천원 |
| 계 | 327,071 | 3,181,027천원 | 1,869,353천원 |

- 미술작품설치비 : 연면적(5월기준)x표준건축비의 95\%x0.5\%(설치비율, 현재 나주시 조례) -2011 년도 표준건축비: $1,627,000$ 원
- 기금출연액: 미술작품설치비 $\times 70 \%$
- 15개 이전기관 중 "농수산식품연수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는 의무대상에서 제외
(연수원은 교육시설, 연금공단 및 예술위원회는 1 만제곱미터 미달로 의무대상에서 제외/ 예술위원회는 별도 재윤조성)

표58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미술 공동추진에 따른 효과

| 구 분 | 효 과 |
| :---: | :---: |
| 행정절차 및 비용 감소 | - 심의과정에서 설치 등의 번거로운 행정절차 면제 <br> - 작가 및 작품선정 관련 공정성 시비 문제 해소 <br> - 기금출연시 기관별 직접설치의 $70 \%$ 비용 부담 |
| 사회적 공헌 책임 실현 | - 거주민 및 방문객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플랫폼 제공 <br> - 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제고 |
| 기관 홍보효과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공동추진의 국내 선도 사례로 홍보효과 유발 <br> - 보도자료 등 언론에 이전기관이 노출됨에 따른 직간접적 홍보효과 유발 |
| 사후관리책임 면제 | -설치되는 공공미술 작품의 소유권을 지잧ㅊㅇㅔ 기부체밥 하는 대신 작품의 유지 및 보수는 지짗ㅊ미엇 일굘적으로 담당 |
| 도시브랜드 제고 및 경제적 반사이익 | - 방문객 증가로 인한 도시 횔성화와 이로 인한 이전기관 부동산 가치 상승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선택적 기금제 참여 활성화 방안

## 선택적 기금제도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전략 마련

- 건축비용의 $1 \%$ 를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용적률을 허가 기준보다 완화시켜 줌
- 나주시 조례 계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내용을 바탕으 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대상, 산정원칙, 산정식 등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함


## 참고_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사례

## ㅁㅜㅜㄴ영기준 수립 배경

- 공공시설등 부지 외에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46조, 도시계획조례 19 조2 및 시행규칙 7조 개정)
-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ㅁ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원칙
환산 부지면적 $\left(\mathrm{m}^{2}\right)=$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 $\left(\right.$ 원 $\left./ \mathrm{m}^{2}\right)$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다만 사전협싱형 자진앙계획의 경우에는 협상결교를 모괼하는 별도의 용적률 언센티브 적용 (돗ㄱ계회소졔 시행규칙 제조 제항 근거)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사전협상과 같이 구체적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통해 가액을 미리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4항 제1호)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위치, 방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사업부지 내외 설치, 복합건물로 통합 설치 등 설치위치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 적용
: 공공시설의 입지는 시설별로 그 효용이 최대화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금납부 절차의 간소화

- 문화예술기금에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기금의 납부 절차를 매우 간소하게 하여 건축주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
- 의무이행이 간편해짐에 따라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어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를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
- 반면 개발사업자들이 해당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


그림77 기금납부 절차의 간소화

## 다양한 선택의 방안 마련

- 기금 납부와 공공미술품설치를 혼용하는 다양한 안을 제시하여 개발사업자들이 선택적 기금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그림78 선택적 기금제의 선택사항 제안

## 선택적 기금제의 확대 적용

##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의무 강화

-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 예산계획 내 공공미술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문화환경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작품비용을 산출하는 요율을 $1 \%$ 이하에서 $1 \%$ 이상으로 전환하도록 나주시 조례안 계정
- 제도 적용 건축물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한해 건축물 공공미술제도의 적용 기준인 연면적 기준 을 1 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내림으로써 공공부문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함

참고_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공공부문 관련 토지이용

| 구분 |  |  | 면적 ( $\mathrm{m}^{2}$ ) | 비고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공원 } \\ & \text { 및 녹지 } \end{aligned}$ |  | 공원 | 1,171,183 | 34개소 |
|  |  | 녹지 | 645,867 | 103 개소 |
|  |  | 하천 | 6,893 | 1개소 |
|  |  | 공공지 | 7,956 | 2 개소 |
| 도시지원 <br> 시설용지 |  | 도로 | 1,038,474 | - |
|  |  | 보행자도로 | 44,776 | - |
|  |  | 자전거도로 | 27,921 | - |
|  |  | 주차장 | 48,986 | - |
|  |  | 광장 | 3,457 | 2 개소 |
|  |  | 통신시설 | 14,639 | - |
|  |  | 전기공급설비 | 4,830 | - |
|  |  | 기스공급설비 | 122 | - |
|  |  | 주유소 | 7,850 | - |
|  |  | 유치원 | 4,811 | 3 개소 |
|  | 교육 | 초등학교 | 37,231 | 3 개소 |
|  | 시설 | 중학교 | 12,950 | 1개소 |
|  |  | School Complex | 106,634 | 2 개소 |
|  |  | 공공청사 | 9,055 | 1개소(우체국, 소방서, 경찰지구대 등) |
|  |  | 근린공고이설 | 9,551 | 4개소 |
|  |  | 복지교육연구시설 | 9,157 | 1 개소 |
|  |  | 종교시설 | 9,007 | 4개소 |
|  |  | 종합의료시설 | 7,202 | 1개소 |
|  |  | 환경기초시설 | 37,948 | - |
|  |  | 체육시설 | 721,318 | 1개소 |

자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표를 재구성

##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비용의 일정한 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

- 나주시가 관장하고 있는 공원, 광장, 가로, 교통시설 등의 공공 시설물에 대해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비용의 일정한 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둠
-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마인드 변화를 촉진하면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미술을 더 많이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민간부문에서의 재원 확보

## 민간부문에서의 공공미술 기금 마련 필요성

## 공공부문 재원의 한계

- 모든 공공기관이 선택적 기금제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13 개 이전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상 기금액은 18억원 규모임
- 이는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규모이며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택적 기금제 이외의 재원 확보 채널 마련 필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명기부금의 경우 문화마케팅의 차원에서 지명도가 높고, 이슈화가 가능한 프로젝트에 기부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같은 지방도시의 경우 기부혜택을 받기 어려움
- 공공미술작품 설치 후에는 행정, 보존, 관리,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교육프로그램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재정이 소요됨
- 이와 같이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나 공공부문의 재원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움


## 참고_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사업 현항

ㅁ1973년 기관 설립 당시부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부제도 마련
ㅁ2009년까지 약 1,46 억원 가량이 기부되어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지원
ㅁㅁㄴ화왓술에 대한 후원 혹은 기부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사업을 후원하는 방법 등이 있음
ㅁㅣㅣ부를 할 경우 기부세제혜택블 제공

- 개인 :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 \%$ 한도로 소득 공제
- 법인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 \%$ 한도로 손비 처리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현형〉
(단위: 천원)

| 구분 | $73 \sim^{\prime} 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부금 | $3,569,808$ | 167,339 | 328,540 | 1,191 | 717 | 5,715 | 18,500 | 0 | $4,091,810$ |
| 조건부기부금 | $89,072,529$ | $1,582,093$ | $4,376,502$ | $6,507,483$ | $9,065,252$ | $7,965,616$ | $9,929,925$ | $10,238,475$ | $141,737,875$ |
| 실명제기부금 | 350,000 | 0 | 0 | 0 | 28,500 | 11,000 | 27,000 | 0 | 416,500 |
| 소계 | $92,992,337$ | $4,749,432$ | $4,705,042$ | $6,508,674$ | $9,094,469$ | $7,982,331$ | $9,975,425$ | $10,238,475$ | $146,246,185$ |
| 방송발전기금 | $248,080,279$ | 0 | 0 | 0 | 0 | 0 | 0 | 0 | $248,080,279$ |
| 합계 | $341,072,616$ | $4,749,432$ | $4,705,042$ | $6,508,674$ | $9,094,469$ | $7,982,331$ | $9,975,425$ | $10,238,475$ | $394,326,464$ |

자료. 양현미(2010),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예술분야 기부현황과 활성화의 필요성

##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미술의 활성화 필요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과정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시민과의 양방향성이 중요한 공공미술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공공미술작품의 설치 이외에 민간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공공 미술 활성화를 도모함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시민과 기업차원에서 공공미술 비영리 조직과 같은 실질적인 조직구성으로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부문에서의 재원확보를 위한 전략

## 전남도청 및 전남문화재단

-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발 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재원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민간부문이 기금 기부를 통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함
- 민간부문의 참여유도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입주 협의체들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조직)를 마련함


## 기업 역할

-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
- 나주시 및 나주시 문화재단과의 지속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문화마케팅 관점에서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뿐 아니라 공공미술 고유의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더 나아가 기업문화재단을 통해 안정된 운영구조를 갖추도록 하며 기업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정기 프로그램이 늘어나도록 촉진


## 참고_ 민관 파트너십의 구조



## 해당 입주기업

## 운영 • 관리

## 공공미술을 활용한 예술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매체 활용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공미술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며 공공미술을 홍보함
- 작가들에게는 다양한 공모의 기회와 시민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역할함
- 국내와 국외에서의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있어서 선진적인 정보 제공
-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홈페이지와 연계해 관광자원화 함



## 주변 대도시와 연계한 공공미술 이벤트 개최

- 광주비엔날레와 같이 주변 대도시에서 열리는 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 프로젝트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 도시로의 이미지를 향상시킴
- 주변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 등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 요소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주제를 달리하여 기획하는 등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전체의 발전을 향상 시키고 지역민과 지역예술가들의 참여를 증진시킴


그림82 취리히의 공공미술 이벤트(1998년- 소. 2003년-벤치. 2005년- 테디베어. 2009년- 플라워화분)

## 도시 공공공간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혁신도시 내 공원 및 광장 등의 공공공간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공공미술이 도시 공간과 사람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함
- 작가들에게 작품설치를 위한 장소를 임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젊은 작가들의 참여를 증진시킴
- 계속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는 일시적인 작품들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작품 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그림83 도시 공공공간과 연계한 공공미술 사례(안양, 시카고, 뉴욕)

## 아트 투어 프로그램

- 혁신도시 내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을 공공미술과 연계한 아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함
- 획일적인 공공미술 투어프로그램이 아닌 혁신도시의 다양한 문화 및 자원과 결합한 테마형 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폭 넓은 연령층과 관광객을 유치함
- 저탄소 친환경 아트 투어 프로그램, 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수변 공간 투어 프로그램 등 혁신도시의 비전과 결부된 프로그램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함


그림86 덴버의 아트투어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사용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자료: 어플리케이션 "Layer")

##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기관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스쿨 콤플렉스 등의 혁신도시의 영유아 및 초，중，고 교육 커리큘럼과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연계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작가와 학교，지역사회의 의견조정 및 예술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관리 ，운영함
－미술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경우 야외활동을 권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함

## 공공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혁신도시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 와 권한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함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주제와 성격은 기관이나 구역의 성격을 바탕을 설정할 수 있음
－공공미술에 참여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함
－작가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도 오픈된 정보와 프로세스를 공개함

## 참고＿영국 The Big Art Project 공공미술 프로젝트 프로그램

## ㅁㅡㅡ로그맴 개요

－영국의 방송 네트워크 중 하나인 채널4는 The Big Art Project라는 복합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
－2005년 시작，주요 시청시간대 다큐멘터리로 ㄱ 과정을 소개함
－전 영국을 배경으로 개의 다양한 지역에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주요 도시보다는 커뮤니티 수준의 장소들로 주로 구성
－공공미술의 확산과 공공미술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공미술과 작가들에 대한 정보와 시각자료를 제공하여 대중의 이해를 돕고 있음
－The Big Art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된 Big 4 project
－매년 자사의 로고를 나타내는 조형물에 포장을 하는 공모제 및 전시 개최
－유명 국내외 작가뿐만 아니라 신진작가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의 젊은 층에게 호응이 좋아 이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민간기업의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자리잡음

$\langle$ Big 4〉


〈A compute－generated impression of Turbuence in Cadgan Bay〉


〈Artist Jaume Plensa〉

## 참고＿미국의 교육기관 및 비영리딘체와 연계한 프로그맴

## ㅁㅣㅣ카고의 갤러리 37프로그램（Gallery 37 Program）

－시카고 시 문화부 산하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직업훈련적 요소를 가미
－이 프로그램은 이미 미국 내 16개 도시와 영국，호주에서도 도입 시행
－시카고 내 거주하는 14 살에서 21살까지의 젊은이 600 명을 면접과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여름 6 주간 직업을 하도록 함
－미술，무용，음악，문학 프로그램 등에 견습생으로 고용되어 젊은이들은 다양한 예술체험을 하고 예술의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직업정신도 배우게 됨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젊은이들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섞여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중견 작가인 교사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직업의식도 배우게 됨
－다운타운의 6 주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갤러리 37 프로그램은 이제 직업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프로그래，다운타운이 아닌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시카고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도시 의 모습을 변화시켜 오고 있음


뮨욕의 Public Art for Public Schools
－현 뉴욕시 교육청과 NYC School Construction Authority가 개발 중인 프로그램
－퍼센트법에 의해 뉴욕 공립학교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1,500 개 정도가 있음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미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학교 선생님들에게 수업에서 공공미술 작품을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 중

마키트레저（Archi－Treasures）
－소규모 비영리 공공미술 단체인 아키트레저는 학교 안의 정원을 예술가와 학생들의 합동으로 꾸미는 작업을 주로 함
－벽화나 조각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조경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친화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구
－커리큘럼을 세울 때로 예술가，조경가나 행정가 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지도자 등도 함께 참여


〈Archi－treasures의 홈페이지〉
〈Westheaven archi－treasures Design Workshop〉
〈Chicago Architectural Events〉
자료：http：／／architreasures．ora／
지룔：hitp：：／／ww．chicaacorchitecturaldub．oro／846005／EVENTS

## 종합 및 제언

## 종합 및 제언

## 연구의 종합

- 우리의 도시환경은 오랫동안 기능과 효율을 중시하는 개발방식이 지배해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을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고, 도시경관의 보존 및 관리, 자연자원의 확보와 유지, 풍요로운 문화환경의 창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과제는 공공미술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는 점에서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전략을 법제도 및 정책 개선, 조직 구성, 재원 확보, 운영관리 측면으로 구분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 공공미술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도시의 문화환경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과 가치가 공유되 어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공공미술을 통하여 우리의 도시는 즐겁고 유쾌한 체험의 장소가 되고, 고유한 장소의 개성이 드러나 게 되고, 지역 주민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고 확 산되어 나갈 수 있음
-본 연구과제는 도시차원의 공공미술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을 위해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공공미술, 건축, 경관, 조경, 디자인, 행정 부문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 공공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음
-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의 변화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이며,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


## 제언

## 시민, 기업, 정책결정권자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 도시 차원에서의 공공미술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 정책결정권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시 공공미술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

-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제도, 조직, 재원, 관리운영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혹은 별도조직으로 공공미술발전위원회를 설차운영함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구현전략을 추진할 조직이 보강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건축공공미술• 정책개발 경험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하도록 함


## 향후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빙의 지속적 보강 및 투자확대

- 공공미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도시의 지속적인 문화예술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 작품 및 작가, 그리고 제작과정 정보를 포괄하는 공공미술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빙의 지속적 보강 및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향후 추진 및 연구과제

## 도시적 차원 공공미술 기획추진을 지자체가 제안하여 일부 기금을 지원

- 지자체의 자발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지자체의 매칭(Matching) 재원 마련


## 좋은 도시 공공미술을 시상하는 제도를 운영

- 도시적 차원에서 좋은 공공미술의 공감대 형성확산


## 좋은 도시 공공미술 만들기 매뉴얼 작성보급

- 사례: 「좋은 간판 만들기 매뉴얼」 (서울특별시, 2005), Public Art Toolkit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등


## 지역기반의 도시 공공미술의 창의적 사이트 제안을 위한 공모 추진

- 기성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이 개입할 지역을 찾아서 제안하게끔 함. 이후 추진을 적극 시도, 중 소도시나 도시재생이 필요한 도시 혹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
- 사례 : Mapping \& Making Request for Ideas for Artist Initiated Public Project (Vancouver, 2008)


## 도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공공미술의 기능 도입을 위한 협력추진 $\rightarrow$ 공공디자인과 공공미

술의 결합 및 도시미학에 기여

- 사례: 하노버 버스 정류장 프로젝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공간환경디자인을 LH공사와 협력추진


## 특정 도시나 장소를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 아트축제 협력추진

- 사례: DRIFT10의 런던 테임즈강변 Artwork 이벤트, 경인아라뱃길 공공미술 축제를 한국수자원공사 와 협력추진


##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공미술 국제워크숍 추진

- 사례: DMZ 및 접경지구의 공공미술 국제워크숍 개최



## 제1차 워크솝

## 회의 개요

| 회의 안건 | 도시차원의 공공미술 추진을 위한 정책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감대 확산 및 비전 공유 |  |  |  |
| :--- | :--- | :--- | :---: | :---: |
| 일 | 시 | 2011. 11. 10. 목. 오전11시~13시 |  |  |
| 장 | 소 | 한국프레스센터 |  |  |
|  |  |  |  |  |
| 김상규 (나 녹색경관처 공간환경부 차장) | 참 석 자 |  |  |  |
| 박성배 (내 세종혁신도시처 차장) |  |  |  |  |
|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  |  |  |  |
| 서성록 (안동대학교 교수/한국미술 평론가 협회장) | 채병선 (대통력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 전북대학교 교수) <br> 치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b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명 |  |  |  |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4명

## 주요 회의내용

| 박은실 (한묵문형ㅅ술우운회 유원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연간 천억원 지원함 <br> -이 김은 기초예술 및 순수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김믄 해당 지역에만 씀 <br> -도시와 연계라는 목표 내지는 도전 <br> - 기부금의 운영 방식과 기획 아이디어 제시 <br> - 운영 기구 조직 <br> - 기부믐을 받고 세제해택을 주는 방안 <br> - 사회복지와 연계 <br>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를 통한 일반 시민과의 공유 <br> - 문화예술 기금 브랜드 작업 중 <br> - 교육 및 인력 창성, 일자리 창출 방안 |
| :---: | :---: |
| 채병선 <br> (전북대학교 교수) | -이전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 <br> - 이전, 미술장식 제도 시행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음 <br> - 각 분야별 소통 및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 <br> - 예술가들에 대한 설득이 용이하지 않았음 <br> -기금의 운용 및 활용 <br> - 기금은 특별세 형태를 띰 <br> - 기금이 그 지역에 투자되지 않았을 때의 반발은 사회적 이슈 급이 될 수 있음 <br> -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 <br> - 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규모가 아니므로 관점을 사용자로 전환할 필요 <br> -혁신도시를 통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 <br> - 다른 혁신도시가 아니라 왜 광주 • 전남 혁신도시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br> - 토지이용(자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어려움 있을 것 |


|  | - 경관조례로 실현하는 시도가 경관 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히지 않을지에 대해 고칠해봉야 할 것 <br> - 이미 나주는 도면 수준의 구체적 안이 나욨을 것이니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뺄리 나와야 <br> - 기관들이 신속히 술선수범해야 민간베게 파급효과가 빠를 것 <br> - 그 방항성의 고찰에 ㅇㅆㅆㅇㅓ 공곰물ㄹㄹ, 퍼블릭 아트, 퍼블릭 디자인 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함 |
| :---: | :---: |
| 이정형 (중아냏ㅎㄴㄱㅛ 교수)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의 의미 <br> - 법이 개정된 것 자체로 상당한 의미 <br> - 의미 확대의 필요 <br> - 도시 브랜드나 도시경관이라는 큰 이름하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 <br> - 사회적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젊은 예술가들이 할 일이 많아질 것 <br> - 나주에 한해서 룰과 운영체계만 잘 만들면 충분히 가능 <br> - 단, 장기적 인프라 만들고 지원까지 시스템화 하면 좋을 것 <br> - 환경디자인의 폭을 넓히는 계기 <br>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현실적 난관들 <br> - 예술계의 폐쇄성은 프로젝트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함 <br> - 공공미술이라 하였을 때 단순히 조각품만을 연상케 하는 기존 인식 <br> - 이제 1 만 $\mathrm{m}^{2}$ 이상의 면적을 바탕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한계도 도래할 것 <br>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에 있어서의 제안 <br> - 기금 마련은 쉽지 않은 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이 중요 <br> $\triangleright$ 효율적 운용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함 <br> - 지구단위계획 안에 경관계획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 <br> $\triangleright$ 더욱이 그 요소로 들어가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질 것 <br> $\triangleright$ 지지체별 경관조례 운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br> $\triangleright$ 경관 조례나 도시디자인 조례에 잘 얹히기만 해도 좋을 것 <br> $\triangleright$ 기존에 있는 법의 효용성을 높이고 더 성숙해지면 특화 할 수 있는 조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 <br> - 관 보다는 민관 주도가 맞을 듯 <br> $\triangleright$ 사업 주체들이 협정으로 주도를 하고 관이나 전문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 <br> $\triangleright$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짜야 지속가능 할 것 <br> $\triangleright$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공공미술의 각 자치구역 설정을 민간의 차원에서 <br> $\triangleright$ 주민주도는 기존의 폐쇄적 시스템 바꾼ㄴㄴ 계기가 될 것 <br> - 세부적 추가 추진 방안의 제안 <br> $\triangleright$ 미수ㄹㅜㅜㅁ을 넘어 공개공지의 활용이나 가로환경 개선까지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br> $\triangleright 15$ 개 기관에 더하여 차후 아파트 단지도 포함 되었을 때, 건설회사도 포괄될 것, 이에 내와는 미리 협상 및 조율을 해야 함 |
| 서성록 (안다ㄴㅐㅐㅎㅎ교교구수) | - 제도 개정과 대안 방안 마련 <br> - 선택적 기믐제를 충현 할 경우 $0.3 \%$ 만 해도 되는 제도적 보완 <br> -공공미술작품 설치의 고려 <br> - 작가보다는 직품의 질이 중요 <br> - 국내.외의 개방이 필요 <br> -작기주의 보다 향토주의 고려 <br> - 시민의 기대치에 부흥 <br> - 주민설셩회 등을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강화와 의견 수렴 <br> - 작품 설치 후 전문가 및 일반 주민의 평아 <br> - 일몰제의 도입도 고려 <br> -출연된 기금의 운영 문제 <br> - 기금 출연한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쓰일 경우 주민 반발 예상 <br> -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br> - 문화 소외지영에 투재영국 우드게잍. 빌바오 시례) |
| 주ㄱㅕㅕㄱㅣㅣㄴ (설대하ㄱㅛㅛㅅㅜ) | -연구의 의의 <br> - 본 연군단순히 공공물민을 위한 프로ㅈㅔㅔㅌㅏㅏ 아닌 '좋은 도시’를 만드는 큰 밑그림의 하에서 진행 <br> -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사이의 경계가 있을 것, 공공디자인과 결합된 설계하 필요 |
| 차주영 <br> (건축ㄱ시핑기연고소 연구원 | -도시계회ㄱㅘㅘ 연켸한 공공미술 추진방안의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 <br> - 문화예술징흥기금은 자ㄱㅏㅏ 및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의미임을 알고 사용처에 대한 목적을 명 확히 해야 함 <br> - 도시와 연계한나는 목표는 쉽지 만은 않을 것 <br> - 법제도의 개선에 더불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담긴 마스티플랜이 필요 |


|  | - 선도 사업이 메겨질 수 있어야 지속성이 확보될 것 <br> - 나주시만 생각하면 가능할 듯 하나, 전체 도시의 성공여부는 다른 문제 <br> - 제도적인 틀 보다는 소프트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br> - 도시계획 안에서의 연계성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 |
| :---: | :---: |
| 김상규 <br> (내공사 녹색경관처 공간환경부 차장) | -도시와 예술의 접점의 연계성 문제와 차별화 방안 고려 <br> -결과중심보다는 협의와 논의를 통한 과정중심 <br> - 협의회 과정들이 공공미술을 완성해가는 접근방식이 중요 <br> -문화를 받는 사람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프레임 개발 <br> - 공공미술은 일반 시민과 같이 호흡해야 함 |
| 박성배 (내공사 세중혁닌도시처 치쟁) | - 주관하는 부처의 명확성 제고 <br> - 공공미술의 특수성 고려 <br> - 용역이 아닌 공모형식이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핵심 <br> - 예로 세종시는 공공디자인과 공공미술이 따로 진행됨 : 심의 및 마스터 플랜이 다름 <br> - 공모성격을 도시계획으로 바꿀 경우의 한계성 <br> -형평성의 문제 <br> - 제시한자와 일한자의 형평성 |
| 박두현 (한국문화에술위ㄴㅝㅝㄴ 예술친징본부장 | -선택적 기금 규모를 파악한 결과 연간 90 억원 <br> -문예진흥 기금으로 출원 되었을 때 문제점 <br>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br> - 지역의 배분과 매칭의 문제 <br> -건축장식제도 당시 심의 문제에 따른 공공성 확보 <br> - 심의 구조의 변경과 도단위의 심의 <br> - 시행령과 운영방안은 현재 만들고 있는 중 <br> - 큰 틀에서 바라볼때 법 제도 개선의 가능성 문제 <br> -기존 제도에서 15 개 기관의 의사를 모았을 때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 <br> - 다른 민간 기관들의 동참 여지 여부 <br>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 <br> -시간의 부족과 여러분야의 충돌과정 예상 |

## 제2차 워크솝

## 회의 개요

| 회의 안건 |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렵 |  |
| :--- | :--- | :--- |
| 일 시 | 2011. 11. 18. . 금. 오후 2-5시 |  |
| 장 | 소 |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2실 |
|  |  |  |
| 참석자 (기관명) |  |  |
| 윤혁경 (에이앤유 디자인 그룹대표)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 정소익 (도시매개프로젝트) | 홍경한 (전 파블릭아트 편집장) |  |
| 유나경 (코러스엔지니어링건축사소장) | 신한철 (미술작가) |  |
| 양수인 (삶것 대표) |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 이광준 (전 도시갤러리 책임큐레이터) |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3명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명 |  |  |

## 주요 회의내용

| 윤혁경 (에이앤유 디자인그룹 대표) | -민간 건축주 및 지자체의 이익제공 <br> - 선택적 기금제의 참여를 할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건축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인허가와 같은 행정적 <br>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와 기금을 배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협조를 할 것임 <br> -법률적 근거 마련 <br> - 서울시 디자인 기본계획(2005년)을 세울 때 초기라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실행 시 어려웠으나, 현재 25 개 각 구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관 기본계획 및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조례와 같은 법률적 근거를 만든 후 추진을 해야 함 <br> - 행복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특별건축법을 통해 각 건축구역마다 통합적으로 공공미술을 설치함, 서울시 경우 공공공지를 설정하나 조성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음,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경관 계획 및 디자인 계획과 같은 세부내용이 지침으로 정해져야만 함 <br> - 경관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 3 만$m^{2}$ 이상의 대규모 면적의 경우 토징ㅇ용계획 수립 시 배치계획 내 세부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음 <br> - 경관협형정은 지엽적인 범위에 한정되며 대규모 면적에서 실현 된 사례가 없고 선택적기금제에 적용되 는 1만m$m^{2}$ 이상의 건축물이 모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어려울 수 있음 <br> -공공공가에 공공미술이 필요한 논리 <br> - 공공고간이어서 반드시 공공미술이 필요하다는 논리보다는 올림픽대로, 대학로와 같은 실패한 사례의 반성을 기반으로 선택적 기금제 참여를 설득해야 함 <br> -공공공간 내 미술품의 설치 될 위치 및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 |
| :---: | :---: |
| 김성원 <b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도시계획과 연계된 공공미술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예술가가 참여함에 있어 시 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어려움 <br> -이런 종류의 해외사례는 문제도 있으나 한 두 개 정도는 국내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함. 경험 상 바람 직한 공공미술을 구현하는데 지자치의 협력이 중요함. 시 소유의 장소에 설치 할 수 있음 |


| 신한철 <br> (미술작가) | -직품을 자산으로 보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됨, 즉 올바른 건축주는 작품을 투자하여 가치가 상승하면 이 는 자산이 됨. 그러나 실제로많은 수의 작품이 있지만 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이 된 건축주는 없음 <br> -일단 설득 후 성공적 도시 모델로 정착됨은 선택적 기금제 활성화의 시초가 될 것. 이전 성공사례는 다 외국으로써 일부 국고를 들여서라도 첫 국내 성공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br> -서울시 경우 많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작품을 만들었으나 대표적 직품이 없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하 <br> 기 어려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함 <br> -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첫 시범사례로써 국고를 사용해서라도 성공 모델회를 통한 의식전환이 필요함. 공 감을 얻고 난 후 선택적 기금제의 활성화가 예상 <br> -제도 활성화를 하는데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배분된 기금으로 다양한 문회적 사업을 할 수 있다 <br> 는 이점을 갖는 설득과정이 필요함 <br> -성남의 경우 성남 조각가 혐회에 3 억의 예산을 주는 조전으로 공공ㅇ술 6 개년 계획 수립, 틴천과 중앙 공원, 율동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예술품을 전시한 후 그 중 8점은 각 이천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10점 은 1 년동안 각 이백민원을 주고 임대하여 율동공원을 조각공원화함 <br> -1년 뒤에는 다른 좋은 작품으로 교체됨, 그러나 담당공무원가 작가들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으나 <br> 시중이 교체되며 시업페지, 본 사례는 사업을 추진침에 있어 시장의 의지가 절대적ㅇㅁㅁㅕ 중요하다는 것을 ㅅ从ㅏ |
| :---: | :---: |
| 이광준 <br> (前 도ㅅㅐㅐㄹㄹㄹㅣ 책밈큐레이티) | -혁신도시의 경우 선택적 기금제 성공 시 예산은 18억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모로 전략이 필요하, 과거 실패한 프로젝트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세종시 경우 공공미술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 락을 구축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임 <br> - 전통시장 프로젝트의 경우 큐레이터 도입, 조직구축, 조펴ㅈㅔㅔ정과 같은 부분은 지짗체의 지원능력은 매 우 중요함. 위원회 구성에 있어 25 명의 많은 인원이나 책임은 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어느 지자체는 공무원이 큐레이터인데 이 경우 큐레이터가 감시관의 역할도 하여 전문가를 배려하기도 함. 모든 것을 일빈홯ㅎ긴 어렵지만 선택적 기금제 운영 시 위원회 조족뱅안, 큐레이터 선정 등 다층적으로 고민하야 함 -신도시의 공공미술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당ㅇㅇ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운회는 당한 시각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술과 공공성, 예술과 삶의 관점에서 비라 볼 필요가 있음 -문화도시, 창의도시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기획치원의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적 기금제와 도시 전 락을 결합시켜 추진한 다면 시너지가 될 것임. (예를 들면 뉴욕 배티리 파크와 같이 10 년 정도 장기적 으로 추친되어 기믐제를 잘 활용함) <br>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한나난 것은 기존 공공미술의 틀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살표보면) 서울시 도시갤러리의 아트플랜은 예술가가 제안을 한 후 어느 단계이서 접근 및 실행해야 하 는 것인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실매함. <br> - 기존 도시의 경우 도시와 공공예술 간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장소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 또한 조례와 마스터플랜이 정해저야만 함 <br> -작품 심의 시 위원회 구조는 7 인 이내, 역할과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책임감을 부여, 마스티플 랜가지 위원회가 결정하고 도싳ㅊ원ㄴㅢㅢ 전략은 어번 큐레이터 혹은 어번 큐레이티와 전문가, 어번 큐레 이탸와 주민이 할 지 다양하게 열어놓아야 함 <br> -도시차원의 공공미술을 실현하는데 있어 어번 큐리잍ㄹㄹ는 전문가는 필요하매 그 역할의 범위가 정해 지고 권한이 주어져야 함. 안양의 경우 어번 큐레이터의 괸한이 명시되지 않아 계야익 담당 행정공문 에게 조차 의견을 묵살 당함, 시카고 시 경우 큐레이터의 권한이 모든 것을 좌우함 |
|  | 이광준 (전 도시갤라리 책임 큐리이티의 <br> 도시계혹가 언계한 공공미술이 되기 위해 법제도부분에서 굔여할 수 있는 시점이 명확하야 하는데 혁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 단개이ㄴㅣㅔ 이 경우 어띃게 되는가? 질문에 대해 <br> -본 연군는 나주 혁신도시 ㅎㅏㅏㅏㅏㄴ 보는 것이 아님, 도시계획과 연계된 공공미술을 실현하기 위해 법 제 도 상 위계밸(돗ㄱㄱ획 / 지구단위계획로 요구되는 작업을 상세히 정해주며, 추진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조직하는 것이 핵심으로 관련된 여러 매칸즘을 구축하야 함 |
| 조격진 (서울대학교 교수) | 앙수인 (삶것 대표) 의 <br>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공공미술과 관련 내부 조직이 있는 기푠은 없ㄴ? 미국 산호네 시 경우 발주 된 15 개 공공미술품 중 켠벤션 센ㅌㅌ는 내부 공공미술 운영 팀이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 자ㅇㅏㅣ적인 관 점에서 각 이전기관 내부 공공미술 운영관리조직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질문에 대해 <br> -0은 선택적 기금제 취지와 반대되는 생각임. 각 기관별 내부운영관리 조직이 없어 기금제를 통해 도시 치원에서 설치하고 철저한 운영관ㄹㄹ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와 같이 개별적으로 설치 시 시민과의 인 터페이스가 구축되지 않고 운영관리 상에서도 제약이 있음. |


|  | -물론 선택적 기금제는 이상적일 수 도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분명 공공의 이익이 될 것임 <br> 홍경한 (경ㅎㅎㅇ시ㄴㅣㅜㄴ 미술율간지 경ㅎㅎㅇ아티클 편집장, 전 퍼블릭 아트 편깁징강의 <br> 나주 혁신도시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환경객ㅅ선인ㅈ, 주민 공동체 활성화 인지 처음부터 방항을 명확 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섬이 나올 것 질문에 대해 <br> -도시는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되기 보다 시간에 따른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함. 본 연구는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여 참여 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목표로써, 1단계는 확보된 18억의 예산으로 도 시적 차원에서 기획 및 설치 이후 주거지 및 민간 기업이 들어와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미술을 확산시키고자 함 |
| :---: | :---: |
| 홍경한 <br> (前 퍼블릭아트 편집장) | $\cdot 70 \%$ 로 요율을 낮추고, 기업의 세제효과와 같은 인센티브방안을 폭넓게 부여함은 선택적 기금제 참여의 활성화를 줄 것 |
|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힝혼부장) | - 지난 5 월 법 개정이 됨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전하는 나주 혁신도시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도시기반이 일부 진행된 시점이어서 분명 어려움이 있음 <br> -오늘 주제는 광주전남혁신도시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법 개정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을 추진 함에 있어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경관 및 법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 될 필요가 있음 |
| 유나경 (코레스엔지니ㅇㅓㅣㅣ 건축사무소 소장) | -디엠씨 개발의 중간단계에서 논의 된 것과 비슷한 상황임, 디엠씨는 디지털미디어실현이라는 분명한 도시 개발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가로 시설물을 공공예술을 작업함에 있어 디자인이 미흡함 -토지분양을 저렴하게 하는 조건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예술품은 디지털 미디어 파크 내 집중시키고자 하였지만 당시 법을 변경해야만 하는 문제로 결국 기존 법대로 추진하되 가급적 기부를 유도함. 또한 가로등, 벤치, 인포부스 등 시설물을 별도 공공예산을 들여 총괄 계획하였으나, 실행단계에서 담당자는 공공예술과 상관없는 도로 시설 관련 토목부로 협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아웃풋은 일반적 시설물이 됨 -도시계획과 공공미술을 접목하여 진행하면 시점이 매우 중요함 <br> -처음 기획 단계에서 각 공간ㅇ 어떤 시설이 설치 될 것인가를 결정,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마지막 시 점에 시행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짐 <br> -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 전체를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함. 혁신도시의 경우 늦은 시기이나 타 도시에 실 현 될 경우 공공미술의 방향을 먼저 잡고 지구단위계획상 세부내용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공공미술기금 의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함 -건축주는 시장의견이 핵심, 또한 폭넓은 인센티브제도가 요구됨 |
| 정소익 <br> (도시매개프로젝트) | -제도적으로 오브제로 규정된 공공미술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정의 할 필요가 있음 <br> -현재와 같이 공공미술을 하나의 오브제로 규정함은 조교수님이 지적하는 바 장소성 부재, 거주 민과의 소통어려움과 같은 문제는 피할 수 없음. 안야과 같은 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도시는 주민이 없어 어려움 <br>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은 공공미술의 정의가 확장되지 않는 한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행정당국의 감사와 같은 부분에 마찰이 빈번함. 즉 확장된 공공미술의 개넘을 설정하여 신도시와 구도심에 따른 다 양한 케이스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잡는 것이 중요함 |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으로 세부적인 실행지침이 요구됨. <br> $\triangleright$ (문화예술위원회) 시행령은 미술작품의 설치, 심의 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만들어짐 <br> -특정한 예술가의 작품보다 작품제작, 사업진행에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함. 또한 기존 공공미술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공모방식을 진행하되 그 심사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해야 작품의 질도 높아지고, 제도의 관심도 끌 것임 <br>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공미술의 열린 개념이 필요함. 기존 수직적 상징물이 아닌 주변 컨텍스트와 조화 되는 수평적 우수한 건축물 및 토목시설에 있어 예술가들이 커미셔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음 <br> -공공미술품이 설치 될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주요한 조망축과 경관 계획 상 보행 축에 설치하여 공공성 을 높이는 것은 중요함 <br> -경관협정은 마을 사람들 간의 실천 전략으로 이보다 경관사업 즉 공공영역에 투자하여 참여하는 공원, 하천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이 맞지 않나 생각됨 |

## 설문조사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에 대한 잠재 거주민 의식조사

-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

>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껴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를 진형 중입니다.
> 본 설문조사는 2011 년 10 월 현재 공사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ㅁ술의 추진방햐에 대한 경해률 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안결과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리 뗘. 본 설문의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11년 10 윌

연구원 김 용 국 (yonggook@snu.ac.kr)

## 1. 혁신도시 거주환경에 대한 욕구 조사

1.1 기하께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어뼣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1,3로
(2) 긍정적이다 $-1,3$ 로
(3) 보통이다 -1.3 로
(4) 부정직이다 -1.2 로
(5) 매우 부정적이다-1.2로
1.2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1) 교욕문제 - 자녀들의 교뮥환렁 등
(2) 경제적 뮨제 - 주택구입 문제 등
(3) 문화적 소외문제 - 앙질의 문화시설 및 여기할동 프로 그램 부조
(4) 주가현명 문져 - 거주지역의 인쩐성 주민만의 유ㄷㅐㅏㅏㅁ 문제 등
(5) 엍무함경 문져- 수도퀀과 뻘어짐으로써 업무처리 능률 및 효율성 저하 등
(6) 가정문져 - (기족 모두가 혁신도시로 정칙하지 않을 경우) 가죽 구성원간의 유대감 저하 댱
(7) 기타의견 (
1.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직장 이전 시 가족과의 동 반여부는?
(1) 꼭 그러혈 것이다.
(2) 아마 그러혈 것이다.
(3) 그럴 가녕성이 조금 있다.
(4) 어느 정도 정학되면 옮겨길 것이다.
(5) 가능성이 천혀 엾다.
1.4 귀하께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다음 중 어떤 환경이 우수한 도시가 되길 바라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1) 자연 및 여가 환경
(2) 교육 환경
(3) 거주 환경
(4) 예술문화 환깅

## II. 혁신도시의 미래상

2.1 기하께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 설계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잘 일고 있다.
(2) 일고 있다.
(3) 질 모르겠다.
(4) 전혀 모릊ㅆㅆㄷㅏ.

## 2.2 굥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 설계안은 어뗳다고 생 각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1) 매우 잘 직성되었다, }-24 \text { 로 } \text { (2) 질 작성되었다. }-24 \text { 로 } \\
& \text { (3) 보동이디 -24로 (4) 찰 직평푀지 았었디 -23로 } \\
& \text { (5) 마우 잘 작쎵피지 옸ㅆㅆㅆㅏ } 223 \text { 로 }
\end{aligned}
$$

## 2.3 ㄱ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도시의 삼징성이 췪약하다.
(2) 문화시섬 및 핀의시설이 부족하다.
(3) 도시를 드러낸만한 매릭칙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앖다.
(4) 일반적으로 너무 평이한 도시이다.
(5) 기타 (
2.4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내세운 '빛과 물의 상생의 생명도시' 라는 개발 컨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정하다. $=2.6$ 으로
(2) 직정하다. -2.6 으로
(3) 보동이다. -2.6 으로
(4) 직정하지 않다. $=2.7$ 로
(5) 매우 직정하지 옹다. $\sim 27$ 로
2.5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이윤 문엇입니까?
(1) 도시의 미례상으로 어훌리지 않는다.
(2) 광주 및 전라님도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다.
(3) 우리 기업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4) 단어 표현이나 기법이 추상적이다.
(5) 기타 (
2.6 귀하께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환경도시
(2) 교통 및 쇼핑 등 펀리한 기반환경이 깃취진 컴팩트 도시
(3) 문화적으로 강한 정체감과 이미지를 갖춘 브랜드 도시
(4) 다양한 불거리와 관광, 여가환경을 갖춘 관광여가도시
(5) 기타 (
2.7 귀하께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기하께서 생각 하신 방향으로 잘 발전될ㄹ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렿다.
(2) 그령다.
(3) 보통이다
(4) 그혛지 않다.
(5) 매우 그렿지 앖다.

## III. 혁신도시 둔화혈졍과 문혁형유애 대한 조사

3.1 기하깨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문화환경의 미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
(2) 긍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부정적이다
(3) 매우 부정적이다
3.2 귀하께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문 화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상연관, 야외믐악당 등)
(2) 전시시설 (박뮬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등)
(3)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등)
(4) 지억문화 복지시설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등)
3.3 귀하께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문화환경을 개 선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
(2) 긍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부정적이다
(5) 내우 부정적이다

## N. 공공미술이 대한 인식 및 배도 조사

4.1 귀하께서는 평상시 우리의 도시이 대해 어떻게 생각 하셨습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begin{aligned} & \text { 저웅 } \\ & \text { ㄹ하다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보오웅 } \\ & \text { 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겺지 } \\ & 282 ㄷ ㅏ ~ \end{aligned}$ |  |
| :---: | :---: | :---: | :---: | :---: | :---: |
| 아툼답다. | (1) | (2) | (3) | (4) | (5) |
| 자연 친화적이다. | (1) | (2) | (3) | (4) | (5) |
| 편리하다. | (1) | (2) | (3) | (4) | (5) |
| 인간적이다. | (1) | (2) | (3) | (4) | (5) |
| 전롱적이다. | (1) | (2) | (3) | (4) | (5) |
| 후세에 남겨줄 만한 도시이다. | (1) | (2) | (3) | (4) | (5) |

4.2 세계의 도시와 비교하여 손색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할 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1)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정체감
(2) 격조 높은 도시건축과 미관
(3) 풍부한 문화시설과 문화환경



(7) 기다 ?
)
4.3 귀하제서는 길을 걸거나 여영 중에 도시뮬 상징하는 조넝물이나 미여징식풍(아며 서지 이미지 찹고)을 본 적이 있습니페?


5 륜섬 혐ㅁ․

- 서며 아미지

4.4 본 적이 있다면 그 상징물이나 조형물이 도시의 브랜 드 및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렴다.
(3) 그령다.
(3) 잘 모르젰다.
(4) 그렬지 안다.
(5) 매우 그혐지 않다.
4.5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뎌 있어 그와 같은 상징물 및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련다.
(2) 그렴다.
(3) 잘 모르젰다.
(4) 그림지 안다.
(5) 매우 그렴지 않다.
4.6 거하께서는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 가께운 생환환경직장 또 는 어파트 주변)에 설치되는 것이 대해 어헣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직이다
(2) 긍징적이다

3) 보동이다
(4) 부정적이다
(5) 매우 부정직이다
4.7 귀하께서는 상징물 또는 조형물올 공공장소(공원, 광장, 보행자도로 등)에 설치아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직이다.
(2) 긍정적이다.
4) 질 모르겼다.
(4) 부정적이다.
5) 매우 부정석이다.

## V . 일반 사형

5.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5.2 귀하의 연령대는?
(1) $20 \sim 30$ 세
(2) $30 \sim 40$ 세
(3) $40 \sim 50$ 세
(4) $50 \sim 60$ 세
(5) 60 세 이상
5.3 귀하의 결혼유무?
(1) 미 흔 $-3,5$ 로
(2) 기 혼 $-3,4$ 로
5.4 귀하의 자녀의 연령대는?
(1) 7 세 이하(유치원)
(2) 8 세 13 세(초등학생)
(3) 14세~19세(중고등힉생)
(4) 20세 이상 (대힉생 이상)
(5) 자녀 없음
5.5 귀하꺼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돈의 다 | 보씨다 |  | $\begin{aligned} & \text { 매아 } \\ & \text { 앙해이 } \\ & \text { 인ㅁㅁ } \end{aligned}$ |
| :---: | :---: | :---: | :---: | :---: | :---: |
| 나는 전롱욤 며우 중시한다. | (1) | (2) | (3) | (4) | (5) |
| 나는 자주 예술음 관람현다. | (1) | (2) | (3) | (4) | (5) |
| 나는 여햄율 자주한다. | (1) | 2 | (3) | (4) | (3) |
| 나는 살의 질윰 우선 고혀한다. | (1) | (2) | (3) | (4) | (5) |
| 나는 자연한경음 중시현다. | (1) | (2) | (3) | (4) | (5) |
| 나는 도시람 펀리해야 한다고 생라한마. | (1) | (2) | (3) | (4) | (5) |
| 나는 거주지률 정함에 있어 교육적 요건이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 국내자료

강미래, 2011, 도시공간 속의 공공미술 연구: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접근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학위논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 , 녹색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경인 아라뱃길 창조문화환경위원회, 2010, 경인 아라뱃길의 창조적 상상과 실천
국토해양부, 2010,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김선옥, 2006 , 공공도서관의 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 3 호
김세훈 외5명, 2008, 공공성, 미메시스
김연금, 2011, 우연한 풍경은 없다, 나무도시
김찬동, 1997, 새로운 바르셀로나를 위한 도시보수 프로젝트, 월간너울 제10권
남덕현, 2008, 집으로 돌아온 탕아-독일 뮌스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문화기획,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라도삼, 2006,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맬컴 마일즈 지음, 박삼철 옮김, 2000 ,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문화관광부, 2006 ,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박찬숙 권영걸외 공저, 2008 ,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입다, 도서출판 가인
배수권, 2010, 지율적 민간 건축지침으로서 헤이리 개발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서울특별시, 2004,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특별시, 2003, Digital Media Street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서울특별시, 2010 , 서울 DMC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DMS부문)
양현미, 2005 , 공공미술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양현미, 2009, 공공미술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수빈, 2007, 도시 재생의 역할로서 공공예술 고찰,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오왕선, 2008 ,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유재길, 이지현, 2007,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의 공공성과 공공장소 미술의 가능성 연구, 한국공예논총 제12집 제2권
이동재, 2011, 라데팡스의 도시재개발사업과 공공미술,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이미흥, 2008, 영국의 물 거버넌스 : 브리스톨 워터프론트 사례를 중심으로, 하천과 문화 제4권
이창호, 오준걸, 정종대, 2011, 경관협정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7권 제6호
한국수자원공사, 2010 , 경인 아라뱃길의 창조적 상상과 실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공공미술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건축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국제컨퍼런스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는 공공미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도시환경과 공공미술 심포지움

## 해외자료

Amy Dempsey, 2006, Destination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toni Remesar, 2005, Urban Regeneration A Challange for Public Art, Publicacions de la unviersitat de barcelona
Arlington County Board, 2004, Public Art Public places, Arlington's public art master plan.
Barbara Goldstein, 2005, Public art by the book,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Bristol city council, 2003, Bristol public art strategy
Bristol city council, 2011, Bristol Development framework core strategy
Cameron Cartiere \& Shelly Willis, 2008, The practice of public art, Routledge
Cher Krause Knight, 2008, Public Art-theory, practice and populism, Black Well Publishing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and the authors, 2010, Public art toolkit
Creative Time, 2009, The Louisville Public Art Master Plan
Florian Matzner, 2004, Public art a reader, Hatje Cantz Verlag
Keyser Marston Associates,Inc, 2005, Developer Cultural Arts Requirement Survey and Evaluation of Options
King County Public Art Program, 2002, Public Art and Private Development - Report on Program Policies
Lambert Zuidervaart,2011, Art in publ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Canada, 2009, City of London-Public art program
Nicolas Whybrow, 2011, Art and the city, I.B.Tauris
Regina M. Flanagan, The Millennium Park effect-A tale of two cities
Regina M. Flanagan,2008, The Millennium Park Effect, The practice of public art, ed. Cameron Cartiere \& Shelly Willis, Routledge
Ronald Lee Flemig, 2007, The art of placemaking, Merrell Publishers
Timothy J. Gilfoyle, 2006, Millennium pa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om van Gestel \& Henriette Heezen \& Nathalie Zonnenberg, 2009, Art as urban Strategy: Beyond Leidsche Rijn, NAi Publishers
Todd W. Bressi, Jill Anholt, Bethea-Brown Associates, 2009, New Pittsburgh Arena Public Art Master Plan

## 인터넷 홈페이지

바르셀로나시, http://www.bcn.es/
덴버, http://www.denvergov.org/
라데팡스, http://www.ladefense.fr/
레이체레인, http://www.beyondutrecht.nl/index2.php
뮌스터조각프로젝트, http://www.skulptur-projekte.de
브리스톨, http://www.bristollegiblecity.info/
시애틀시 http://www.seattle.gov/arts/pubicart
이노시티 웹사이트, http://innocity.mltm.go.kr/index.jsp
파레 다치카와, http://mapbinder.com/Map/Japan/Tokyo/Tachikawashi/Faret/Faret.html
Art and Public Realm Bristol, http://aprb.co.uk
RACC (Regional Arts \& Culture Council), http://racc.org/


[^0]:    1)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쟝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방송통신시설
[^1]:    2) 박찬숙, 권영걸 외(2007),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입다
[^2]:    그림15 공공미술의 발전방향

[^3]:    - 공공기관, 독립 및 상업 개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예술의 커미셔닝을 위한 일관된 프레임 워크를 수립

    주요목표

    - 공공예술의 접근성 강화, 공공의 이익을 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예술가들의 수입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 제조업 및 창조산업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 공공 영역 내 예술가들에 의한 연간 프로그램의 운영, 현대 유럽의 문화도시로써 브리스톨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킬 것

[^4]:    3) Keyser Marston Associates. Inc(2005), Developer Cultural Arts Requirement Survey and Evaluation of Options
[^5]: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11

[^6]:    5）「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다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7]:    7）서울시의 경우 2011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많은 자치구 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비법 정계획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다．

[^8]:    8) 세종시 도시디자인 7 대 경관과제는 건축물미관, 도시환경색채, 옥외광고물, 공원녹지수변,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아간경관으로 구분됨
[^9]:    9) 달라스 시의 경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 시민, 예술전문가, 문화국 직원, 도시 전문가 등 연구진을 구성하여 장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여 창의적인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실행, 30 명이 18 개월간 연구하여 발표한 비주얼 달라스 (Visual Dallas,1987)는 도시 컨텍스트의 분석, 공공미술이 필요한 지역의 리슽 작성, 인적 물적 자원 조달방법 제시, 다른 공공미술 프로그램 사례분석, Percent For Art법률 시안작성, 사후 보수관리 방법 등이 포함됨,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지역 사회 공론이 수렴됨으 로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논쟁과 시행착오를 줄임
[^10]:    10) 밴쿠버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심의 괴정이 있언는지, 심의 이견이 나휘었다면 어떻게 나허었는지 공개를 하도록 규정. 심의위위 원회 체계로 한나면 심의위원은 11인 이하로 하고, 2~3년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 큐리이티가 추천지명위 촉의 방법을 통해서 공공미술 작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작품이 놓이는 커뮤니티가 작품을 선정하게 하는 방법, 대단위 계기성 사엽의 경우는 목적성 위원회를 두고 기획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활용됨
[^11]:    11) 시카고의 경우 한 명의 공공미술 큐레이터가 1년에 2~3작품을 시민설명부터 작품설명까지 담당하며 경관에 대한 이해, 도시의 발 전 과정에 대한 이해, 장소 연구, 행동 연구, 창조적 행정 기획, 큐레이터 기획작성 능력, 매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미술관 큐레이 터와 다른 매개형 큐레이터로 활약하고 있다.
[^12]:    12) 김선옥(2006), 공공도서관의 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13) 양현미(2010),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